

2020학년도

꿈과 열정이 살아 숨 쉬는 인월인

교육과정 운영계획



인월중 · 고등학교

학교생활목표

성실 자율 협동

교 화 : 철 쪽



물푸레 나무과에 속하는 낙엽성 관목으로 우리나라 각지에 야생하며 생명력이 강하고 이른 봄에 일찍 꽃이 피.

☞ "희망"을 상징함

교 조 : 까 치



까마귀과에 속하는 새로 사람과 친숙하고 해로운 곤충을 잡아 먹으며 반가운 소식을 전해 준다하여 길조로 불림.

☞ "행운"을 상징함

교 목 : 전 나무



질푸른 이엽 침엽수이며, 나무거죽은 붉거나 검은 갈색인 상록수

☞ "변함없는 굳은 절개"를 상징함

학교교육서비스헌장

우리 인월중·고등학교 전 교직원
즐거운 학교, 가고 싶은 학교, 자아를 실현하는 학교를 구현하여
바른 마음과 올바른 심성으로 세계를 품을 인월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 ◆ 우리 학교의 모든 교직원은 미래 사회를 주도할 조화로운 인재 육성을 위하여 바른 가치관, 건강한 심신, 정보통신 운용 능력을 기르는 데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 ◆ 우리는 질 높은 교육활동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학생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책임지는 수업과 충실한 평가를 위해 부단히 연구·노력하겠습니다.
- ◆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로부터 신뢰 받는 학교교육을 위해 교육 공동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학교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 학교의 교육활동 및 행정서비스는 교육수요자와 민원인의 입장에서 최상의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계획하고, 친절하게 안내 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우리의 실천 노력에 대하여 매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며, 만족하지 못하는 사항은 보완·개선하여 보다 나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목 차

I. 학교 현황	1
1. 학교 연혁	3
2. 교직원 현황	3
3. 학생 현황	3
4. 시설 현황	3
5. 학교 교육 목표	4
II. 학교교육과정의 바탕	5
1. 전북교육 기본방향	7
2. 남원교육 기본방향	8
3. 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분석 및 대책	9
III. 학교교육과정 편성 · 운영	11
1. 학교교육과정의 편제와 시간배당	13
2. 연간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확보	23
3. 한 명도 놓치지 않는 참학력향상 교육	25
4. 따뜻한 마음 나눔의 상담 운영 계획	41
5. 저마다의 빛깔을 드러내는 자유학기제	43
6. 일반고 자(유롭게)신(나계)감(동적인) 프로젝트	44
7. 「차별은 내려놓고, 차이를 존중하는 우리」 인월중고 통합교육	47
8. 학생인권 · 안전 · 성교육 · 보건교육 계획	53
9. 교사 수업 공개	64
10. 함께 만드는 우리학교 운영	65

IV. 창의적 체험활동 편성 · 운영	67
1.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편성	69
2.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71
V. 부록	95
1. 업무분장	97
2. 부장, 담임, 부담임 및 특별실 관리	99
3. 부서별 · 교과별 연간 시상 계획	100
4. 청소구역 배정표	102
5. 정보공시 운영	104
6. 행정실 업무분장	106
7. 학교규칙	107
8. 학교생활규정, 학생자치규정, 학생인권조례	127
9. 학업성적관리규정	156
10.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190
11. 위임전결규정	199
12. 학교 세입 · 세출 예산서	210
13. 각종 위원회 정비 계획	214

I

학교 현황 및 교육목표

1. 학교 연혁 / 3
2. 교직원 현황 / 3
3. 학생 현황 / 3
4. 시설 현황 / 3
5. 학교 교육 목표 / 4

1. 학교 연혁

중학교		고등학교	
연월일	내 용	연월일	내 용
1960. 2. 11	인월중학교 설립 인가(3학급)	1975. 11. 14	인월고등학교 설립 인가
1960. 5. 3	인월중학교 개교	1976. 3. 13	인월고등학교 개교
1964. 12. 28	인월중학교 6학급 인가	1982. 12. 30	인월고등학교 9학급 인가
2006. 3. 1	특수학급 신설	2018. 3. 1	제15대 교장 김창수 부임
2018. 3. 1	제18대 교장 김창수 부임	2020. 2. 7	제42회 21명 졸업(총 2,315명)
2020. 2. 7	제58회 16명 졸업(총 5,301명)		

2. 교직원 현황

분류	교장	교감	보직교사		교 사		행정직	교무 실무사	계
			남	여	남	여			
인원	1	1	2	2	5	9	5	1	26

3. 학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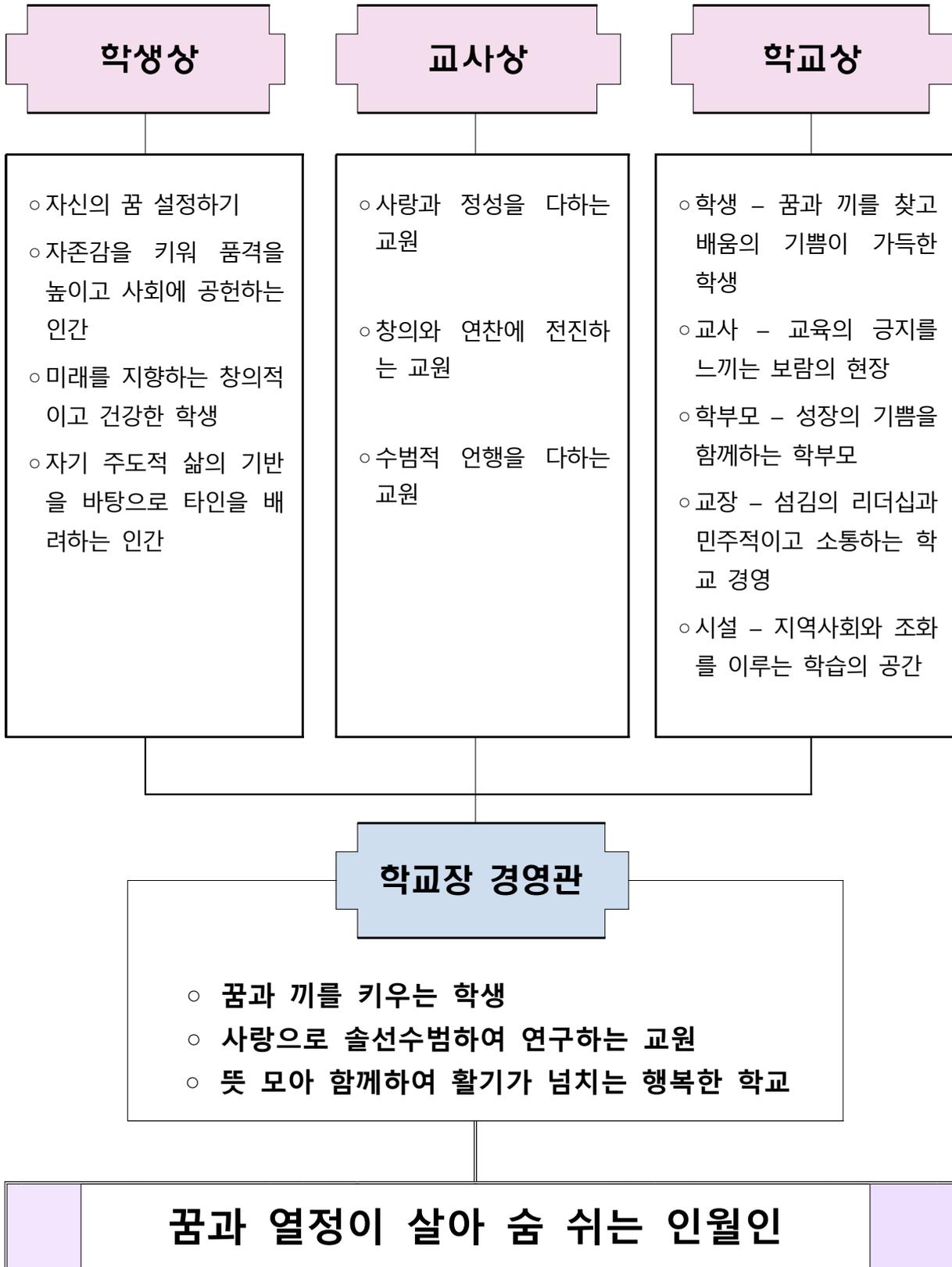
학교급	중 학 교				고 등 학 교				개별반			총계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계	1학년	2학년	3학년					계
학급수	1	1	1	3	1	1	1	3	1			6	
									중	고	계	(개별반)	
학 생 수	남	8	11	6	25	10(1)	9(3)	7(1)	26	0	5	5	51(5)
	여	10	4	9	23	4	8	11	23	0	0	0	46
	계	18	15	15	48	14	17	18	49	0	5	0	97(5)

※ ()는 개별반 학생수

4. 시설 현황

교 지	부지20,056㎡		부속토지 145㎡		체육장 17,542㎡		건물연면적 4,933㎡		
보통실	특별실	관리실	지원공간	도서실	샤워실	창고	화장실	사택	
6	18	4	3	1	1	3	10	3	

5. 학교교육목표



II

학교교육과정의 바탕

1. 전북교육 기본 방향 / 7
2. 남원교육 기본 방향 / 8
3. 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분석 및 대책 / 9

1. 전북교육 기본방향



2. 남원교육 기본 방향

남원 교육비전

신나는 교실
꿈을 키우는 학생이 행복한 남원교육

핵심전략

- 소통과 협력의 민주적 리더십
- 교사의 자존감 회복 프로젝트 추진
- 현장요구에 맞는 지원행정
- 교원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활동 지원

주요정책

- 자율과 도전, 배움이 즐거운 학생
- 신뢰와 존중, 가르침이 행복한 선생님
- 가벼운 어깨, 함께하는 학부모
- 청렴은 기본, 공정하고 따뜻한 교육행정
- 소통과 협력, 건강한 학교-마을교육공동체

추구하는 교육공동체상

- 협력적 배움을 통해 날로 성장하는 학생
- 사랑과 정성으로 가르치는 존경 받는 교원
- 참여하는 학부모, 협력하는 지역사회
- 찾아서 지원하는 신뢰받는 공감 행정

남원혁신교육특구 추진 과제

- '같이 만드는, 가치 있는' 교육과정 실천하기
- '내 안의 보석을 찾아서 미래핵심역량 키우기
- '마을이 학교다' 교육공동체 만들기

3. 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분석 및 대책

구분	특 성	시 사 점
지역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양 산내 운봉 아영 등 인근 4개면이 10분 거리에 가까이 있고 귀농 귀촌한 전문 역량이 많아 마을과 학교가 서로 협력하는 교육공동체로 나아가고 있음 ◆ 학교 교육과정이나 학교 행사에 우호적이고 관심이 많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교육활동에 지역사회 단체와 연계한 프로그램 활용 필요 ◇ 지역사회에서 각종 강사를 운영하여 실질적인 직업교육의 가능성 필요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스스로 만들어가는 학교·참여하는 수업에 대한 의지가 높음 ◆ 배우고자 하는 마음과 열정은 있으나 그 열정을 담아낼 그에 걸맞는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학생부전형에 위한 다양한 학교생활과 그 활동을 지속적으로 함께 곁에서 지켜보고 도와주는 어른이 필요 ◆ 기초학력향상과 학습동기 향상을 위한 다양한 동기 부여기회가 필요 ◆ 진로 탐색을 위한 검사 및 자신의 희망 진로와 성적에 맞는 대학진학에 대한 일대일 상담이 필요 ◆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독서 및 글쓰기가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중심의 자치활동·동아리활동·활동중심으로 수업변화가 필요 ◇ 민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학생 다모임이 필요 ◇ 희망하는 진로과정을 체험해볼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어 그 힘을 바탕으로 자생동아리활동으로 발전하도록 교사·지역사회 어른의 도움이 필요 ◇ 도교육청 대입 진학진로단과 연계하여 학업성적 평가후 일대일 상담 기회 마련 등 꾸준한 진로 진학 상담 필요 ◇ 꾸준한 독서와 글쓰기 지도 필요
학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교육과정에 관심이 높음 ◆ 자녀교육에 대해 학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 자녀와 소통할 수 있는 학부모 교육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심과 능력이 있는 학부모의 학교 참여 기회 마련 ◇ 학생 동아리와 학부모 동아리를 서로 연합하여 운영하는 것 필요 ◇ 학부모님의 자녀특성이해와 그에 맞는 부모 역할에 대한 교육 필요
교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참여도가 낮은 수업과 방과후 수업 야간 지도 등 교사의 피로도가 큼 ◆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수업 방법 및 활동적인 학력신장을 위한 지도방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교사간 상호 소통 부족으로 전달식의 업무 방식과 새로운 업무를 배울 기회가 부족하여 업무 협조 방식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영역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함께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상호 신뢰와 이해의 시간 마련 필요 ◇ 교사의 피로도를 줄이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교육과정협회가 절실 함 ◇ 수업친구 및 교사 동아리 등 서로 나눌 수 있는 기회필요 ◇ 교직원회의를 개선하여 의견수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꿈과 열정이 살아 숨 쉬는 인월인

Ⅲ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1. 학교교육과정 편제와 시간배당 / 13
2. 연간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확보 / 23
3. 한 명도 놓치지 않는 참학력향상 교육 / 25
4. 따뜻한 마음 나눔의 상담 운영 계획 / 41
5. 저마다의 빛깔을 드러내는 자유학기제 / 43
6. 일반고 자(유롭게)신(나게)감(동적인) 프로젝트 / 44
7. 「차별은 내려놓고, 차이를 존중하는 우리」 인월중고
통합교육 / 47
8. 학생인권·안전·성교육·보건교육 계획 / 53
9. 교사 수업 공개 / 64
10. 함께 만드는 우리학교 운영 / 65

1 학교교육과정 편제와 시간배당

가. 인월중학교

2020학년 전학년

구분	기준 시수 (2009)	운영 시수	증감조정 시수 (스, 자, 체)	1학년			2학년		3학년				
				학급수	1		학급수	1	학급수	1			
				1학기	2학기 (기본)	2학기 (자유)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교과 (군)	국어	442	391	17(자),34(감)	68(64)	68	51(48)	68(64)	68(64)	68(64)	68(64)	68(64)	
	사회/ 도덕	사회 역사 도덕	510	153	17(자)	51(48)	51	34(32)			34(32)	34(32)	
				170				51(48)	51(48)	34(32)	34(32)		
				170				51(48)	51(48)				
	수학	374	408	34(증)	68(64)	68	68(64)	68(64)	68(64)	68(64)	68(64)	68(64)	
	과학/ 기술·가 정	과학 기술·가정 정보(2015)	680 (646)	357	17(자)	51(48)	51	34(32)	68(64)	68(64)	68(64)	68(64)	
				255	17(자)	51(48)	51	34(32)	51(48)	51(48)	34(32)	34(32)	
				34					17(16)	17(16)			
	체육	272	255	17(자)	51(48)	51	34(32)	51(48)	51(48)	34(32)	34(32)		
	예술	음악 미술	272	102	34(자)	34(32)	34	0	17(16)	17(16)	17(16)	17(16)	
				136		17(16)	17	17(16)	17(16)	17(16)	34(32)	34(32)	
	영어	340	340		51(48)	51	51(48)	51(48)	51(48)	68(64)	68(64)		
	선택	한문 생활외국어 정보(2009) 환경과녹색성장(2009) 환경(2015) 보건 진로와직업	170 (204)	102		17(16)	17	17(16)				34(32)	34(32)
51				17(자)	17(16)	17	0			17(16)	17(16)		
교과 시수 합계	3,060	2924	136	510 (496)	510	374 (352)	510 (480)	510 (480)	510 (480)	510 (480)			
자유학기 활동	진로탐색활동	170~	34	기가17, 진직17			34(32)						
	주제선택활동		34	과학17, 진로17			34(32)						
	체육예술활동		68	체17,스17,음34			68(64)						
	동아리활동		34	국어17, 사회17			34(32)						
	자유학기 시수 합계		170~	170				170 (160)					
창의적 체험 활동	자율활동	306	72		12	12	12(11)	12	12(11)	12(11)	12(11)		
	동아리활동		132	34(스)	17(16)	17	17(16)	17(16)	17(16)	15	15(14)		
	봉사활동		30		5(4)	5	5	5(4)	5	5(4)	5		
	진로활동		72	17(자)	17(16)	17	0	17(16)	17(16)	2	2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 합계		306	306	51	51(48)	51	34(32)	51(48)	51(48)	34(32)	34(32)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	기존창체활동(~68)	136	34							17(16)	17(16)		
	창체순증		102	17(자)	17(16)	17	0	17(16)	17(16)	17(16)	17(16)		
	교과감축(체육대체)		0	34(체)									
	학교스포츠클럽 시수 합계		136	136	17	17(16)	17	0	17(16)	17(16)	34(32)	34(32)	
총 수업 시간 수	3,366 (자,스제외)	3536	170 (순증)	578 (561)	578	578 (544)	578 (544)	578 (544)	578 (544)	578 (544)			
학기당 이수 과목 수	~8			8	8		8	8	8	8			

()안 시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수업시수 감축한 것을 뜻함. 자유학기제 상황에 따라 시수 변동 가능.

구분	기준 시수	운영 시수	증감조정 시수 (스, 자, 체)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	2학기 (기본)	2학기 (자유)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교과 (군)	국어	442	391	17(자),34(감)	68(64)	68	51(48)	68	68	68	68	
	사회/ 도덕	510	153	17(자)	51(48)	51	34(32)			34	34	
			역사	170					51	51	34	34
			도덕	170		34(32)	34	34(32)	51	51		
	수학	374	408	34(증)	68(64)	68	68(64)	68	68	68	68	
	과학/ 기술·가 정	680 (646)	과학	357	17(자)	51(48)	51	34(32)	68	68	68	68
			기술·가정	255	17(자)	51(48)	51	34(32)	51	51	34	34
			정보	34					17	17		
	체육	272	255	17(자)	51(48)	51	34(32)	51	51	34	34	
	예술	272	음악	102	34(자)	34(32)	34	0	17	17	17	17
			미술	136		17(16)	17	17(16)	17	17	34	34
	영어	340	340		51(48)	51	51(48)	51	51	68	68	
	선택	170	한문	102		17(16)	17	17(16)			34	34
			생활외국어	(택1)								
환경			0									
보건			(택1)									
진로와직업			51	17(자)	17(16)	17	0			17	17	
교과 시수 합계	3,060	2924	136	510 (496)	510	374 (352)	510	510	510	510		
자유학기 활동	170~	진로탐색활동	34	기가17, 진직17			34(32)					
		주제선택활동	34	과학17, 진로17			34(32)					
		체육예술활동	68	체17,스17,음34			68(64)					
		동아리활동	34	국어17, 사회17			34(32)					
		자유학기 시수 합계	170~	170				170 (160)				
창의적 체험 활동	306	자율활동	72		12	12	12(11)	12	12	12	12	
		동아리활동	132	34(스)	17(16)	17	17(16)	17	17	15	15	
		봉사활동	30		5(4)	5	5	5	5	5	5	
		진로활동	72	17(자)	17(16)	17	0	17	17	2	2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 합계	306	306	51	51(48)	51	34(32)	51	51	34	34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	136	기존창체활동(~68)	34							17	17	
		창체순증	102	17(자)	17	17	0	17	17	17	17	
		교과감축	0									
		학교스포츠클럽 시수 합계	136	136	17	17	17	0	17	17	34	34
총 수업 시간 수	3,366 (자,스제외)	3536	170 (순증)	578 (561)	578	578 (544)	578	578	578	578		
학기당 이수 과목 수	~8			8	8		8	8	8	8		

()안 시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수업시수 감축한 것을 뜻함. 자유학기제 상황에 따라 시수 변동 가능.

2019년 입학생

구분	기준 시수	운영 시수	증감조정 시수 (스, 자, 체)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	2학기 (기본)	2학기 (자유)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교 과 (군)	국어	442	391	17(자),34(감)	68	68	51	68(64)	68(64)	68	68	
	사회/ 도덕	510	사회	153	17(자)	51	51	34			34	34
			역사	170					51(48)	51(48)	34	34
			도덕	170		34	34	34	51(48)	51(48)		
	수학	374	408	34(증)	68	68	68	68(64)	68(64)	68	68	
	과학/ 기술·가 정	680 (646)	과학	357	17(자)	51	51	34	68(64)	68(64)	68	68
			기술·가정	255	17(자)	51	51	34	51(48)	51(48)	34	34
			정보	34					17(16)	17(16)		
	체육	272	255	17(자)	51	51	34	51(48)	51(48)	34	34	
	예술	272	음악	102	34(자)	34	34	0	17(16)	17(16)	17	17
			미술	136		17	17	17	17(16)	17(16)	34	34
	영어	340	340		51	51	51	51(48)	51(48)	68	68	
	선택	170	한문	102		17	17	17			34	34
			생활외국어	(택1)								
환경			0									
보건			(택1)									
진로와직업			51	17(자)	17	17	0			17	17	
교과 시수 합계	3,060	2924	136	510	510	374	510 (480)	510 (480)	510	510		
자 유 학 기 활 동	170~	진로탐색활동	34	기가17, 진직17			34					
		주제선택활동	34	과학17, 진로17			34					
		체육예술활동	68	체17,스17,음34			68					
		동아리활동	34	국어17, 사회17			34					
		자유학기 시수 합계	170~	170				170				
창 의 적 체 험 활 동	306	자율활동	72		12	12	12	12	12(11)	12	12	
		동아리활동	132	34(스)	17	17	17	17(16)	17(16)	15	15	
		봉사활동	30		5	5	5	5(4)	5	5	5	
		진로활동	72	17(자)	17	17	0	17(16)	17(16)	2	2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 합계	306	306	51	51	51	34	51(48)	51(48)	34	34
학 교 스 포 츠 클 럽 활 동	136	기존창체활용(~68)	34							17	17	
		창체순증	102	17(자)	17	17	0	17(16)	17(16)	17	17	
		교과감축	0									
		학교스포츠클럽 시수 합계	136	136	17	17	17	0	17(16)	17(16)	34	34
총 수업 시간 수	3,366 (자,스제외)	3536	170 (순증)	578	578	578	578 (544)	578 (544)	578	578		
학기당 이수 과목 수	~8			8	8		8	8	8	8		

()안 시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수업시수 감축한 것을 뜻함.

구분	기준 시수	운영 시수	증감조정 시수 (스, 자, 체)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	2학기 (기본)	2학기 (자유)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교 과 (군)	국어	442	391	17(자),34(감)	68	68	51	68	68	68(64)	68(64)	
	사회/ 도덕	510	153	17(자)	51	51	34			34(32)	34(32)	
			역사	170					51	51	34(32)	34(32)
			도덕	170		34	34	34	51	51		
	수학	374	391	17(자),증34	68	68	51	68	68	68(64)	68(64)	
	과학/ 기술·가 정	680	과학	357	17(자)	51	51	34	68	68	68(64)	68(64)
			기술·가정	255	17(자)	51	51	34	51	51	34(32)	34(32)
			정보	34					17	17		
	체육	272	255	17(자)	51	51	34	51	51	34(32)	34(32)	
	예술	272	음악	119	17(자)	34	34	17	17	17	17(16)	17(16)
			미술	136		17	17	17	17	17	34(32)	34(32)
	영어	340	340		51	51	51	51	51	68(64)	68(64)	
	선택	170	한문	102		17	17	17			34(32)	34(32)
			생활외국어	(택1)								
환경			0									
보건			(택1)									
진로와직업			51	17(자)	17	17	0			17(16)	17(16)	
교과 시수 합계	3,060	2924	136	510	510	374	510	510	510	510		
자 유 학 기 활 동	진로탐색활동	170~	34	가17, 진직17			34					
	주제선택활동	170~	34	국17, 진로17			34					
	체육예술활동	170~	68	체17, 스포17 수17, 음17			68					
	동아리활동	170~	34	과17, 사17			34					
	자유학기 시수 합계	170~	170				170					
창 의 적 체 험 활 동	자율활동	306	72		12	12	12	12	12	12(11)	12(11)	
	동아리활동	306	98	34(스)	17	17	17	17	17	15	15(14)	
	봉사활동	306	30		5	5	5	5	5	5(4)	5	
	진로활동	306	55	17(자)	17	17	0	17	17	2	2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 합계	306	255	51	51	51	34	51	51	34(32)	34(32)	
학 교 스 포 츠 클 럽 활 동	기존창체활동(~68)	136	34							17(16)	17(16)	
	창체순증	136	85	17(자)	17	17	0	17	17	17(16)	17(16)	
	교과감축	136	0									
	학교스포츠클럽 시수 합계	136	119	17	17	17	0	17	17	34(32)	34(32)	
총 수업 시간 수	3,366 (자,스제외)	3468	102 (순증)	578	578	578	578	578	578 (544)	578 (544)		
학기당 이수 과목 수	~8			8	8		8	8	8	8		

()안 시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수업시수 감축한 것을 뜻함.

나. 인월고등학교

2020 전학년

2020학년도 전체학년 교육과정 편성표

교과 영역	교과(군)	과목	과목 유형	이수 구분	선택 과목 수	기준 단위	1학년		2학년		3학년		운영 단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기초	국어	국어	공동	지정	1	8	4	4					8
기초	수학	수학	공동	지정	1	8	4	4					8
기초	영어	영어	공동	지정	1	8	4	4					8
기초	한국사	한국사	공동	지정	1	6	3	3					6
탐구	사회	통합사회	공동	지정	1	8	4	4					8
탐구	과학	통합과학	공동	지정	1	8	4	4					8
탐구	과학	과학탐구실험	공동	지정	1	2	1	1					2
체육·예수	체육	체육	일반	지정	1	5	2	2					4
체육·예수	예술	음악	일반	지정	1	5	2	2					4
생활·교양	기술·가정	기술가정	일반	지정	1	5	2	2					4
기초	국어	독서	일반	지정	1	5			6				6
기초	국어	문학	일반	지정	1	5				6			6
기초	수학	수학 I	일반	지정	1	5			5				5
기초	수학	수학 II	일반	지정	1	5				5			5
기초	영어	영어 I	일반	지정	1	5			4				4
기초	영어	영어 II	일반	지정	1	5				4			4
탐구	사회	생활과윤리	일반	선택1	3	5			3	3			6
탐구	사회	사회문화	일반	선택1	3	5			3	3			6
체육·예수	체육	운동과건강	일반	지정	1	5			2	2			4
체육·예수	예술	미술	일반	지정	1	5			2	2			4
생활·교양	제2외국어	일본어 I	일반	지정	1	5			2	2			4
탐구	과학	지구과학 I	일반	선택1	3	5			3	3			6
기초	국어	화법과작문	일반	지정	1	5					6		6
기초	국어	언어와매체	일반	지정	1	5						6	6
기초	수학	확률과통계	일반	지정	1	5					4		4
기초	수학	실용수학	진로	지정	1	5						4	4
기초	영어	영어독해와작문	일반	지정	1	5					5		5
기초	영어	실용영어	진로	지정	1	5						5	5
탐구	사회	윤리와사상	일반	선택2	3	5					3	3	6
탐구	과학	화학 I	일반	선택2	3	5					3	3	6
탐구	과학	생명과학 I	일반	선택2	3	5					2	2	4
체육·예수	체육	스포츠생활	진로	지정	1	5					1	1	2
체육·예수	예술	음악	일반	지정	1	5					2	2	4
생활·교양	교양	진로와직업	교양	지정	1	5					2	2	4
생활·교양	교양	논술	교양	지정	1	5					2	2	4
학기별 교과 이수단위						180	30	30	30	30	30	30	
순증 단위(공동 교육과정, 소수 선택, 진로중점학교 과정 과목)													
학기별 창의적체험활동 이수단위						24							

*코로나 19로 인하여 수업시수 감축(기준 1 단위 17 회->16 회)

꿈과 열정이 살아 숨 쉬는 인월인

2020년 입학생

영역	교과(군)	과목명	과목유형	기준단위	운영단위	1학년		2학년		3학년		영역합계	필수이수단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기초	국어	국어	공통	8	8	4	4					32	10	
		문학	일반	5	6				6					
		화법과 작문	일반	5	6					6				
		독서	일반	5	6			6						
		언어와 매체	진로	5	6						6			
	수학	수학	공통	8	8	4	4					26	10	
		수학 I	일반	5	5			5						
		수학 II	일반	5	5				5					
		확률과 통계	일반	5	4					4				
		실용수학	진로	5	4						4			
	영어	영어	공통	8	8	4	4					26	10	
		영어 I	일반	5	4			4						
		영어 II	일반	5	4				4					
		영어 독해와 작문	일반	5	5					5				
		실용영어	진로	5	5						5			
한국사	한국사	공통	5	6	3	3					6	6		
탐구	사회	통합사회	공통	8	8	4	4					8	10	
		과학	공통	8	8	4	4					10	12	
	학생선택	과학탐구실형		공통	2	2	1	1					34	
		사회문화/생활과윤리/윤리와사상/동아시아사/세계사	(택3)	일반	5	6			3	3				
			일반	5	6			3	3					
			일반	5	6					3	3			
		화학 I / 물리 I / 생명과학 I / 지구과학 I	(택3)	일반	5	6			3	3				
일반	5		4					2	2					
체육·예술	체육	체육	일반	5	4	2	2					10	10	
		운동과 건강	일반	5	4			2	2					
		스포츠 생활	진로	5	2					1	1			
	예술	음악	일반	5	4	2	2					12	10	
		음악감상과 비평	진로	5	4					2	2			
미술	일반	5	4			2	2							
생활·교양	기술·가정/제2외국어/한문/교양	기술·가정	일반	5	4	2	2					16	16	
		일본어 I	일반	5	4			2	2					
		진로와 직업	일반	5	4					2	2			
		논술	일반	5	4					2	2			
학기별 이수단위 소계						30	30	30	30	30	30	180	180	

영역	기준시간	운영시간	1학년		2학년		3학년		계	필수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창의적 체험활동	408	408	자율활동	30	30	30	30	30	30	180	408
			동아리활동	16	16	16	16	16	16	96	
			봉사활동	5	5	5	5	5	5	30	
			진로활동	17	17	17	17	17	17	102	
			이수시간 합계	68	68	68	68	68	68	408	
학기별 이수단위			4	4	4	4	4	4	24	24	

학기당 과목수	10	10	9	9	10	10		
과학탐구실형, 체육·예술, 교양성격의 선택과목, 진로 선택 과목, 실기실습과목의 과목수	3	3	2	2	2	5		
학기당 8개 과목수 제한 적용 과목수	7	7	7	7	8	5		
학기별 총 이수 단위	34	34	34	34	34	34	240	240
학년별 총 이수 잔위	68		68		68			

*코로나 19로 인하여 수업시수 감축(기준 1 단위 17 회->16 회)

2019 년입학생

영역	교과(군)	과목명	과목유형	기준단위	운영단위	1학년		2학년		3학년		영역합계	필수이수단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기초	국어	국어	공통	8	8	4	4					32	10	
		문학	일반	5	6				6					
		화법과 작문	일반	5	6					6				
		독서	일반	5	6			6						
		언어와 매체	진로	5	6						6			
	수학	수학	공통	8	8	4	4					26	10	
		수학 I	일반	5	5			5						
		수학 II	일반	5	5				5					
		확률과 통계	일반	5	4					4				
	영어	영어	공통	8	8	4	4					26	10	
		영어 I	일반	5	4			4						
		영어 II	일반	5	4				4					
		영어 독해와 작문	일반	5	5					5				
		실용영어	진로	5	5						5			
한국사	한국사	공통	5	6	3	3					6	6		
탐구	사회	통합사회	공통	8	8	4	4					8	10	
	과학	통합과학	공통	8	8	4	4					10	12	
		과학탐구실험	공통	2	2	1	1							
	학생선택	사회문화/생활과학/윤리와사상/동아시아사/세계사	(택3)	일반	5	6			3	3			34	
			일반	5	6			3	3					
			일반	5	6					3	3			
화학 I / 물리 I / 생명과학 I / 지구과학 I		(택3)	일반	5	6			3	3					
	일반	5	4					2	2					
체육·예술	체육	체육	일반	5	4	2	2					10	10	
		운동과 건강	일반	5	4			2	2					
		스포츠 생활	진로	5	2					1	1			
	예술	음악	일반	5	4	2	2					12	10	
		음악감상과 비평	진로	5	4					2	2			
		미술	일반	5	4			2	2					
생활·교양	기술·가정/제2외국어/한문/교양	기술·가정	일반	5	4	2	2					16	16	
		일본어 I	일반	5	4			2	2					
		진로와 직업	일반	5	4					2	2			
		논술	일반	5	4					2	2			
학기별 이수단위 소계						30	30	30	30	30	30	180	180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	기준시간	운영시간	1학년		2학년		3학년		계	필수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활동	408	408	30	30	30	30	30	30	180	408
	동아리활동			16	16	16	16	16	16	96	
	봉사활동			5	5	5	5	5	5	30	
	진로활동			17	17	17	17	17	17	102	
	이수시간 합계			68	68	68	68	68	68	408	
학기별 이수단위				4	4	4	4	4	4	24	24

학기당 과목수	10	10	9	9	10	10		
과학탐구실험, 체육·예술, 교양성격의 선택과목, 진로 선택 과목, 실기실습과목의 과목수	3	3	2	2	2	5		
학기당 8개 과목수 제한 적용 과목수	7	7	7	7	8	5		
학기별 총 이수 단위	34	34	34	34	34	34	240	240
학년별 총 이수 잔위	68		68		68			

*코로나 19 로 인하여 수업시수 감축(기준 1 단위 17 회->16 회)

꿈과 열정이 살아 숨 쉬는 인월인

2018년 입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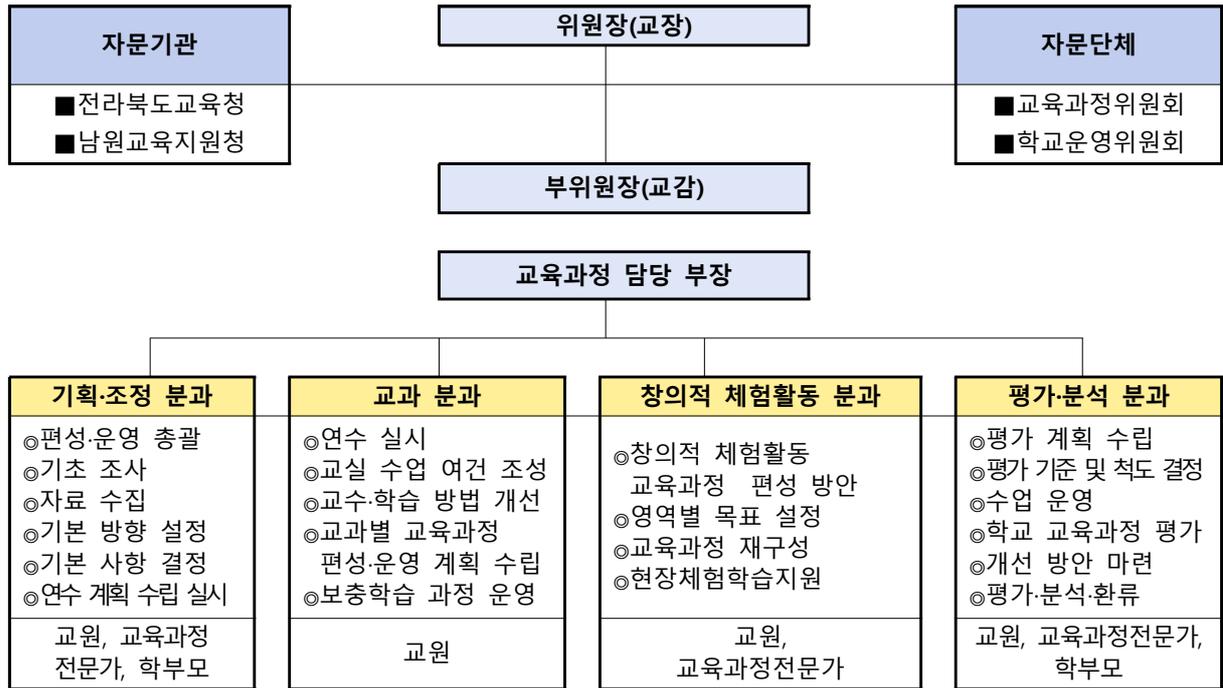
영역	교과 (군)	과목명	과목 유형	기준 단위	운영 단위	1학년		2학년		3학년		영역 합계	필수이수단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기초	국어	국어	공통	8	8	4	4					32	10
		문학	일반	5	6				6				
		화법과 작문	일반	5	6					6			
		독서	일반	5	6				6				
		언어와 매체	진로	5	6						6		
	수학	수학	공통	8	8	4	4					26	10
		수학 I	일반	5	5			5					
		수학 II	일반	5	5				5				
		확률과 통계	일반	5	4					4			
		실용수학	진로	5	4						4		
	영어	영어	공통	8	8	4	4					26	10
		영어 I	일반	5	4			4					
		영어 II	일반	5	4				4				
영어 독해와 작문		일반	5	5					5				
실용영어		진로	5	5						5			
한국사	한국사	공통	5	6	3	3					6	6	
탐구	사회	통합사회	공통	8	8	4	4					8	10
		통합과학	공통	8	8	4	4					10	12
		과학탐구실형	공통	2	2	1	1						
	학생 선택	사회문화/ 생활과윤리/ 윤리와사상/ 동아시아사/ 세계사 (택3)	일반	5	6			3	3			34	
			일반	5	6			3	3				
			일반	5	6					3	3		
화학 I / 물리 I / 생명과학 I / 지구과학 I (택3)		일반	5	6			3	3					
		일반	5	6					3	3			
		일반	5	4					2	2			
체육·예술	체육	체육	일반	5	4	2	2					10	10
		운동과 건강	일반	5	4			2	2				
		스포츠 생활	진로	5	2					1	1		
	예술	음악	일반	5	6	1	1			2	2	12	10
		음악감상과 비평	진로	5	0								
		미술	일반	5	6	1	1	2	2				
		미술감상과 비평	일반	5	0								
생활·교양	기술·가정/ 제2외국어/ 한문/교양	기술·가정	일반	5	4	2	2					16	16
		일본어 I	일반	5	4			2	2				
		진로와 직업	일반	5	4					2	2		
		논술	일반	5	4					2	2		
학기별 이수단위 소계						30	30	30	30	30	30	180	180

영역	기준 시간	운영 시간	1학년		2학년		3학년		계	필수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창의적 체험활동	408	408	30	30	30	30	30	30	180	408
			16	16	16	16	16	16	96	
			5	5	5	5	5	5	30	
			17	17	17	17	17	17	102	
			68	68	68	68	68	68	408	
학기별 이수단위			4	4	4	4	4	4	24	24

학기당 과목수	10	10	9	9	10	10		
과학탐구실형, 체육·예술, 교양성격의 선택과목, 진로 선택 과목, 실기실습과목의 과목수	3	3	2	2	2	5		
학기당 8개 과목수 제한 적용 과목수	7	7	7	7	8	5		
학기별 총 이수 단위	34	34	34	34	34	34	240	240
학년별 총 이수 잔위	68		68		68			

*코로나 19 로 인하여 수업시수 감축(기준 1 단위 17 회->16 회)

다. 학교 교육과정위원회 조직



※ 2020학년도 코로나19 관련 3차 휴업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방안

1) 관련 및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 미래인재과-4900(2020.3.10.), 학교교육과-3937(2020.3.13.)
-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2248(2020.3.20.)

2)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중·고)

- (수업일수 조정) 교육부의 수업일수 10일 감축 권고에 따라 수업일수를 최소 180일 이상의 범위에서 조정할 것을 권고함
 - 총 휴업기간(25일) 중 감축일수를 제외한 휴업기간(15일)에 대한 학사일정 조정 필요
 - 교육부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및 전라북도교육청 지침을 참조하여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감축시기와 범위는 학교구성원 협의로 자율적 결정하되, 1, 2학기 수업일수의 균형을 유지할 것을 권장(예, 90일+90일=180일)
 - 휴식권(학생, 교사)보장, 학기말 정리 및 새 학기 준비를 위해 하계방학기간 최소한 1~2주 운영 권장(중: 2주 이상, 고: 1~2주 이상)
- (수업시수 조정)

[수업시수 감축 시 고려사항]

- ❖ [기본사항] 2020학년도 학교 교육과정 편제표를 기준으로 함
- ❖ 학교장은 교과별 성취기준 중심으로 교과 내용을 재구성하여 핵심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며, 다음 학기 수업에 연계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 방안 마련·운영
- ❖ 교과-창의적체험활동 간, 교과 간, 자유학기 활동,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등 시간의 균형을 유지할 것을 권장(균형 있는 학습 고려)

꿈과 열정이 살아 숨 쉬는 인월인

- (중학교) 34주 기준(학년 단위)에서 32주 기준으로 변경 권장
- (고등학교) 1단위 17회 기준(학기 단위)에서 **16회 기준으로 변경** 권장
(다만, 연간 운영 교과외의 경우 1학기 15회, 2학기 17회 운영 가능)

■ (교과 교육과정 재구성) 수업일수 감축에 따른 교과 학습 내용 재구성 필요

- 교과협의회를 통해 교과 진도 계획 및 학습 내용 재구성(교과 성취기준 반영)
- 현재의 안내형에서 **소통중심의 관리형 학습지원 체제**로 전환하고, 개별 온라인, IT 접근성*에 따른 학생 개인 학습격차 최소화 노력

※ 2020학년도 코로나19 관련 4차 휴업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방안

1) 수업일수 조정

- (중3, 고3) 현재 180일 이상에서 4차 추가 휴업 기간 3일 제외한 **177일 이상 운영**
- (중1~2, 고1~2) 현재 180일 이상에서 4차 추가 휴업 기간 7일 제외한 **173일 이상 운영**
- 교육부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및 전라북도교육청 지침을 참조하여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감축시기와 범위는 학교구성원 협의로 자율적 결정**
- 학년별로 수업일수 감축기준이 다름에 주의하여 1, 2학기 수업일수의 균형을 유지할 것을 권장 (수업일수 조정 예시)

학년		1학기	2학기	수업일수
중·고	3	88(89)	89(88)	177
		87(90)	90(87)	
	1,2	86(87)	87(86)	173

- 휴식권(학생, 교사)보장, 학기말 정리 및 새 학기 준비를 위해 **하계방학기간 최소한 1~2주 운영 권장**(중: 2주 이상, 고:1~2주 이상)

2) 수업시수 조정

○ 수업시수 감축 시 고려사항

- ❖ [기본사항] 2020학년도 학교 교육과정 편제표를 기준으로 함
- ❖ 학교장은 **교과별 성취기준 중심**으로 교과 내용을 재구성하여 핵심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며, 다음 학기 수업에 연계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 방안** 마련·운영
- ❖ 교과-창의적체험활동 간, 교과 간, 자유학기 활동,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등 **시간의 균형성을 유지할 것**을 권장(균형 있는 학습 고려)
 - (중학교) 현재 시수에서 학년별 감축 일수 비례하여 시수 조정 운영
 - 32주(학기당 16주) 이상 운영을 권장하나, 부득이한 경우 **감축된 수업일(학교별 운영 시간표 기준)에 운영되는 교과 및 창체에 한해 30주(학기당 15주)로 운영 가능**
 - (고등학교) 1, 2학기 각각 1단위 16회 이상 운영 권장하나, 부득이한 경우 **감축된 수업일(학교별 운영 시간표 기준)에 운영되는 교과 및 창체에 한해 1회 추가 감축 운영 가능(1단위 15회 운영 가능)**

3) 교과 교육과정 재구성 : 수업일수에 따른 교과 학습 내용 재구성 필요

- 교과협의회를 통해 교과 진도 계획 및 학습 내용 재구성(교과 성취기준 반영)
- 학년별·교과별·교과간 협의를 통해 과제 제시 등 **학생 학습량은 1일 활동량** 고려하여 안내
- 학생 개별 온라인, IT 접근성*에 따른 개인 학습격차 최소화 노력

※ 가정 내 PC, 스마트폰 접근이 어려운 학생에 대한 대체학습 방안 강구

참고: 2015 개정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 전라북도 고등학교 교육과정(전라북도교육청 고시 제 2020-5호)

2 연간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확보

▣ 학사일정<1학기> 수업일수 : 86일(1,2학년), 90일(3학년)

요일	월	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출석일수		
										주계	누계	
		1		개학준비기간	개학준비기간	개학준비기간	9 중3, 고3 개학	10		11	0/2	0/2
4		2	12	13	14	15 총선일	16 중1,2 고1,2개학 세월호 추모일	17		18	2/4	2/6
		3	19	20	21	22	23	24 고3 모의평가	25		5	7/11
		4	26	27	28	29	30 석가탄신일	1		2	4	11/15
		5	3 개교 기념일	4	5 어린이날	6	7	8		9	4	15/19
5		6	10	11	12 고3 모의평가	13	14	15		16	5	20/24
		7	17	18	19	20	21	22		23	5	25/29
		8	24	25	26	27	28	29		30	5	30/34
		9	31	1	2	3	4	5		6 현충일	5	35/39
6		10	7	8	9 영어듣기평가 (고1)	10 1차고사(고) 영어듣기평가 (고2)	11 1차고사(고) 영어듣기평가 (고3)	12 1차고사(고)	13		5	40/44
		11	14	15	16	17	18 고 전체수능 모의평가	19		20	5	45/49
		12	21	22	23 영어듣기평가 (중1)	24 영어듣기평가 (중2)	25 영어듣기평가 (중3)	26		27	5	50/54
		13	28	29 학부모 상담주간안내	30	1	2	3		4	5	55/59
7		14	5	6 학부모 상담주간	7	8 수업공개	9	10		11	5	60/64
		15	12	13	14	15	16	17		18	5	65/69
		16	19	20	21	22 고3모의평가	23	24		25	5	70/74
		17	26	27	28 2차고사 (순회과목)	29 2차고사 (순회과목)	30 2차고사	31		1	5	75/79
8		18	2	3	4 진로체험 (5-7교시))	5	6	7 방학식	8		5	80/84
		19	9	10 여름방학	11 여름방학	12 여름방학	13 방학식	14 여름방학	15	광복절	0	
		20	16	17 여름방학	18 여름방학	19 여름방학	20 여름방학	21 여름방학	22		0	
		21	23	24 여름방학	25 여름방학	26 개학	27	28		29	3	83/87
		22	30	31 대입수시학생 선발	1	2 1학기종료	2학기시작	2학기			3	86/90
					수업일수 /수업시수	수업일수 /수업시수	수업일수 /수업시수	수업일수 /수업시수	수업일수 /수업시수		일수/ 시수	등교 일
			1학년	17/17	16/16	18/18	17/17	18/18		합계	86/86	86
			2학년	17/17	16/16	18/18	17/17	18/18		합계	86/86	86
			3학년	18/18	17/17	18/18	18/18	19/19		합계	90/90	90

*개교기념일(중: 5,3 / 고: 3.13)

꿈과 열정이 살아 숨 쉬는 인월인

▣ 학사일정<2학기> 수업일수 : 88일(초학년)

요일	월	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출석일수					
										주계	누계				
9	1			1학기	1학기	1학기중요일	3	2학기시작	4	5	2	2			
	2	6	7	학생학부모 상담주간(안내)	8	9	10	11	12	5	7				
	3	13	14	학생학부모 상담주간(상담)	15	영어듣기평가 (중1)	16	영어듣기평가 (중3)	18	19	5	12			
	4	20	21		22	영어듣기평가 (고1)	23	영어듣기평가 (고3)	25	26	5	17			
	5	27	28		29	30	추석연휴	1	추석	2	추석연휴	3	개천절	2	19
10	6	4	5					9	한글날	10	4	23			
	7	11	12		13	1차고사(고)	14	1차고사(중,고) (순회과목)	15	1차고사(중,고)	16	5	28		
	8	18	19		20	21	체육대회	22	23	24	5	33			
	9	25	26		27	28	29	30	31	5	38				
11	10	1	2	3	학생의 날	4	5	6	7	5	43				
	11	8	9	10	11	12	13	14	5	48					
	12	15	16	17	18	고 1,2모의평가	20	21	5	53					
	13	22	23	24	25	26	27	28	5	58					
	14	29	30	1	2	3	수능일	4	5	4	62				
12	15	6	7	8	2차고사	9	2학기2차고사 (순회과목)	10	2학기2차고사 (순회과목)	11	5	67			
	16	13	14	15	16	17	18	후기고내신산출기 준일	19	5	72				
	17	20	21	22	23	후기고내신성적 처리마감	24	25	성탄절	26	4	76			
	18	27	28	29	학교축제	30	31	1	신정	2	4	80			
1	19	3	4	5	6	7	대입정시원서 접수(7-11일)	8	9	5	85				
	20	10	11	12	13	졸업식 및 종업식	14	겨울방학	15	겨울방학	3	88			
	17	겨울 방학	18	겨울방학	19	겨울방학	20	겨울방학	21	겨울방학	22	겨울방학	23		
	24	겨울 방학	25	겨울방학	26	겨울방학	27	겨울방학	28	겨울방학	29	겨울방학	30		
2	31	겨울 방학	1	겨울방학	2	겨울방학	3	겨울방학	4	겨울방학	5	겨울방학	6		
	7		8	겨울방학	9	겨울방학	10	겨울방학	11	설날연휴	12	설날연휴	13	설날 연휴	
	14	학년말 방학	15	학년말 방학	16	학년말 방학	17	학년말 방학	18	학년말 방학	19	학년말 방학	20	학년말 방학	
	21	학년말 방학	22	학년말 방학	23	학년말 방학	24	이월인사 학급배정	25	전직 업무출근일	26	학년말 방학	27	학년말 방학	
	28	학년말 방학		학년말 방학		학년말 방학		학년말 방학		학년말 방학		학년말 방학			
				수업일수 /수업시수		수업일수 /수업시수		수업일수 /수업시수		수업일수 /수업시수		일수/ 시수	년 등교 일		
		1학년		19/19		19/18		18/17		17/17		15/15	합계	88/86	174
		2학년		19/19		19/18		18/17		17/17		15/15	합계	88/86	174
		3학년		19/19		19/18		18/17		17/17		15/15	합계	88/86	178

※ 위 학사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한 명도 놓치지 않는 참학력향상 교육

가. 참학력 신장을 위한 평가 개선

1) 주요 내용

<p>수행평가 확대 및 활성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교과 40% 이상 확대 반영 (코로나 19로 인하여 1학기에 한하여 20%이상) ○ 과정·성장 중심 수행평가 방법 다양화 ○ 정의적 능력 평가 포괄 ○ 과제형 수행평가 실시 전면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 교육과정 외에 학생이 수행한 결과물에 대하여 점수를 부여하는 과제형 수행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 학생중심수업에 맞는 과정중심형 수업밀착형 평가 ○ 수행평가 예고제 시행 - 학년 초 계획수립 후 공지 ○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기간(3일) 운영 ○ 관리 강화로 수행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도 제고
<p>지필평가 축소 및 내실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필 60% 이하 축소 반영 ○ 지필평가 재량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필평가 횟수 적정화 (구성원의 합의 존중) - 서술(논술)형 비율 조정 가능 (서술(논술)형 문항은 국어, 사회(역사포함), 수학, 과학, 영어 교과의 경우 지필평가 총 배점의 20% 이상, 도덕 교과는 지필평가 총 배점의 10% 이상 출제를 권장하며, 이외의 교과는 가급적 서술(논술)형 평가 문항을 포함하여 출제) ○ 성취기준 도달 중점 ○ 수업 활동이 녹아있는 평가 ○ 문항출제 및 검토 책임제
<p>기록 및 피드백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수업-평가-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의 유의미한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 중 활동 누가기록 ○ 배움과 성장 중심 피드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취기준 도달 중점 - 교수학습 개선 및 성찰 - 구성원 간 새로운 관계 설정

* **코로나 19 온라인 개학**으로 인한 과목별 학생 평가비율은 2020학년도 인월중고 학업성적 관리규정에 제시한 다음의 항목에 따라 실시한다.

※ 코로나 19로 인한 원격수업 장기화 및 등교 개학 이후 원격수업 재개 등의 우려로 인하여 2020학년도 1학기 학생평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행평가 반영비율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단, 수행평가 반영비율 조정은 2020학년도 1학기에 한정된다. 수행평가 반영비율 조정은 의무 사항이 아니며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수행평가 반영비율은 교과협의회를 통해 조정된 뒤 학교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조정된 비율로 실시할 수 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과목별 수행평가 반영 비율	학기단위 과목 총점의 40% 이상	학기단위 과목 총점의 20% 이상
지필평가 1회만 실시할 수 있는 수행평가 반영 비율	학기단위 과목 총점의 70% 이상	학기단위 과목 총점의 60% 이상

2) 결시생 인정점 부여 및 관리

수행평가 결시자에게는 1회의 응시 기회를 다시 부여한다. 이때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수행평가 처리 기준(결시자 포함)은 교과협의회를 통하여 협의하고, 학생의 이의신청을 거친 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후 적용한다.

3) 정기고사 결시생 인정점 부여 및 관리

구분	절차별 업무처리
학업성적 관리규정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정점 부여 관련 규정 확인 ○ 인정 사유 및 인정점 비율 규정 제정 확인 ○ 제출시기 및 필요 증빙자료 확인 : 결석계, 담임의견서, 공문, 의사의 진단서(의견서), 진술서, 사망 확인서 등의 서류
서류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 실시 상황표 또는 결석계 작성 및 제출 ○ 인정점 부여 관련 증빙자료 확인 : 서류 제출 기한 확인
인정점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결정 증빙서류 검토 확인 - 인정점 부여(공결, 경조사, 생리결, 질병결, 기타결, 미인정결, 부정행위 등) ○ 인정점 대상자 관련 제출 자료 학교장 결재 ○ NEIS 결시생 인정점 부여 기준 입력 ※[성적]-[성적처리선행작업]-[결시생인정점부여기준관리]-{일반결시}-{기준점수(과목)}-{평균점수 비율(전입생제외)}로 설정
학기말 성적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적산출 대상(고사/영역) 관리 (※ 반드시 '기준고사/영역' 설정시 1차고사↔2차고사 교차설정) ○ 성적산출 학생 관리 ○ NEIS 인정점 산출 대상자 : 인정점 부여 ○ 학기말 성적 산출 (과목별) ○ 인정점 산출 대상자 자료와 증빙자료 합철 보관 (감사시 확인 자료임)

4) 인정비율 및 인정점 처리 방법

정기고사 및 수행평가에는 예외 없이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정 감염병, 병원입원 등에 의하여 일반학생들과 함께 평가하기가 어려우나 학생과 보호자 등이 응시를 원할 경우 특별시험장을 설치하여 평가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 준다.

(중등) 그러나 결시를 하는 경우, **기준점수 산출방법[2. 나. 다. 라. 항] 및 인정비율[4.]**에 따르며 그 결과는 학생과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출결은 교육부 훈령에 기준하여 처리하며, **평가 인정점의 처리는 인정점 산출 방법[3.]**에 따른다.

(고등) 그러나 결시를 하는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시에 따른 본교의 **기준점수 산정방법[5] 나. 다. 라. 항] 및 인정비율[7]]**을 결정한다. 그 결과는 학생과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출결은 교육부 훈령에 기준하여 처리하며, **평가 인정점의 처리는 인정점 산출 방법[5] 라. 항]**에 따른다.

5) 기준점수 산출방법

가. 인정점 산출은 정상적인 평가에 참여한 학생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지필평가 인정점을 부여하기 위한 **인정기준점수**는 동일 학기 내 지필평가 성적을 기준으로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최종인정점 산출방법은 '평균점수 비율(전입생 제외)'로 한다.(아래 '다'항과 '라'항에도 동일한 방법을 적용함)

다. **동일학기 내 기준점수에 해당하는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에 따라 기준점수를 정한다. 이 때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후 기준점수로 활용한다.

1순위 : 이전 학기내 동일교과(동일시수)의 성적

2순위 : 이전 학기내 가장 유사한 교과의 성적

1, 2순위에 해당하는 지필평가의 기준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라'항을 참고하여 기준점수로 활용한다.

※ 이전 학기내의 성적 활용시 1, 2차 고사 성적 중 선택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에서 결정함

라. '다'항에 해당하는 지필평가의 기준점수가 없는 경우,

1) (일부 학생 미응시) 정상적으로 평가에 응시한 학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동일 교과의 평균점수를 기준점으로 하여 결시 사유에 따라 인정점수를 부여한다.**

2) (학급 단위 미응시) 시험일정 조정을 우선 검토하되, 불가피할 경우 '일부 학생 미응시'의 경우를 참고하여 교육지원청과 학교의 협의를 통해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인정점 기준을 마련한다

3) (학교 단위 미응시) 시험일정 조정을 우선 검토하되, 불가피할 경우 교육지원청과 학교의 협의를 통해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인정점 기준 도는 대체 시험 방안을 마련한다.

6) 평균점수 비율을 활용한 최종인정점 산출 방법(전입생 제외)

고사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학생들의 과목별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인정점 산출

$$\text{최종 인정점} = \text{기준점수} \times \frac{\text{결시고사 평균}}{\text{기준고사 평균}} \times \text{인정점 부여비율}$$

과목	기준고사(1차고사)		결시고사(2차고사)	최종 인정점
	평균	기준점수	평균	
수학	68.0	65	62.3	47.64

* 1학기 2차고사를 질병 결시한 학생의 최종 인정점 계산
 1) 68.0 : 65 = 62.3 : 인정기준점수
 2) 인정기준점수 = (65×62.3) / 68 = 59.55
 3) 인정기준점수 × 0.8(병결 인정점 부여비율) = 47.64
 4) 최종 인정점 = 47.64

7) 인정비율 부여 방법

가. 100% 인정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일 단위로 적용)

-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법정 감염병(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인한 결석
- 2) 병역 관계 등 공적 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결석
-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인한 결석
- 4)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의 경조사로 인한 결석
- 5) 공상으로 인한 결석
- 6)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 및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기간 중의 결석
- 7)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석으로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기간 중의 결석
- 8)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결석

나. 80% 인정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 1) 질병으로 인한 결석(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및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또는 담임교사 확인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2)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타 사유에 의한 결석(담임교사 의견서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한 결석계 제출)
- 3) 고사 기간 중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계 제출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다. 해당학년 학생 성적의 최하점의 차하점으로 부여하는 경우: 미인정결석

라. **0점**으로 처리하는 경우

- 1) 부정행위자의 부정행위를 한 해당 과목
- 2) 부정행위 협조자도 부정행위자와 동일하게 처리

마. 코로나 19로 인한 결시자의 경우

- 1)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인정점 부여

대상	등교중지 기간	출결처리 등	인정점
확진학생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미제공	기준점수의 100%
의사학생	14일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미제공	기준점수의 100%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14일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미제공	기준점수의 100%
자가격리학생	14일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미제공	기준점수의 100%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미제공	기준점수의 100%
유증상학생	증상발현* 후 3~4일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출석인정결석 ○진단검사 결과 음성인 학생의 별도 시험실 제공	기준점수의 100%

- 2) 기타 사유 결시 학생의 인정점 부여

대상	조건	출결처리 등	인정점
고위험군학생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출석인정결석 ○ 별도 시험실 제공	기준점수의 100%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관심', '주의'	○질병결석 ○ 별도 시험실 제공	기준점수의 80%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출석인정결석	
기타결석 (감염 우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기타 결석 ○ 별도 시험실 제공	기준점수의 80%
미인정 결석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학교장이 합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결석	미인정 결석	최하점의 차하점

※ 정기고사 기간에 원칙적으로 교외체험학습을 허용하지 않고, 코로나19로 인한 교외체험학습(가정 학습) 신청에 대한 허가도 허용하지 않음. (상황에 따라 별도 시험실 제공)

8) 성취도 평정(중등)

성취도는 원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성취율(원점수)	성취도
90% 이상	A
80% 이상 ~ 90% 미만	B
70% 이상 ~ 80% 미만	C
60% 이상 ~ 70% 미만	D
60% 미만	E

단, 체육·음악·미술교과의 과목의 성취도는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성취율(원점수)	성취도
80% 이상 ~ 100%	A
60% 이상 ~ 80% 미만	B
60% 미만	C

9) 과목별 석차등급 및 성취도 평정(고등)

과목별 석차등급은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비율 환산 점수의 합계에 의한 석차 순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단, 등급별 학생 수는 수강자수와 누적 등급 비율을 곱한 값을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석차등급	석차누적비율	고1(14명)	고2(17명)	고3 (18명)
1등급	~ 4%이하	1	1	1
2등급	4%초과 ~ 11%이하	1	1	1
3등급	11%초과 ~ 23%이하	1	2	2
4등급	23%초과 ~ 40%이하	3	3	3
5등급	40%초과 ~ 60%이하	2	3	4
6등급	60%초과 ~ 77%이하	3	3	3
7등급	77%초과 ~ 89%이하	1	2	2
8등급	89%초과 ~ 96%이하	1	1	1
9등급	96%초과 ~ 100%이하	1	1	1

가) 과목별 성취도는 성취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정하되, 기준 성취율에 따른 분할 점수를 과목별로 학교가 설정할 수 있다.

성취율	성취도
90% 이상	A
80% 이상 ~ 90% 미만	B
70% 이상 ~ 80% 미만	C
60% 이상 ~ 70% 미만	D
60% 미만	E

나) 예외 교과

단, 보통교과 공통과목의 과학탐구 실험, 보통교과 체육·예술 교과(군)의 일반 선택 과목, 보통교과 진로 선택 과목(진로 선택으로 편성된 전문 교과 포함), 전문교과 I 국제계열 교과(군)의 융합과학 탐구, 과학과제 연구, 물리학 실험, 화학실험, 생명과학 실험, 지구과학 실험, 전문교과 I 국제 계열 교과(군)의 사회 탐구 방법, 사회과제 연구의 성취도는 원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성취율	성취도
80% 이상 ~ 100%	A
60% 이상 ~ 80% 미만	B
60% 미만	C

꿈과 열정이 살아 숨 쉬는 인월인

※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학업성적 처리방식(2018학년도 신입생 - 2020학년도 3학년)

구 분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		석차등 급	비 고	
		원점 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	성취도	수강 자수			
보 통 교 과	공통 과목	○	○	○	5단계	○	○	•(성취도 3단계) 과학탐구실험	
	일 반 선 택 과 목	기초/ 탐구/ 생활/ 교양	○	○	○	5단계	○	○	•교양 교과(군) 제외
		체육· 예술	-	-	-	3단계	-	-	•수강자수 입력하지 않음
	진로 선택 과목 ※기초/탐구/ 생활/교양/ 체육/예술	○	○	○	3단계	○	○	•진로선택으로 편성된 '전문교과 I·II' 포함 •교양 교과(군) 제외	
	교양 교과(군)	-	-	-	P	-	P		
전문교과I		○	○	○	5단계	○	○	•(성취도 3단계) 융합과학 탐구, 과학과제 연구, 물리학 실험, 화학 실험, 생명과학 실험, 지 구과학 실험, 사회 탐구 방법, 사회과제 연구	
전문교과II		○	○	○	5단계	○	-	•석차등급은 산출하지 않음	
전문교과III		○	○	○	5단계	○	-	•석차등급은 산출하지 않음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운영하 는 학교에 한함	
보통교과 및 전문교과I 중 수강자수 13명 이하인 과목		○	○	○	교과(군) 별 3단계 또는 5단계	○	'.' 또는 '○등급'	•보통교과 체육·예술 교과(군) 의 일반 선택 과목, 교양 교 과(군)의 과목 제외	
학교 간 통합 선택교과(공동 교육과정) 과목		○	○	○	교과(군) 별 3단계 또는 5단계	○	-	•보통교과 체육·예술 교과(군) 의 일반 선택 과목, 교양 교 과(군)의 과목 제외	

※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학업성적 처리방식
 (2019, 2020학년도 신입생 - 2020학년도 1,2학년)

구 분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		석차 등급	비 고		
	원점 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	성취도	수강 자수				
보 통 교 과	공통 과목		○	○	○	5단계	○	○	•(성취도 3단계) 과학탐구실험 ※ 과학탐구실험은 석차등급 미산출
	일 반 선 택 과 목	기초/ 탐구/ 생활 교양	○	○	○	5단계	○	○	•교양 교과(군) 제외
		체육· 예술	-	-	-	3단계	-	-	•수강자수 입력하지 않음
	진로 선택 과목 ※기초/탐구/ 생활·교양/ 체육·예술		○	○	- ※ 성취 도별 분 포비율 입력	3단계	○	-	•진로선택으로 편성된 '전문교과 I·II' 포함 •교양 교과(군) 제외 •석차등급 및 '표준편차' 삭제, '성취도별 분포비율' 입력
	교양 교과(군)		-	-	-	P	-	P	
전문교과 I		○	○	○	5단계	○	○	•(성취도 3단계) 융합과학 탐구, 과학과제 연구, 물리학 실험, 화 학 실험, 생명과학 실험, 지구과 학 실험, 사회 탐구 방법, 사회 과제 연구	
전문교과 II		○	○	○	5단계	○	-	•석차등급은 산출하지 않음	
전문교과 III		○	○	○	5단계	○	-	•석차등급은 산출하지 않음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 한함	
보통교과 및 전문교과 I 중 수강자수 13명 이하인 과목		○	○	○	교과(군) 별 3단계 또는 5단계	○	·,· 또는 ○ 등 급	•보통교과 공통과목 과학탐구실 험, 진로선택과목(진로선택으로 편성된 전문교과포함), 체육·예 술 교과(군)의 일반 선택 과목, 교양 교과(군)의 과목 제외	
학교 간 통합 선택교과(공동 교육과정) 과목		○	○	○	교과(군) 별 3단계 또는 5단계	○	-	•보통교과 진로선택과목(진로선 택으로 편성된 전문교과포함), 체육·예술 교과(군)의 일반 선 택 과목, 교양 교과(군)의 과목 제외	

나. 중학교 맞춤형 학습 지원 계획

1) 운영 개요

가) 운영기간: 2020. 05월 ~ 12월

나) 기초학력협의체 구성 현황

구분	역 할	내 용	담당자	시기
총괄	총괄	○ 기초학력협의체 조직 및 운영 총괄	교감	운영기간
세부운영	기획 및 운영	○ 기초학력협의체 운영 관리 ○ 맞춤형학습지원 프로그램 수립 및 운영	이선숙	운영기간
관리 및 지원	학습더딤학생 지원 및 관리	○ 진단(검사·활동) 실시 ○ 학생 성장 이력 관리	1학년 박진혁 2학년 김종구 3학년 김경미	5월중
학습활동	학습 더딤학습 개별지도	○ 개별지도, 더딤과목 지도	박진혁, 김경미, 김종구, 이상웅, 이승미, 천혜련, 임정일, 김하은	6.15~11.30
체육활동	체력단련 프로그램	○ 체력활동을 통한 자존감 향상	천개일	6.15~11.30
상담활동	심리·정서·행동 및 돌봄지원	○ 정서·행동 상담, 학생 건강·복지 지원 ○ 학생 개별 요구에 따른 전문기관 연계	상담교사	수시

2) 지원 대상학생 현황

순	학년반	학생	학생 진단 결과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내용)	기타 사업
1	1-1	김**	수학교과 학습 부진	-1:1 맞춤형 지원(국어, 수학) -학습더딤 원인 심층진단 2회	체력단련 프로그램 참여
2	1-1	박**	수학교과 학습 부진	-1:1 맞춤형 지원(국어, 수학) -학습더딤 원인 심층진단 2회	체력단련 프로그램 참여

순	학년반	학생	학생 진단 결과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내용)	기타 사업
3	1-1	장**	국어 수학교과 학습 부진	-1:1 맞춤형 지원(국어, 수학) -학습더딤 원인 심층진단 2회	
4	2-1	강**	국어 수학교과 학습 부진	-1:1 맞춤형 지원(국어, 수학) -학습더딤 원인 심층진단 2회	체력단련 프로그램 참여
5	2-1	김**	국어, 수학교과 학습 부진 학교생활부적응	-1:1 맞춤형 지원(국어, 수학) -학습더딤 원인 심층진단 2회 - 상담프로그램 참여	체력단련 프로그램 참여
6	2-1	장**	국어, 수학교과 학습 부진 학교생활부적응	-1:1 맞춤형 지원(국어, 수학) -학습더딤 원인 심층진단 2회 -상담프로그램 참여	체력 단련 프로그램 참여
7	2-1	최**	국어, 수학교과 학습 부진	-1:1 맞춤형 지원(국어, 수학) -학습더딤 원인 심층진단 2회	
8	3-1	이**	수학교과 학습 부진	-1:1 맞춤형 지원(수학) -학습더딤 원인 심층진단 2회	

3) 성장 이력 공유 방안

- 맞춤형 수업 담당교사 협의체 운영 (학기 2회씩)
- 수업 자료 공유 (월1회)
- 결과 나눔(운영 종료 후 12월)

다. 중학교 방과후 학교 운영

1) 운영 기간 : 2020년 6월 ~ 2021년 1월

2) 연간 운영 계획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운영기간	1학기	2020학년도 학사 일정에 따름	여름 방학	2020학년도 학사 일정에 따름	2학기	2020학년도 학사 일정에 따름	겨울 방학	2020학년도 학사 일정에 따름
	운영시간	2020.6.3.~2020.11.25. 기간중 수업, 학년말까지 운영 7교시(15:40~16:30) 8교시(16:40~17:30) 9교시(17:40~18:30)							
실 천 내 용		목 표	시 기	대 상	비 고				
◦ 기초수요조사 및 분석		1회	기별	학생, 학부모, 교사	프로그램 수요조사, 교육활동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 준비				
◦ 연간운영계획 수립		1회	2월	담당교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프로그램 개설 확정		1회	5월	담당교사					
◦ 방과후학교 강사 모집 . 선정 . 계약		1회	5월	부별강사					
◦ 세부운영계획 수립		1회	5월	담당교사					
◦ 연간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1회	5월	강사					
◦ 수강 신청 안내 및 수강생 모집		1회	5월	전교생					
◦ 정보 공시		1회	5월	담당교사					
◦ 학부모초청 프로그램 공개		1회	학년말	각 부서					
◦ 활동 결과 통지		2회	학기별 1회	수강생					
◦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2회	학기별 1회	수강생, 학부모					
◦ 프로그램 활동 홍보		연중	수시	전교생, 학부모					

3) 개설 프로그램 및 운영

가) 방과후 특기적성 프로그램

특 기 적 성	프로그램명	운영시간	지도교사	활동장소
	미용	수요일 7~8교시	위탁	기술실
	플룻	화요일 8~9교시	천혜련	음악실
	풋살	화요일 8~9교시	천개일	강당
	컴퓨터 자격증	수요일 7~8교시	조경준	정보화실

나) 방과후 교과 프로그램

특 기 적 성	프로그램명	운영시간(교시)	학년	지도교사	장소
	국어	월요일8,목요일9	1,3	박진혁	교실
	수학	화요일8,목요일8	2,3	김경미	수학실
	영어	목요일8	1	김종구	영어실
	과학	월요일8	3	임정일	과학실

다) 운영 시간표 및 수강인원

학년 요일 교시	중1				중2				중3					
	월	화	수	목	월	화	수	목	월	화	수	목		
	7	정규 수업	정규 수업	특기 적성 (미용, 컴퓨터)	정규 수업	정규 수업	정규 수업	특기 적성 (컴퓨터)	정규 수업	정규 수업	정규 수업	특기 적성 (미용, 컴퓨터)	정규 수업	
8	국어 (박진혁)	특기 적성 (플룻 풏살)	영어 (김종구)			8교시 수학 (김경미)			과학 (임정일)	특기 적성 (플룻 풏살)			특기 적성 (미용, 컴퓨터)	수학 (김경미)
9						8,9교시 특기 적성 (풏살 풏살)								
수강 인원	교과	국어 9명 수학 11명 영어 5명 과학 6명												
	특기 적성	미용5명, 플룻 8명, 풏살10, 컴퓨터자격증 12명												

라. 고등학교 방과후 학교 운영(기초 보충)

1) 목적

- 가) 기초학력 더딤학생의 학습 결손을 지원 및 보완할 수 있다.
- 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학생 맞춤형 지도를 활성화할 수 있다.

2) 기초학력 보충반 운영

- 가)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기초학력 향상 지원 확대
- 나) 학습더딤학생 실태 파악 및 선정 후 맞춤형 지도 확대
- 다) 세부 운영

순	개설과목	수업시간	장소	지도교사
1	국어기초반 (고1)	수요일 8교시	고1교실	김하은
2	수학기초반 (고1)	목요일 8교시	고3교실	장익성
3	영어기초반 (고1)	목요일 9교시	고2교실	김현영

* 대상 학생의 상황에 따라 정해진 시수 내 융통성 있게 운영 가능

3) 기대효과

- (1) 학습 결손을 예방 및 중단할 수 있다.
- (2) 학습활동의 지원을 통해 학습더딤 학생들이 교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 (3) 단위 학교 중심의 학생 맞춤형 지도를 활성화할 수 있다.
- (4) 학습 더딤 학생이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고 나아가 본인의 실력이 향상됨을 스스로 느낄 수 있다.

마. 고등학교 방과후 학교 운영(교과 보충)

1) 목적

- 가) 효과적 학습과 관련된 습관을 형성하여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
- 나) 교과 보충 수업의 지원을 통해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다.

2) 운영 기간

- ◆ 2020년 6월 15일 ~ 2021년 1월 까지 운영
 - 한 분기를 학기 단위로 연 2분기 운영
 - 1분기 : 2020년 6월 ~ 2020년 9월
 - 2분기 : 2020년 9월 ~ 2021년 1월

3) 세부 실천 내용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운영기간	1학기	6월 15일 ~ 9월 2일	여름 방학	미실시	2학기	9월 3일 ~ 12월 1일	겨울 방학	1월 14일 ~ 1월 29일	
	운영시간		주중		17시 ~ 21시		방학		9시~ 13시	
실 천 내 용				목 표	시 기	대 상	비 고			
◦ 기초수요조사 및 분석				1회	3~5월	학생, 학부모, 교사	프로그램 수요조사, 교육활동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 준비			
◦ 연간운영계획 수립				1회	3~6월	담당교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프로그램 개설 확정				1회	5~6월	담당교사				
◦ 방과후학교 강사 모집 . 선정 . 계약				1회	5~6월	부별강사				
◦ 세부운영계획 수립				1회	6월	담당교사				
◦ 연간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1회	6월	강사				
◦ 수강 신청 안내 및 수강생 모집				4회	기별	전교생				
◦ 정보 공시				1회	4월	담당교사				
◦ 학부모초청 프로그램 공개				1회	학년말	각 부서				
◦ 활동 결과 통지				2회	학기별 1회	수강생				
◦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2회	학기별 1회	수강생, 학부모				
◦ 프로그램 활동 홍보				연중	수시	전교생, 학부모				

4) 개설 프로그램 및 운영

가) 방과후 교과보충학습 시간표

교시	고1				고2				고3			
	월	화	수	목	월	화	수	목	월	화	수	목
8	영어	국어	국어	한국사	수학	영어	영어	지과	국어	수학	수학	화학
9	수학	영어	수학	과학		수학	국어	국어	영어	국어	영어	

나) 운영시간: 8교시 16:40 ~ 17:30 / 9교시 17:40 ~ 18:30

바. 야간자율학습운영

1) 희망학생

2020학년도 인월고등학교 야간 자율학습 희망자								
1학년			2학년			3학년		
번호	이름	비고	번호	이름	비고	번호	이름	비고
1	강**	○	1	강**		1	공**	○
2	강**		2	강**		2	김**	
3	김**	○	3	공**		3	김**	
4	김**		4	김**	○	4	김**	
5	김**		5	김**		5	노**	
6	김**	○	6	김**	○	6	박**	○
7	김**		7	김**	○	7	배**	○
8	박**	○	8	박**	○	8	서**	
9	배**	○	9	양**	○	9	송**	○
10	손**		10	이**		10	양**	○
11	양**		11	이**		11	오**	
12	임**		12	임**		12	윤**	
13	최**	○	13	장**		13	윤**	
14	최**		14	정**		14	이*	○
			15	정**	○	15	이**	○
			16	홍**		16	장**	
			17	홍**		17	정**	○
						18	형**	
		6			6			8
총 20명								

2) 지도교사

야간 자율학습 요일별 지도 교사			
월	화	수	목
임정일 장익성	장익성 김현영	장익성 임정일	김현영 장익성

4 따뜻한 마음 나눔의 상담 운영 계획

가. 근거

- 1) 교육지원과-6838(2020.04.08.)
- 2) Wee 센터 운영 업무지침(전문상담사 학교 순회상담)(2016. 한국교육개발원)
-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4) 중등교육법 제19조의2(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 2

나. 목적

- 1) 학생상담을 통해 학교생활 부적응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 2) 위기사안에 대한 즉각적 조기개입을 촉진하고 학교폭력이나 따돌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 3) 학생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학교생활 적응력을 키워 바람직한 꿈을 가진 학생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4) 학부모에게 전문적인 자문과 교육을 제공하여 건강한 심리적 지지체계를 구축한다.

다. 상담 운영 계획

- 1) 학생 선발 기준
 - 가) 희망자(개인 상담 신청서 서식-1 활용)
 - 나) 담임교사 추천 학생
 - 다) 교과 담당교사 추천 학생
- 2) 상담 운영
 - 가) 남원교육청 전문 상담교사를 지원 받아 운영(기간 2020.4.~2021.2.28. 매주 월요일 실시)
 - 나) 주기적인 담임 및 교과 담당교사의 상담 실시
 - 다) 학부모 상담 주간 활용
 - 라) 학생을 대상으로 개인·집단상담, 심리검사 제공
 - 마) 보호자를 대상으로 학생지도와 관련된 자문과 교육 지원
 - 바) 학교폭력 특별교육(학생, 학부모)
 - 사) 정서·행동 특성검사 관심군 학생 사후관리 상담
 - 아) 학업중단 숙려제 학생 대상 상담
 - 자) 상담일지 기록 및 보관

3) 상담을 위한 여건 조성

- 상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쾌적하고 따뜻한 공간 마련
 - 비밀보장이 가능한 독립된 공간
 - 교사와 학생이 마주 앉거나 측면으로 앉을 수 있는 테이블과 편안한 의자 비치
 - 상담일지 등을 작성할 수 있는 컴퓨터, 프린터기 및 사무용품 비치
- 상담일에 학생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및 참여 안내
- 상담업무 담당교사가 담임-수업담당 교사 및 학생과 협의하여 상담 시간을 사전 배정 (상담시간 40-50분 확보 필요)
- 주1회 Wee 센터 상담교사 활용

4) 운영의 실제

- 가) 남원교육청 전문 상담교사 지원 상담 실시
- 나) 희망자와 추천 학생 위주로 대상 학생 선정 후 상담 시간 배정
- 다) 교과 담당 교사의 확인 후 상담 시간 5분 전 상담실로 내실
- 라)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5) 담임교사의 요청에 의한 운영

- 가) 담임교사의 요청이 있을 시, 우선 상담 실시
- 나) 고위기 학생 파악 후, 긴급 상담 실시
- 다) 상담내용은 비밀을 유지한 후 전화로 학부모께 안내
- 라) 위기 학생 발굴 및 연계 절차 안내를 통해 예방적-반응적 상담 실시
- 마) 상담시 위기 학생은 정신과 전문의 특별 상담 연계 가능

라. 기대 효과

- 1) 상담을 통한 정서적 안정을 추구하여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 가능
- 2) 학생 · 학부모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
- 3) 전문적인 상담서비스 제공으로 문제 조기발견 및 예방적 접근과 즉각적인 개입을 통해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안정에 도움
- 4) 각종 심리검사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심리적 특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자기이해 및 인성과 진로발달에 도움
- 5) 고위기 학생에 대한 즉각적 조기개입 및 상담기반체계 구축
- 6) 다양한 콘텐츠의 활용을 통해 상담 접근성을 높이고 학생들의 관심과 이용증진
- 7) 학교-가정이 심리적 지지체계를 마련하여 행복한 교육공동체 환경을 조성

5 저마다의 빛깔을 드러내는 자유학기제

가. 진로교육과 연계한 과정 중심의 평가

- 1) 자유학기제 운영 기간의 학생 평가는 중간·기말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대신 단원별 또는 학습 요소별 수시평가를 실시하여 학기말에 서술형으로 기록한다.
- 2) 토론, 협동학습, 체험 등 수업방법 개선에 따른 과정 중심 평가 실시한다.
- 3) 진로체험 활동에 대한 교과통합적인 평가를 실시한다.
- 4) 교육과정상 중간·기말고사 실시하는 동안, 자유학기 해당 학년은 체험활동 소감문, 멘토에게 편지쓰기, 보고서, 포트폴리오 등의 방법을 통한 평가를 실시하여 필수 학습요소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는다.

나. 참여 교과와 시수

교과	국어	사회	과학	기술 가정	체육	음악	진로와 직업	진로	스포츠 클럽
시수	1	1	1	1	1	2	1	1	1
지도 교사	박진혁	정은숙	이상웅	이승미	천개일	천혜련	이승미	박진혁	이승미

다. 영역별 운영계획

주제	활동명	운영시간	담당교사	운영기간	비고
주제선택 프로그램	과학 탐구 실험	금3교시	이상웅	9월~12월	2학기 전체
	한국의 꽃	수5-6교시	정은숙	9월 ~10월	2학기 전반부
	나의 이야기	수5-6교시	박진혁	11월~12월	2학기 후반부
진로탐색 활동	세계요리만들기	목2-3교시	이승미	9월~10월	2학기 전반부
	코딩 이모저모	목2-3교시		10월~11월	2학기 후반부
	로봇 공학	목2-3교시		11~12월	2학기 후반부
예술체육 활동	하늘높이뛰자 폴짝	화5-6교시	천개일 이승미	8월~12월	2학기 전체
	뮤직클럽	월5-6교시	천혜련	8월~12월	2학기 전체
동아리활동	우리의 동아리	금5교시	박진혁	8월~12월	2학기 전체

6

일반고 자(유롭게) 신(나게) 감(동적인) 프로젝트

가. 고교 학점제 도입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1) 자기 이해 프로그램 운영

가) 인월고등학교 1,2학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진로 선택 적성검사 실시

나) 일자 : 4~7월

다) 대상 및 인원 : 인월고등학교 1~2학년 학생

라) 내용 : 진로, 적성, 흥미 검사, 검사해석, 1:1 상담

2) 학생 진로 맞춤형 프로그램

가) 교과 연계 맞춤형 진로교육, 소그룹 학생 개인별 맞춤형 진로탐색

나) 일자 : 2020년 학기 중

다) 대상 및 인원 : 인월고등학교 전교생 49명

라) 내용 : 교과 연계 진로교육, 선후배가 함께 하는 진로교육, 체험부스, 진로맞춤형 자율동아리 활동을 통한 개인별 맞춤형 진로탐색, 체험활동

3) 교사의 수업 및 평가방법 개선을 위한 연수

가) 학생 활동형 학생중심 수업 운영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 연수

나) 일자 : 2020년 학기 중

다) 대상 및 인원 : 인월고등학교 교사

라) 내용 : 교원 역량 강화 연수, 생활기록부 연수 등

4) 학교 내 전문적 학습공동체 및 컨설팅 운영

가) 인월교사들의 학습공동체

나) 일자 : 2020년 1학기

다) 대상 및 인원 : 인월고등학교 교사

라) 내용 : 워크숍 및 독서토론,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자신감 프로젝트 운영 및 수업 개선을 위한 컨설팅

나. 통섭형 인재양성 통합 프로그램, 진로 맞춤형 프로그램

1)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는 인월인

가) 지도교사 : 국어과 교사

나) 세부사업 내용 : 한 학기 한 권 읽기, 꿈을 찾는 독서, 토론탈기

- 운영일시 : 2020년 학기 중

- 장 소 : 본교 국어과실, 도서관

- 운영대상 : 1~2학년 학생 전체 및 고3 희망학생

다) 운영방법

- 한 학기 한 권 읽기의 실제적인 실현과 이와 연계한 인문학 강의
- 자신이 읽은 책과 진로와 연관되는 체험처 방문
- 책을 질문하며 깊이읽고 토론하기

2) 삶 속에서의 배움

가) 지도교사 : 전교과 교사

나) 세부사업 내용 :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음악 등 전 교과와 연계한 맞춤형 진로 교육

- 운영일시 : 2020년 학기 중
- 운영대상 : 고1~2학년 학생

다) 운영방법

각 교과 영역에서 학생들에게 적합한 진로 영역을 선별 후, 교과와 연계한 수업 진행. 필요 시 주제중심 교과 통합 수업 등 다양한 방법의 수업 가능. 학생의 진로 탐색이 가능하도록 학생 참여 중심 수업 고안

3) 다양한 진로 탐색

가) 지도교사 : 진로 담당 교사

나) 일시 : 2020년 학기 중

- 운영대상 : 고등학교 1~3학년 학생 중 희망자

다) 운영방법

- 직업카드/학과카드를 활용하여 각 영역/분야 별 직업과 학과를 차례대로 소개 및 이해, 자신의 적성/성격 등을 기반으로 자신의 진로에 대한 고민하기, 모듬 활동, 학습지 활동 등을 다양하게 활용

4) Angel in nurse

가) 지도교사 : 보건 교사

나) 세부사업 내용 : 보건계열 진로직업 탐색 및 실습

- 목적

- 보건, 간호, 의료계열 진학 희망자에게 보건의료계통의 심도 있는 탐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줌으로써 진로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한다.
- 생활 속의 응급처치와 건강생활을 위한 자가 간호, 자기관리를 터득함으로써 개인의 삶과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한 사회 구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한다.

- 운영일시 : 2020년 학기 중

- 대 상 : 고1~3학년 학생 중 희망자

- 운영장소 : 교실

다) 운영방법

- 진로탐색활동, 캠페인 활동, 실습활동 등

5) 선생님과 함께하는 역사 탐구

가) 지도교사 : 역사과 교사

나) 세부사업 내용 :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취득을 통한 교과교육과 연계한 맞춤형 진로교육

- 운영대상 : 고1~3학생 중 희망자

다) 운영방법

- 각 교과 영역에서 역사와 연관 지을 수 있는 주제를 선정 후 교과와 연계한 수업 진행. 필요시 주제 중심 교과 통합 수업 등 다양한 방법의 수업 가능.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에 빈출 되는 주제를 선정 후 모듈별로 탐구하여 발표

나. 예체능계 미래인재 양성 실기지도

가) 과목 : 음악, 체육

나) 운영 시간 : 방과후 시간, 주 2시간

다) 대상 및 인원 : 인월고등학교 학생 중 희망자

라) 내용: 음악, 체육분야 진학을 원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무학년제로 운영, 학생의 요구에 따른 맞춤형 수업 실시

다. 행복한 수업,평가 나눔 프로젝트 운영

가) 운영 목적 : 교과 협의회 활성화를 통한 수업 전문성 신장

나) 운영 일시 : 학기당 4회이상 교과협의회 실시, 학기당 1회 워크숍 실시

다) 대상 및 인원 : 인월고등학교 전 교직원

라) 내용: 교과협의회를 통한 수업방법,평가 전문성 신장,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라. 고교 학점제 관련 연수 실시

가) 운영 목적 : 고교 학점제 관련 학생,학부모,교원,지역사회 대상 홍보

나) 운영 방법 : 2020년 학기중 1회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대상 홍보, 고교학점제 T/F 팀 운영

다) 대상 및 인원 : 인월고등학교 학생, 학부모, 교원, 및 지역사회

라) 내용 : 지역사회에 고교 학점제 홍보 및 T/F팀 운영을 통한 고교학점제 대비

7 「차별은 내려놓고, 차이를 존중하는 우리」 인월중고 통합교육

가. 인월중고등학교 특수교육의 방향

생애 단계별 맞춤형 교육으로 성공적 사회통합 실현



1. 꿈

· 체계적인 개별화교육 및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기초학습능력 및 사회 적응 능력의 신장과 자립 생활 능력의 향상으로 **꿈**을 키워가는 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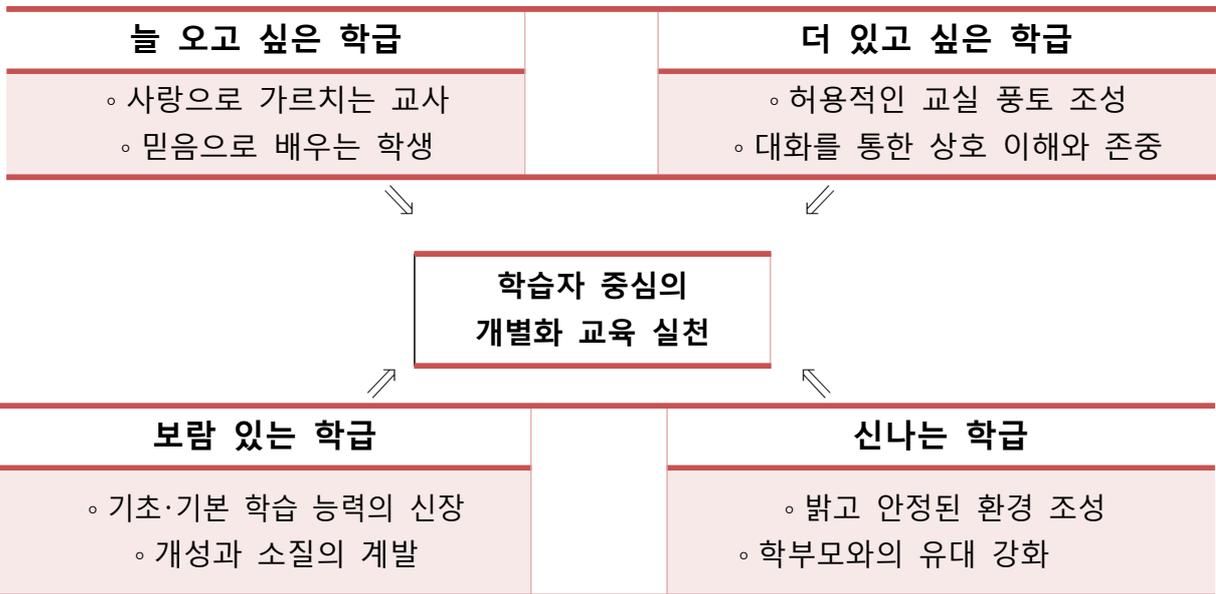
2. 보람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확보 및 진로·직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통합학급 교사와의 지속적인 협력으로 열정을 다해 교육함으로써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교사.



3. 만족

· 특수교육관련서비스 및 학부모 상담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 학부모님들께 **만족**을 주는 학교.



나. 특수학급 교육 중점 및 세부 실천 계획

교육 목표	구현중점	세부 실천 내용	시기	대상	담당
자기주도적 인 학생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1-1. 특수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내실화 ◦ 학습 진단 및 심리 평가 ◦ 특수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 통합교육 전개 ◦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구입	3월 " 3~2월 연중	대상학생 " "	특수교사 " 통합, 특수 특수교사
		1-2. 개별화교육 계획 추진 ◦ 개별화교육 지원팀 구성 및 회의 ◦ 개별화교육 계획 작성 ◦ 개별화교육 계획 시행 ◦ 개별화교육 평가 및 결과 통보	3, 9월 " 3~2월 7, 2월	대상학생 " " 학생, 학부모	지원팀 특수, 통합 " "
		1-3. 평가 방법의 다양화 ◦ 학력평가 관련 조정 계획 수립 ◦ 단위학교 평가에 참여 ◦ 개별화교육계획 평가 지표 활용	3월 3,7,12월 7, 2월	대상학생 " "	평가담당 통합교사 특수, 통합
민주사회 적인 학생	참여와 협력을 통한 통합교육 활성화	2-1. 통합교육 여건의 조성 ◦ 통합학급 적응기간 실시 ◦ 통합교육을 위한 간담회 실시 ◦ 통합교육 홍보 안내장 발송	3월1~2주 학기별 2회 3월	통합학급 학부모 전교생	특수, 통합
		2-2. 장애인식개선 교육 강화 ◦ 통합학급 장애인식개선 교육 ◦ 장애인식개선 교육 실시 ◦ 장애인식개선 홍보 안내장 발송 ◦ 장애인식개선 연수	3월 학기별 2회 학기별 2회 학기별 2회	통합학급 전교생 학부모 전교직원	특수교사 " " "
		2-3. 다양한 친구 맺기 행사 실시 ◦ 또래 도우미 조직 및 교육 ◦ 친구 초청의 날 운영	3, 9월 학기별 2회	통합학급 "	특수, 통합
		2-4. 통합학급 운영 관리 강화 ◦ 특수교육대상자 정보 제공 및 연수 ◦ 통합교육을 위한 간담회 실시 ◦ 통합교육 전개 시 학습지원 ◦ 통합학급 담당교사 특수교육직무연수 안내	3, 9월 학기별 2회 수시 수시	통합교사 통합교사 통합학급 통합교사	특수교사 " " "
민주사회 적인 학생	능동적 사회 참여 역량 강화	3-2. 부적응행동 지도 ◦ 문제행동 중재 방안 협의 ◦ 장애별, 상황별 문제행동 대처방법 연수 ◦ 부모 교육 프로그램 실시(외부 프로그램 수시 안내) ◦ 학부모 및 학생 상담	수시 연 2회 연 2회 수시	통합교사 및 특수교육 지도사 학부모 학부모, 대상학생	특수교사 " " "

교육 목표	구현중점	세부 실천 내용	시기	대상	담당
창조적인 학생	특수교육 지원 확대	4-1.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및 배치체계 확립 ◦ 장애 조기 발견 체제 구축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절차 연수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홍보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	연2회	전교생 전교직원 학부모 대상학생	특수교사 " " "
	보편적인 교육복지 구현	4-2. 특수교육관련 서비스 지원 ◦ 치료비 지원 ◦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 ◦ 원거리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학부모 통학비 지원 ◦ 보조공학기기 및 학습보조기기 지원	연중	대상학생 및 학부모	특수교사 " " "
건강한 학생	장애학생 인권 친화적 분위기 조성	5-1. 장애학생 안전교육 강화 ◦ 학교안전교육계획 수립 ◦ 장애학생 등·하교 안전 계획 수립 ◦ 장애학생 생활 안전 교육 실시 ◦ 장애학생 방학생황안전지도 학부모 교육 ◦ 각종 대피 훈련	3월 수시 연 2회 수시	대상학생 " 학부모 통합반	담당자 특수교사 " " 담당자
		5-2. 장애학생 성교육 강화 ◦ 장애학생 대상 성교육 계획 수립 ◦ 장애학생 대상 성교육 실시 ◦ 일반학생 대상 장애학생에 대한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3월 연 2회 연 3회	대상학생 " 통합반	특수교사 " 보건, 담임
		5-3. 장애학생 인권교육 강화 ◦ 장애학생 대상 인권교육 계획 수립 ◦ 장애학생 대상 인권교육 실시 ◦ 장애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내부규정 지침 마련(학교 생활지도 규정에 지침 마련) ◦ 일반학생 대상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예방 교육 실시 ◦ 장애차별 금지법 및 장애 인권 보장 홍보 안 내장 발송	3월 연 2회 3월 연 2회 연 1회	대상학생 " " 전교생 "	특수교사

다. 교과를 재구성한 교육활동

1) 현장체험학습

가) 목적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독특한 교육적 필요, 요구에 따른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통해 자기 주도적인 기초 학습력 신장과 현재와 미래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나) 방침

(1) 3월 초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특수학급 운영계획서에 포함시킨다.

꿈과 열정이 살아 숨 쉬는 인월인

- (2) 현재와 미래생활에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가 포함되어 있는 생활중심의 교육 내용을 통합적으로 구성한다.
- (3) 체험 학습의 목표를 세우도록 한다.
 - 다양한 현장체험학습을 통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 기술을 향상시킨다.
 -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 공공시설의 이용 방법을 알고 공중도덕과 예절 등 기초질서를 익힌다.
 - 이동이나 활동 중에 서로 돕고 배려하는 가운데 원만한 대인관계와 협동심을 기른다.
- (4) 지역사회 중심의 기능적 생활 중심의 교수가 점진적이며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5) 동질군 교육 및 다양한 기회 확대를 위해 인근 특수학급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 (6)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듣고 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
- (7) 연간 계획에 따라 해당 실시 월에 기안하여 결재를 득한 후 활동을 한다.

다) 세부 운영 계획

영역	영역	활동 내용	장소
사회 적응 훈련	사회성	특수교육지원센터 활동 계획에 따름	특수교육지원센터
직업 체험 교육	직무능력	-바리스타(자격증반) -드론(진로프로그램)	

2) 특색교육활동 - 주제중심통합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실생활 문제해결능력 기르기

가) 목적

- (1) 다양한 교육과정의 중복된 내용을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목표를 재설정함으로써 내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한 교과의 협소한 관점에서 벗어나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사고력의 신장 및 다양한 관점의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 (2) 교육과정을 학습자의 능력, 흥미와 사회적·시대적 요구, 교과의 요구를 반영하여 교사가 새롭게 재해석하고 의미 있게 재구성하여 학습자에게 적합한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나) 방침

- (1) 주 1회 국어, 수학, 직업을 주제중심통합학습시간으로 정하여 학년통합활동으로 개별학습과의 연계 및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려한다.

(2) 학생의 수준별로 학습내용이나 교수방법을 조정한다거나 학생 수준에 맞는 학습 자료나 활동지를 제작하여 활용하는 등 본 학급 각 장애학생의 현재 학습수준을 고려한 주제중심통합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다) 세부 운영 계획

월	주제	활동내용	관련 교과
4	가게놀이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구점에 대해 알아보기 학용품의 가격 알아보기 체험학습 - 문구점에서 학용품 구입하기 	국어, 수학, 직업
5	요리활동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쿠키 만들기 재료 알아보기 쿠키 만들기 	국어, 수학, 직업
6	가게놀이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트에 대해 알아보기 마트에서 파는 물건 가격 알아보기 체험학습 - 마트에서 내가 먹고 싶은 것 구입하기 	국어, 수학, 직업
7	가게놀이I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카페에 대해 알아보기 카페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 가격 알아보기 체험학습 - 카페에 가서 팔빙수 사먹기 	국어, 수학, 직업
9	가게놀이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과점에 대해 알아보기 여러 가지 빵의 가격 알아보기 체험학습 - 제과점에서 빵 구입하기 	국어, 수학, 직업
10	가게놀이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러 가지 식당에 대해 알아보기 식당에서 파는 음식의 가격 알아보기 체험학습 -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 구입하기 	국어, 수학, 직업
11	요리활동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자빵 만들기 재료 알아보기 피자빵 만들기 	국어, 수학, 직업

라. 학급현황 및 실태(장애 유형별 현황)

순	학생명	성별	장애유형 (장특법)	복지카드 (장애등급)	학년반	담임	선정배치일자	치료지원	배치구분
1	임○○	남	자폐성 장애	자폐성 장애 1급	고1-1	임정일	2019.10.21	언어치료	특수학급
2	강○○	남	의사소통 장애	언어장애 4급	고2-1	김현영	2018.11.26	언어치료	특수학급
3	김○○	남	지적장애	지적장애 2급	고2-1	김현영	2018.11.26	언어,물리	특수학급
4	장○○	남	지적장애	X	고2-1	김현영	2018.11.26	미술치료	특수학급
5	형○○	남	시각장애	시각장애 4급	고3-1	장익성	2014.12.22	언어,미술	특수학급

마. 특수학급 운영의 실제

1)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의 설치(5인 이상 10인 이하)

순	학생명	팀장	부팀장	특수 교사	통합학급교사	보호자
1	임OO	김창수 (교장)	신희철 (교감)	유순	임정일	각 학생의 보호자
2	강OO					
3	김OO				김현영	
4	장OO					
5	형OO				장익성	
6	보건담당교사			안수빈		

2) 특수학급 운영의 시간표

※ 개인별 학습능력 및 학교행사에 따라 시간표는 유동적일 수 있음.

요일 교시	월	화	수	목	금
1	국어 (고1)	수학 (고1)	수학 (고3)	수학 (고2)	생활영어 (고2,3)
2		수학 (고2)	진로(드론) (고1,2,3)	기초학습 (고1)	기초학습 (고1)
3	치료 (고1,2)	치료 (고2,3)	진로(드론) (고1,2,3)	기초학습 (고1)	국어 (고2)
4	치료 (고1,3)	수학 (고3)	진로(드론) (고1,2,3)	기초학습 (고1)	국어 (고3)
5	직업 (바리스타)			생활영어 (고2,3)	
6	직업 (바리스타)		사회 (고1)		창체 (장애인식개선동아리)
7	직업 (바리스타)	국어 (고2)		국어 (고1)	창체 (장애인식개선동아리)

8 학생인권·안전·성교육·보건교육 계획

가. 학급 중심의 하루 5분 학생생활교육의 목표



나. 추진 방향

- 1) 따뜻하고 평화로운 교육공동체를 위한 실천적 인성교육· 학생생활교육을 강화
- 2) 단위학교 중심의 유형별 예방 교육을 내실화하고, 담임 중심의 생활교육을 지원
- 3) 평화로운 학급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관계·회복·자치 중심의 생활교육을 내실화
- 4) 학생중심 상담활동과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을 위한 대안교육 지원을 강화
- 5) 조회종례시간을 활용하여 학급 중심의 5분 학생생활교육을 실천

다. 학급 중심의 하루 5분 학생생활교육 운영 주간

1) 상담방법

- 가) 운영 월(4-12월)운영, 총 10차시
- 나) 매월 1주를 운영기간으로 5일간 조회시간 5분 교육활동, 주 45분

꿈과 열정이 살아 숨 쉬는 인월인

월 \ 요일	월	화	수	목	금	비고
4(6~10)	흡연	음주·약물	자살 예방	생명존중	학교폭력	
5(11~15)	학교폭력	흡연	음주·약물	자살 예방	생명존중	
6(8~12)	자살 예방	생명존중	흡연	음주·약물	자살 예방	
7(6~10)	학교폭력	자살 예방	생명존중	흡연	음주·약물	
8(3~7)	성폭력	학교폭력	자살 예방	생명존중	흡연	
9(7~11)	안전교육 (물놀이)	성폭력	학교폭력	자살 예방	생명존중	
10(5~9)	자살 예방	안전교육	성폭력	학교폭력	자살 예방	
11(9~13)	음주·약물	자살 예방	안전교육	성폭력	학교폭력	
12(7~11)	생명존중	음주·약물	자살 예방	안전교육	성폭력	
1(4~8)	흡연	생명존중	음주·약물	자살 예방	안전교육	

라. 학급 중심의 하루 5분 학생생활교육 교육내용

요일	교육내용	비고
월	흡연·음주·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읽기자료, 영상자료, 감상문 등
화	학생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읽기자료
수	학교폭력 예방교육	상담 및 설문지
목	성폭력 예방교육	상담, 설문지, 읽기자료
금	안전교육	토론

마. 교육자료

- 1) 교육자료는 매월 마지막 주 인성인권부에서 배포
- 2) 흡연·음주·약물 오남용 예방자료.pdf
- 3) 학교폭력 예방자료.ppt
- 4) 성폭력예방자료.hwp
- 5) 교사용 학생 자살징후 체크리스트.hwp

바. 안전교육 계획

1) 안전교육 51차시 교육과정 편성

- 학교 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7대 영역 51차로 편성

< 인월중·고 안전사고 예방교육 지도계획 >

안전교육과정 배정 시수									
구분		재난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신변 안전	중독예방	실험실습	응급처치	계
1학년	창체	6	5	5	10	3			51
	교과		5	5		6	2		
	보건							4	
계		6	10	10	10	9	2	4	

구분	차시	관련 교과	활동요소	담당	교육시기		계
					1학기	2학기	
생활 안전 교육	1	체육	PAPS 측정시 유의 사항	체육과	1		10
	2	과학	실험실 안전 교육	과학과	1		
	3	창체	현장체험 숙박형	인성인권	1		
	4	기가	실습시 주의 사항	기가과	1		
	5	창체	여름 방학 유의 사항	학년부	1		
	6	음악	전시장 관람전 유의 사항	음악과		1	
	7	창체	성폭력 예방 교육	학년부		1	
	8	체육	PAPS 측정시 유의 사항	체육과		1	
	9	창체	성폭력 예방 교육	인성인권		1	
	10	창체	겨울 방학 유의 사항	학년부		1	
교통 안전 교육	1	창체	교통예방 체험교육	학년부	1		10
	2	사회	안전 띠 매기 교육	사회과	1		
	3	창체	현장체험시 교통안전교육	학년부	1		
	4	도덕	친환경 자전거 타기 교육	도덕과	1		
	5	창체	119 안전 체험관	학년부	1		
	6	창체	교통예방 체험교육	학년부		1	
	7	도덕	대중교통 이용 안전수칙	도덕과		1	
	8	과학	신호등과 표지판 체험교육	과학과		1	
	9	창체	119 안전 체험관	학년부		1	
	10	사회	교통안전표시 체험교육	사회과		1	

꿈과 열정이 살아 숨 쉬는 인월인

구 분	차 시	관련 교과	활동요소	담 당	교육시기		계
					1학기	2학기	
폭력 예방 및 신변 보호 교육	1	창체	학교폭력 예방교육	인성인권	1		10
	2	창체	성폭력 예방교육	인성인권	1		
	3	창체	가정폭력 예방교육	인성인권	1		
	4	창체	민방위 및 소방훈련	보건	1		
	5	창체	아동학대 예방교육	인성인권	1		
	6	창체	학교폭력 예방교육	인성인권		1	
	7	창체	가정폭력 예방교육	인성인권		1	
	8	창체	성폭력 예방교육	인성인권		1	
	9	창체	민방위 및 소방훈련	교무		1	
	10	창체	아동학대 예방교육	인성인권		1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교육	1	국어	사이버 중독 예방교육	국어과	1		9
	2	창체	소변검사 결과와 건강교육	보건담당	1		
	3	기가	약물 오남용교육	기가과	1		
	4	창체	자살 예방교육	보건담당	1		
	5	도덕	자기존중과 사이버 중독교육	도덕과	1		
	6	국어	사이버 중독 예방교육	국어과		1	
	7	창체	자살 예방교육	보건담당		1	
	8	기가	사이버 중독 예방교육	기가과		1	
	9	과학	약물 오남용교육	과학과		1	
재난 안전 교육	1	창체	119 안전 체험관	학년부	1		6
	2	창체	화재 대피 훈련	교무	1		
	3	창체	자연 재난 대비 훈련	학년부	1		
	4	창체	119 안전 체험관	학년부		1	
	5	창체	자연 재난 대비 훈련	교무		1	
	6	창체	화재 대피 훈련	교무		1	
실험 실습 교육	1	과학	실험실습 사전 안전교육	학년부	1		2
	2	기가	기가실습 사전 안전교육	역사	1		
응급 처치 교육	1	보건	심폐소생술 중요성과 방법	보건과	1		4
	2	보건	일상생활 응급처치와 방법	보건과	1		
	3	보건	화상 응급 처치와 방법	보건과		1	
	4	보건	일상생활 응급처치와 방법	보건과		1	
총 이수 시간					27	24	51

2) 생애 주기별 체험형 안전교육 (2년 단위 실시)

- 일자 : 2020. 12. 10. (목).
- 장 소 : 전북 119안전체험관
- 대 상 : 중전체 총 47명
- 교육내용 : 스틸월드 체험

사. 학생인권교육, 성교육, 보건교육 계획

순	일자	내용	대상학년	비고	기관
1	4월 17일	학교폭력 예방교육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교육	중고전교생	2시간	(인성인권)
2	4월 24일	학교폭력 예방교육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교육	중학생	2시간	(인성인권)
3	4~7월	학교폭력 예방교육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교육	고등학생	2시간	(인성인권)
4	5월 13일	학교폭력, 가정폭력, 학생 도박 예방교육(학부모교육)	학부모	1시간	(인성인권)
5	4~7월	학생 도박 예방교육	중고전교생	1시간	한국도박문제 관리센터(전북)
6	4~7월	학생인권교육 (상대방의 권리존중 방법)	중학생	4시간	교과연계교육 /외부강사
7	4~7월	학생인권교육(세계시민교육)	고등학생	8시간	교과연계교육 /외부강사
8	1학기중	교사인성교육	전교사		
9	연중	아동학대예방교육	전교사, 학부모	2시간	
10	2학기중	약물오남용교육	중고전교생	2시간	
11	연중	양성평등교육	중고전교생	5시간	교과연계교육
12	9월	흡연예방교육	중고전교생	2시간	시온컬처 외부공연
13	6월중	자살예방교육	전교생, 전교직원	4시간	보건소 연계
14	5월중	안전교육(심폐소생술)	전교직원	2시간	대학교 응급구조학과
15	10월중	안전교육(심폐소생술)	전교생	2시간	소방서

아. 성교육

1) 중학교 1학년

차시	영역	주제	내용요소	관련교과	단원명	주요학습내용 및 활동
1	인간 발달	청소년의 성과성장	청소년과 성	체육	청소년기와 성	· 청소년기의 2차 성장 · 청소년기의 신체적 변화
2		청소년의 성과성장	생식기관과 2차 성장	체육	청소년기와 성	· 생식기관의 구조와 기능 · 성호르몬과 2차 성장
3		신체 이미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신체 이미지	기과	청소년의 발달 - 신체적 발달	· 자신과 타인의 몸에 대한 이미지 · 자신과 타인의 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구현
4		청소년기 성심리와 성장체성	청소년기의 성 심리	기과	청소년의 발달 -정서적, 사회적 발달	· 남녀 성 심리의 차이 · 청소년기의 심리적 변화 이해와 수용 · 청소년기의 정서 · 사회적 변화 이해와 수용
5			청소년기의 성 정체성		청소년의 발달 -자아정체감의 형성	· 성 정체성의 의미 · 청소년기의 성 정체성 형성
6	사회 문화	성폭력의 예방과 대처	성폭력의 실태와 문제점	도덕	자아정체성	· 성폭력의 의미 · 성폭력의 실태와 사례
7			성폭력의 예방과 대처	도덕	자아정체성	· 성폭력의 예방법 · 성폭력 사례별 대처 방법
8	대처 기술	성적 의사결정과 의사소통	성적 의사결정	기과	청소년의 성과 친구 관계 - 청소년의 성	· 성적 의사결정의 이해 · 성적 의사결정의 사례
9		성에 대한 주장과 위기 관리	성에 대한 자기주장과 거절 방법	도덕	도덕적 행동	· 성에 대한 의사표현 분명히 하기 · 성과 관련한 자기 주장하기 · 성과 관련된 거절 의사 표현하기
10	성행동	남녀의 성 인식	남녀의 성 인식의 차이 이해	기과	청소년의 성과 친구 관계 - 청소년의 친구 관계	· 남녀의 성 인식의 차이 이해 · 성적존재로서의 인간이해
11		성 욕구와 금욕	성 욕구의 조절	기과	우리의 소중한 성	· 성충동과 금욕이 필요한 이유 · 청소년기 성충동과 성 욕구 조절 방법
12	성건강	피임의 선택	피임의 종류와 방법	보건	우리의 소중한 성	· 피임의 필요성 · 피임의 종류와 방법 · 피임의 문제점 · 피임기구의 이용법
13	사회와 문화	성폭력의 예방과 대처	성폭력 예방과 대처	보건	성적위험으로부터의 안전	· 성폭력의 개념 및 대처방법
14			대중매체에 나타난 성 문제 분석	보건	성 상품화와 음란물로부터의 안전	· 음란물로부터 나 지키기
			음란물의 영향과 대처			
15	성매매 성폭력 방지법의 이해	성매매, 성폭력의 이해와 방지법	보건	성적위험으로부터의 안전	· 인권이란	

2) 중학교 2학년

차시	영역	주제	내용요소	관련교과	단원명	주요학습내용 및 활동
1	인간 발달	청소년의 성과 성장	청소년과 성	과학	동물과 에너지	여러 단계로 구성된 생물의 몸
2			생식기관과 2차 성장	과학	동물과 에너지	몸에 필요한 영양소
3		청소년기의 성 심리와 성 정체성	청소년기 성 심리	도덕	성윤리	· 남녀 성심리의 차이 · 청소년기의 심리적 변화 이해와 수용
4	대처 기술	성에 대한 주장과 위기관리	성에 대한 자기주장과 거절 방법	도덕	성윤리	· 성에 대한 의사표현 분명히 하기 · 성과 관련한 자기 주장하기 · 성과 관련된 거절 의사 표현하기
5	인간 관계	사랑의 실천	결혼의 의미와 가족관계의 이해	기가	가족의 이해	· 결혼의 의미와 부모가 된다는 것의 의미 · 가족관계의 중요성과 역할
6		사랑의 실천	사랑의 가치와 유형	도덕	문화다양성	· 성과 사랑에 대한 올바른 인식
7		사랑의 실천	사랑의 가치와 유형	도덕	성윤리	· 사랑의 의미와 가치 · 사랑의 유형과 실천방법
8		사랑의 실천	사랑의 가치와 유형	도덕	성윤리	· 바람직한 이성교제의 조건 · 성에 대한 합리적 결정
9	성행동	성욕구와 금욕	성욕구의 조절	기가	정보와 통신기술	· 성충동과 금욕이 필요한 이유 · 청소년기 성충동과 성욕구 조절 방법
10	성과 건강	생식기 건강과 임신, 태교, 출산	생식기 건강과 태아	기가	가족의 이해	· 남녀 생식기 위생 · 모체의 상태가 태아에 미치는 영향
11		성매개 감염병과 에이즈	성매개 감염병의 종류와 예방	체육	성의 이해와 성폭력	· 성매개 감염병의 종류 · 성매개 감염병의 예방
12	성행동	청소년의 임신	미혼모와 한부모 지원	체육	성의 이해와 성폭력	· 청소년기 임신의 문제점 · 미혼모와 미혼부의 문제점과 예방
13	사회와 문화	성폭력의 예방과 대처	성폭력 예방과 대처	체육	성의 이해와 성폭력	· 성폭력의 의미 및 대처방법
14			대중매체에 나타난 성 문제 분석	도덕	인간존중	· 대중매체에 나타나는 성문제
15		성매매 방지의 해	성매매의 이해와 방지법	사회	인권침해와 구제방안	· 인권보호를 위한 우리의 자세

꿈과 열정이 살아 숨 쉬는 인월인

3) 중학교 3학년

차시	영역	주제	내용요소	관련교과	단원명	주요학습내용 및 활동
1	인간 발달	청소년의 성과 성징	생식기관과 2차 성징	과학	생식과 발생	· 자손을 남기기 위한 생식기관 · 수정란으로 시작되는 새 생명
2	인간 관계	사랑의 실천	사랑의 가치와 유형	국어	마음을 열고 토론하기	· 사랑의 의미와 가치 · 사랑의 유형과 실천방법
3	대처 기술	성에 대한 주장과 위기관리	성에 대한 자기주장과 거절방법	국어	주장하는 글쓰기	· 성에 대한 의사표현 분명히 하기 · 성과 관련한 자기주장하기 · 성과 관련한 거절 의사 표현하기
4	사회와 문화	성폭력의 예방과 대처	성폭력의 이해와 예방	진로	자연·초월적 존재와의 관계	· 성폭력의 의미 · 성폭력의 예방법
5			성폭력의 실태와 문제점	진로	자연·초월적 존재와의 관계	· 성폭력의 실태와 사례
6			성폭력의 예방과 대처	진로	자연·초월적 존재와의 관계	· 성폭력 사례별 대처 방법
7		성매매방지법의 이해	진로	자연·초월적 존재와의 관계	· 성매매의 이해 · 성매매 실태와 사례	
8	성행동	성욕구와 금욕	성욕구의 조절	체육	성의 이해와 성폭력	· 성충동과 금욕이 필요한 이유 · 청소년기 성충동과 성욕구 조절 방법
9	성과 건강	생식기 건강과 임신, 태교, 출산	임신과 출산	과학	생식과 발생	· 생명의 연속성
10		피임의 선택	피임의 종류와 방법	과학	생식과 발생	· 사랑의 수정과 발생
11		성매개 감염병과 에이즈	HIV와 AIDS	체육	성의 이해와 성폭력	· 에이즈의 감염경로 · 에이즈 예방법
12	성행동	성욕구와 금욕	성욕구의 조절	체육	성의 이해와 성폭력	· 성충동과 금욕이 필요한 이유 · 청소년기 성충동과 성욕구 조절 방법
13	사회와 문화	성폭력의 예방과 대처	성폭력 예방과 대처	체육	성폭력의 예방과 대처방법	· 성폭력의 의미
14			대중매체에 나타난 성 문제 분석 음란물의 영향과 대처	진로	폭력 행동이 가져오는 결과는? · 성폭력의 정의, 문제점	
15		성매매 방지법의 이해	성매매의 이해와 방지법	사회	일제강점기의 사회변화	· 여성 노동자의 삶

4) 고등학교 1학년

표준안 관련			관련 교과		차시
영역	주제	내용 요소	교과명	단원명, 활동내용	
인간관계	자녀양육과부모	자녀양육과부모의역할	기술가정	돌봄과 소통의 가족문화 - 자녀돌보기	1
	건강한이성교제	건강한이성교제와예절	기술가정	사랑과 결혼 -사랑과 결혼으로 이루는 건강한 가족	2
	배우자 선택	배우자의 선택과 이성관	기술가정	사랑과 결혼 -배우자 선택	3
인간발달	출산과 부모	출산, 부모되기 준비하기	기술가정	부모됨과 임신 출산 -부모됨의 이해와 준비	4
	삶과 성	생애 주기에 따른 성의 변화	기술가정	돌봄과 소통의 가족 문화 -가족 문화와 세대간 관계	5
			체육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설계	6
성행동	성욕과 건강한 성생활	성욕과 성 욕구의 해소	체육	신체활동과 여가 생활	7
	임신과 성	성관계와 임신의 책무성	기술가정	부모됨과 임신 출산 -건강한 임신과 출산	8
성건강	생식기질병과 성매매 감염병	생식기의 질병과 건강관리	보건	· 생식기의 질병과 자기건강 관리 방법	9
		성매매 감염병의 종류와 대처	보건	· 성 매개 감염병의 유형별 특성과 치료와 대처	10
	피임과 인공임신중절	피임법의 선택	보건	· 피임법의 장단점, 선택과 활용	11
사회와문화	데이트 성폭력	데이트 성폭력의 의미와 유형	보건	· 데이트 성폭력의 의미, 유형	12
		데이트 성폭력의 사례와 대처법	보건	· 데이트 성폭력의 사례, 대처법	13
	성생활과 법	성과관련된 법률의 이해	보건	· 성희롱 및 성폭력, 성매매등 성 관련 법률의 이해	14
성매매와 성 상품화의 실태, 원인, 대처법		통합사회	인권 문제의 양상과 해결	15	

5) 고등학교 2학년

표준안 관련			관련 교과		차시
영역	주제	내용 요소	교과명	단원명	
인간 발달	삶과 성	인간의 신체상과 성의식	운동	건강관리 이해	1
				자기관리 실천하기	2
		생애주기에 따른 성의 변화	생윤	생명복제와 유전자 치료문제	3
			생윤	출생 죽음의 의미와 삶의 가치	4
			생윤	사랑과 성의 관계	5
대처 기술	성에 대한 가치관과 합리적 의사결정	성에 대한 책무성	운동	자기관리의 중요성	6
	의사소통과 거절의 표현	이성과 의사소통 기법 익히기	독서	성장하는 독서 활동 즐거운 독서 토론	7
		효과적인 거절 방법	독서	비판적 읽기	8
	성 문제에 대한 위기관리	성 문제에 대한 위기관리와 옹호	운동	정서조절과 운동	9
성행동	성욕과 건전한 성생활	성욕과 성욕구의 해소	운동	정서조절을 위한 운동의 계획과 실천	10
인간 관계	배우자의 선택	배우자의 선택과 이성관	진로	나의 미래 모습 생각해보기	11
사회와 문화	성에 대한 가치관과 합리적 의사결정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성과 인격존중	12
	성문제에 대한 위기관리	성문제에 대한 위기관리와 옹호	성폭력 이해와 예방	13	
	데이트 성폭력	데이트 성폭력의 의미와 유형	데이트 성폭력의 의미와 유형	자율	학교폭력예방교육(데이트 성폭력의 의미와 유형)
데이트 성폭력의 의미와 유형		학교폭력예방교육(데이트 성폭력의 의미와 유형)			15

6) 고등학교 3학년

표준안 관련			관련 교과		차시
영역	주제	내용 요소	교과명	단원명	
인간 발달	삶과 성	인간의 삶과 성	윤리와 사상	인간에 대한 다양한 관점	1
			윤리와 사상	인간의 삶과 사회사상의 지향	2
인간 관계	건전한 이성 교제	건전한 이성교제와 예절	화법과 작문	협상과 토론	3
대처 기술	성에 대한 가치관과 합리적 의사 결정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화법과 작문	협상과 토론	4
			윤리와 사상	주체적 결단과 실존	5
		성적 합리적 의사 결정	진로	성과 건강	6
	의사 소통과 거절의 표현	이성과 의사소통 기법 익히기	화법과 작문	효과적인 표현 전략	7
		효과적인 거절 방법	화법과 작문	상황에 맞는 말하기	8
	성 문제에 대한 위기관리	성 문제에 대한 위기관리와 옹호	진로	성과 건강	9
성 행동	성욕과 건전한 성생활	성욕과 성 욕구의 해소	스포츠생활	여가생활을 위한 스포츠	10
사회와 문화	데이트 성폭력	데이트 성폭력의 의미와 유형	자율	학교폭력예방교육 (데이트 성폭력의 의미와 유형)	11
		데이트 성폭력의 사례와 대처법	자율	학교폭력예방교육 (데이트 성폭력의 사례와 대처법)	12
	성과 표현	표현의 자유와 음란물	음악	내 인생의 음악	13
	성생활과 법	성매매와 성상품화의 실태, 원인, 대처법	자율	성매매와 성 상품화의 실태, 원인, 대처법	14
		성과 법률의 이해	자율	성희롱 및 성폭력, 성매매 등 성 관련 법률의 이해	15

9 교사 수업 공개

가. 배경 및 목적

교사의 교수학습 기술 향상과 학습부진의 해소, 학력향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수 및 협의회활동을 통해 지도 역량을 강화한다.

나. 세부계획

1) 추진 방침

- 가) 학부모, 동료 교사 등에게 학기당 1회 이상 수업을 공개함으로써 수업에 대한 교사의 자신감 도출 및 궁극적으로 학생·학부모·교사의 학교교육 만족도 제고
- 나) 맞춤형 부모, 아버지의 수업 참관 기회 확대를 위해 수업공개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
- 다) 평상시 수업을 있는 그대로 공개함으로써 수업공개에 따른 교사의 부담감을 최소화 하고, 수업공개를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학교문화가 창출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
- 라) 경력 교사의 수업 전문성과 실천 지식을 신규 교사가 공유할 수 있는 수업 멘토링제 실시

2) 추진 내용

- 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수업 공개 실시
- 나) 학교홈페이지에 수업공개 계획 게시
- 다) 수업참관 대상 : 학부모, 동료교사, 교장, 교감, 외부 장학 요원, 인근 학교 교사 등
- 라) 수업공개시기 :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시기 조정

3) 수업공개 형태의 다양화 추진

- 가) 희망교사 중심의 수업공개
- 나) 교과통합 수업 공개
- 다) 학부모 요청 시 수업공개 실시
- 라) 선배교사 컨설팅에 기반한 수업공개
- 마) 전문적 학습공동체 모임운영

4) 2020학년도 수업 공개 계획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학부모 및 동료교사 수업 공개의 날 운영 예정
(세부계획 수립 후 내부결재 예정)

가) 월별

시 기	수업공개형태	비 고
6월	전문적 학습공동체 수업 공개	희망자
7월	학부모 및 동료교사 수업 공개의 날	수업공개의 날(전교사)
9월	토론 수업 공개	희망자
11월	학부모 및 동료교사 수업 공개의 날	수업공개의 날(전교사)
12월	교과통합 프로젝트 수업 공개	희망자
연중	지역연합 교과동아리 내 수업공개	남원지역 교과협의회

10 함께 만드는 우리 학교 운영

가. 목적

- 1)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학교
- 2) 사랑으로 솔선수범하여 연구하는 교원
- 3) 뜻 모아 함께하여 활기가 넘치는 행복한 교육의 장

나. 시기 : 연중 (매주 수요일 6교시 이후 15:30~16:30(60분))

다. 추진 방법 및 다짐

운 영	추진 내용	
배움과 성장의 날을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2020년도 '배움과 성장의 날' 운영을 통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와 교사, 학생과 교사, 학생과 학생의 관계 개선을 통해 행복한 교육 공동체 완성 	
	<운영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주: 자체 연수의 날 운영 ■ 2주: 전문적 학습 공동체 교직원 동아리 운영 ■ 3주: 학생 자율 동아리 활동 운영, 교사 기간 교과협의회 운영 ■ 4주: 배움과 성장이 있는 협의회의 날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현안에 대한 의견 나누기 - 교직원 연수 및 외부강사 초청 - 학교 아이들에 대한 정보 나누기 및 장점 찾기 - 수업개선 및 학생이해를 위한 특강 - 지역 역사탐방 및 지리산 둘레길 산책 	
교육과정 집중시기 운영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월 : 학년 초 교육과정 돌아보기 및 세우기 워크숍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신입 교사를 포함한 모든 교직원 - 내용: 우리학교 및 학생의 특징이해, 우리학교 교육과정 이해, 학급(교과) 교육과정 세우기, 교실 정리 등 	
우리가 함께 실천할 약속은?	실행목표 1. 민주적 자치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인권 존중 - 누구에게나 웃으며 인사하기 -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는 문화 만들기 	실행목표 2. 전문적 학습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적 학습공동체 교직원 동아리 운영 - 지역 교사 동아리 참여 - 수업개선을 위한 특강 운영

라. 교내 자율장학과 연계

1) 목적

- 가) 전문적 학습공동체 중심의 자발적인 교육과정-수업-평가 개선 촉진
- 나) 교내 자율장학 활성화로 배움이 즐거운 교실·학교 문화 정착

2) 방침

- 가) 학교 안 학습공동체 중심 소통·협력형 교내 자율장학 활성화
- 나) 다양한 형태의 장학활동을 통한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수시 수업 열기 분위기 형성으로 수업 개선 촉진
- 다) 연간 교내 자율장학 계획은 구성원의 합의를 거쳐 세부 추진 내용이 잘 드러나게 작성하되 별도의 규정된 틀이 없이 자유롭게 작성
- 라) 교실수업개선 역량 신장을 위한 연수 및 동아리 활동은 '배움과 성장의 날'과 연계 운영

3) 운영방법

- 가) 자기장학
 - 자기 수업 모니터링을 통한 수업 성찰하기
 - 수업에서 즐거운 변화를 통하여 삶을 통찰하고 가꾸기
 - 학습공동체, 연구회 및 자기 계발 동아리 활동 참여
- 나) 동료장학
 - 동료 간 수업동행이 되어 수업을 나누고 대화하기
 - 교육과정 재구성, 수업안, (성장)평가 공동 개발
 - 학습자료 및 교구 공동 연구 실천
- 다) 자체연구, 동아리 활동
 - '배움과 성장의 날' 운영과 연계하여 연수, 세미나, 강의, 실습, 토의·토론, 견학 등 전문성 신장
 - 수업 개선 관련 강사 초청
 - 관내 교과 및 수업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동아리 및 협의회 참여
 - '교내 학습공동체' 동아리 활동 운영
 - 매월 2주째 수요일 7교시 실시
 - '학습공동체' 교사연구동아리 운영
 - 수업개선을 위한 방법 고민 나누기
 - 수업공개와 수업의 장점 찾기

IV

창의적 체험활동 편성 · 운영

1.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편성 / 69

2.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 71

1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편성

가. 창의적 체험활동 편성

월	주	날짜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	1	10												
	2	17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3	24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4	1	봉사	봉사	봉사	봉사	봉사	봉사						
5	5	8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6	15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7	22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8	29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6	9	5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10	12	동아리	동아리	동아리	동아리	동아리	동아리						
	11	19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12	26	봉사	봉사	봉사	봉사	봉사	봉사						
	13	3	동아리	동아리	동아리	동아리	동아리	동아리						
7	14	10	봉사	봉사	봉사	봉사	봉사	봉사						
	15	17	동아리	동아리	동아리	동아리	동아리	동아리						
	16	24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17	31	봉사	봉사	봉사	봉사	봉사	봉사						
8	18	7												
	19	14												
	20	21												
	21	28	봉사	자율	봉사	자율	봉사	자율	봉사	자율	봉사	자율	봉사	자율
1학기 소계			자율	19	자율	19	자율	19	자율	19	자율	19	자율	19
			동아리	6	동아리	6	동아리	6	동아리	6	동아리	6	동아리	6
			봉사	9	봉사	9	봉사	9	봉사	9	봉사	9	봉사	9
			진로	0	진로	0	진로	0	진로	0	진로	0	진로	0

꿈과 열정이 살아 숨 쉬는 인월인

월	주	날짜	중학교						고등학교					
			1 학년		2 학년		3 학년		1 학년		2 학년		3 학년	
9	1	4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2	11	동아리	동아리	동아리	동아리	동아리	동아리	동아리	동아리	동아리	동아리	동아리	동아리
	3	18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4	25	동아리	동아리	동아리	동아리	동아리	동아리	동아리	동아리	동아리	동아리	동아리	동아리
10	5	2												
	6	9												
	7	16												
	8	23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9	30	동아리	동아리	동아리	동아리	동아리	동아리	동아리	동아리	동아리	동아리	동아리	동아리
11	10	6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11	13	동아리	동아리	동아리	동아리	동아리	동아리	동아리	동아리	동아리	동아리	동아리	동아리
	12	20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13	27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12	14	4												
	15	11	동아리	동아리	동아리	동아리	동아리	동아리	동아리	동아리	동아리	동아리	동아리	동아리
	16	18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17	25												
1	18	1												
	19	8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20	15												
2 학기 소계			자율	16	자율	16	자율	16	자율	16	자율	16	자율	16
			동아리	10	동아리	10	동아리	10	동아리	10	동아리	10	동아리	10
			봉사	0	봉사	0	봉사	0	봉사	0	봉사	0	봉사	0
			진로	0	진로	0	진로	0	진로	0	진로	0	진로	0
활동별 총계			자율	35	자율	35	자율	35	자율	35	자율	35	자율	35
			동아리	16	동아리	16	동아리	16	동아리	16	동아리	16	동아리	16
			봉사	9	봉사	9	봉사	9	봉사	9	봉사	9	봉사	9
			진로	0	진로	0	진로	0	진로	0	진로	0	진로	0
총계			60		60		60		60		60		60	
기준시간			96		96		96		128		128		128	
비고			자율 32 시간 진로 32 시간 자유학기 16 시간		자율 32 시간 진로 32 시간									

2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가. 자율활동 연간 운영 계획

1) 중학교

가) 창체 자율활동(금 6,7교시 및 행사활동)

영역 실시일			지도교사		협조 인성인권계 혁신교육과정부	이 수 시 간	학년			비고
			담임교사				1	2	3	
순	월	일	활동영역	활동내용						
1	4	17	적응활동	학교 폭력 예방 교육		2	2	2	2	
2		24	적응활동	생명 존중 및 자살 예방 교육		2	2	2	2	
3	5	8	적응활동	성 관련 교육		2	2	2	2	
4		15	적응활동	도박 예방 교육, 인권 교육		2	2	2	2	
5		20	자치활동	학급 자치 활동		1	1	1	1	
6		22	자치활동	학급 자치 활동		2	2	2	2	
7		29	적응활동	정보통신 윤리 교육		2	2	2	2	
8	6	5	자치활동	학급 자치 활동		2	2	2	2	
9		19	적응활동	도박 예방 교육		2	2	2	2	외부강사
10	7	24	학급활동	학급 자치 활동		2	2	2	2	
11	8	28	자치활동	학급 자치 활동		1	1	1	1	
1학기						20	20	20	20	
12	9	4	자치활동	학급 자치 활동		2	2	2	2	
13		18	적응활동	흡연 예방 교육		2	2	2	2	외부강사
14	10	21	행사활동	체육 대회		6	6	6	6	
15		23	자치활동	학급 자치 활동		2	2	2	2	
16	11	6	자치활동	학급 자치 활동		2	2	2	2	보건(중1)
17		20	자치활동	학급 자치 활동		2	2	2	2	보건(중1)
18		27	자치활동	학급 자치 활동		2	2	2	2	
19	12	18	자치활동	학급 자치 활동		2	2	2	2	
20		29	행사활동	학교 축제		7	7	7	7	
21	1	8	자치활동	학급 자치 활동		2	2	2	2	
22		13	행사활동	졸업식 및 종업식		2	2	2	2	
2학기						31	31	31	31	
계						51	51	51	51	

2) 고등학교

가) 창체 자율활동(금 6,7교시 및 행사활동)

영역 실시일			지도교사		이 수 시 간	학년			비고	
			담당교사			1	2	3		
순	월	일	활동영역	협조 인성인권계 혁신교육과정부 활동내용						
1	4	17	적응활동	학교폭력예방교육	2	2	2	2		
2		24	자치활동	학급 자치 활동	2	2	2	2		
3	5	8	적응활동	생명존중 및 자살 예방 교육	2	2	2	2		
4		15	적응활동	도박예방 교육 및 학생 인권 교육	2	2	2	2		
5		20	자치활동	학급 자치 활동	1	1	1	1	고2-27일 고1-6/3일	
6		22	적응활동	생명존중 교육	2	2	2	2		
7		29	적응활동	정보통신 윤리교육	2	2	2	2		
8		6	5	자치활동	학급 자치 활동	2	2	2	2	
9			19	적응활동	도박예방교육 및 노동인권교육	2	2	2	0	외부강사
			적응활동	화해 동행 프로그램	0		0	2		
10	7	24	자치활동	학급 자치 활동	2	2	2	2		
11	8	28	자치활동	학급 자치 활동	1	1	1	1		
1학기					20	20	20	20		
10	9	4	적응활동	학급 적응 활동	2	2	2	2		
11		18	적응활동	흡연 예방 교육	2	2	2	2	외부강사	
12	10	21	행사활동	체육 대회	6	6	6	6		
13		23	자치활동	학급 자치 활동	2	2	2	2		
14	11	6	적응활동	학급 적응 활동	2	2	2	2		
15		20	자치활동	학급 자치 활동	2	2	2	2		
16		27	자치활동	학급 자치 활동	2	2	2	2		
17	12	18	적응활동	학급 적응 활동	2	2	2	2		
18		29	행사활동	인월 축제	7	7	7	7		
19	1	8	자치활동	학급 자치 활동	2	2	2	2		
20		13	행사활동	졸업식 및 종업식	2	2	2	2		
2학기					31	31	31	31		
계					51	51	51	51		

나) 1학년 자율활동 차시별 연간 계획

영역 실시일			시간	지도교사	차시	비고 (외부강사 등)
			화요일 4교시	이현정		
순	월	일	활동내용			
1	4	21	진로 독서 활동 - 모둠 만들기		1	
2		28	진로 독서1 - 책 선정하기		1	
3	5	12	진로 독서1 활동 - 세 줄 서평 쓰기		1	
4		19	진로 독서1 활동 - 세 줄 서평 쓰기		1	
5		26	진로 독서1 활동 - 세 줄 서평 쓰기		1	
6	6	2	진로 독서1 활동 - 서평 모아 글짓기		1	
7		9	진로 독서1 활동 - 서평 모아 글짓기		1	
8		16	진로 독서1 활동 - 의견 나누기		1	
9		23	진로 독서1 활동 - 글 공유하기		1	
10		30	진로 독서1 활동 - 세 줄 서평 쓰기		1	
11	7	7	진로 독서1 활동 - 세 줄 서평 쓰기		1	
12		14	진로 독서1 활동 - 서평 모아 글짓기		1	
13		21	진로 독서1 활동 - 서평 모아 글짓기		1	
14		28	진로 독서1 활동 - 의견 나누기		1	
15	8	4	진로 독서1 활동 - 글 공유하기		1	
16		25	진로 독서2 - 책 선정하기		1	
17	9	1	진로 독서2 활동 - 세 줄 서평 쓰기		1	
18		8	진로 독서2 활동 - 세 줄 서평 쓰기		1	
19		15	진로 독서2 활동 - 세 줄 서평 쓰기		1	
20		22	진로 독서2 활동 - 서평 모아 글짓기		1	
21		29	진로 독서2 활동 - 서평 모아 글짓기		1	
22	10	6	진로 독서2 활동 - 의견 나누기		1	
23		13	진로 독서2 활동 - 글 공유하기		1	
24		20	생식기의 질병과 자기건강 관리 방법		1	보건교육
25		27	성 매개 감염병의 유형별 특성과 치료와 대처		1	보건교육
26	11	3	피임법의 장단점, 선택과 활용		1	보건교육
27		10	데이트 성폭력의 의미, 유형		1	보건교육
28		17	데이트 성폭력의 사례, 대처법		1	보건교육
29		24	성희롱 및 성폭력, 성매매 등 성관련 법률의 이해		1	보건교육
30	12	1	흡연·음주·마약 예방 교육		1	보건교육
31		8	학급자치		1	
32		15	방학 때 읽을 책 선정하기		1	
계					32	

다) 2학년 자율활동 차시별 연간 계획

영역 실시일			시간	지도교사	차 시	비고 (외부강사 등)
			화요일 1교시	최유라		
순	월	일	활동내용			
1	4	21	오리엔테이션		1	
2		28	독서 활동		1	
3	5	12	인권과 헌법; 헌법과 기본권/인권 침해 사례와 구제 방법		1	
4		19	인권과 헌법; 시민의 자세		1	
5		26	독서 활동		1	
6	6	2	헌법과 국가기관; 국회, 대통령, 행정부		1	
7		9	독서 활동		1	
8		16	헌법과 국가기관; 법원과 헌법 재판소		1	
9		23	독서 활동		1	
10		30	경제; 합리적 선택과 경제 체제		1	
11	7	7	경제; 기업의 역할과 기업과 정신		1	
12		14	독서 활동		1	
13		21	경제; 지속 가능한 생활과 금융 생활		1	
14		28	경제; 국민 경제		1	
15	8	4	독서 활동		1	
16	9	1	국제 사회; 국제 사회의 특성과 행위 주체		1	
17		8	국제 사회; 우리나라가 직면한 국가 간 갈등과 해결 노력		1	
18		15	자기 학습 점검		1	
19	10	22	자기 주도적 학습		1	
20		29	자기 주도적 학습		1	
21		6	자기 주도적 학습		1	
22		13	자기 학습 점검		1	
23		20	자기 주도적 학습		1	
24	11	27	자기 주도적 학습		1	
25		3	자기 주도적 학습		1	
26		10	자기 학습 점검		1	
27		17	자율 학습 및 독서		1	
28	12	24	자율 학습 및 독서		1	
29		1	자율 학습 및 독서		1	
30		8	자기 학습 점검		1	
31		15	학교폭력 예방교육(데이트 성폭력의 의미와 유형)		1	
32		22	학교폭력 예방교육(데이트 성폭력의 의미와 유형)		1	
계					32	

라) 3학년 자율활동 차시별 연간 계획

영역 실시일			시간	지도교사	차 시	비고 (외부강사 등)
			월요일 2교시	이현정		
순	월	일	활동내용			
1	4	13	학교 생활과 학습 활동 계획 수립			1
2		20	학교 폭력 예방 결의 다지기			1
3		27	인성 역량을 갖춘 민주 시민 육성			1
4	5	4	다문화 사회와 인권			1
5		11	학급 구성원들 간의 연대 위식 고취			1
6		18	생명 존중 교육(고3 전국연합평가)			1
7		25	흡연 예방 교육			1
8	6	1	급우 간 멘토 멘티 활동으로 인한 학업 의식 고취			1
9		8	부모, 은사께 감사의 편지 쓰기			1
10		15	장애우와 소통하기			1
11		22	자살 예방 교육			1
12		29	학생 인권 교육 및 통일 안보 교육			1
13	7	6	가정 폭력 예방 교육			1
14		13	가정 폭력 예방 교육			1
15		20	생명 존중 교육			1
16		27	성교육, 성에 대한 책무성 교육			1
17	8	3	학교 자살 예방 교육(고3 전국연합평가)			1
18	9	7	학교 자살 예방 교육			1
19		14	밝고 질서 있는 학교 만들기			1
20		21	인권 존중과 생명 존중 정신 함양(고3 대학수학능력모의평가)			1
21		28	봉사 체험을 통한 인성 교육 실천			1
22	10	5	안전 사고 없는 학교 만들기			1
23		12	교통 사고 예방 교육 강화			1
24		19	정보 통신 윤리 교육			1
25		26	학교폭력 예방교육(데이트 성폭력의 의미와 유형)			1
26	11	2	학교폭력 예방교육(데이트 성폭력의 사례와 대처법)			1
27		9	성매매와 성 상품화의 실태, 원인, 대처법			1
28		16	성희롱 및 성폭력, 성매매 등 성 관련 법률의 이해			1
29		23	학생 인권 조례 준수			1
30		30	학교 폭력 예방 지도			1
31	12	7	금연 도난 사고 예방 지도			1
32		14	휴대폰 예절 및 관리 지도			1
계					32	

나. 진로활동 연간 운영 계획

1) 중학교

가) 1학년 진로활동 차시별 연간 계획

실시일		영역	시간		지도교사	차시	비고 (외부강사 등)
			화요일 4교시		박진혁		
순	월	일	활동내용				
1	4	21	나의 강점 카드 만들기			1	
2		28	나의 직업 흥미 알아보기			1	
3	5	12	원만한 대인관계 맺기			1	
4		19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 알기			1	
5		26	나 전달법 연습하기			1	
6	6	2	자신의 대인관계 알아보기			1	
7		9	다양한 직업 알아보기(동영상)			1	
8		16	다양한 직업 직접 조사해서 알아보기			1	
9		23	사회 변화에 따른 직업 알아보기			1	
10		30	나만의 직업 만들어보기			1	
11	7	7	직업인 역할 모델 탐색하기			1	
12		14	직업의 긍정적 가치 찾기			1	
13		21	상황에 따른 직업 윤리 생각해보기			1	
14	8	4	찾아가는 진로 체험			1	외부강사
15	9	1	직업인 역할 모델 탐색하기			1	
16		8	원만한 대인관계 맺기			1	
17		15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 알기			1	
18		22	나 전달법 연습하기			1	
19		29	공감하며 경청하기			1	
20	10	6	자신의 대인관계 알아보기			1	
21		13	다양한 직업 알아보기(동영상)			1	
22		20	다양한 직업 직접 조사해서 알아보기			1	
23		27	사회 변화에 따른 직업 알아보기			1	
24	11	3	나만의 직업 만들어보기			1	
25		10	창업 아이템 만들어보기			1	
26		17	직업의 긍정적 가치 찾기			1	
27		24	상황에 따른 직업 윤리 생각해보기			1	
28	12	1	직업의 편견과 고정 관념 알아보기			1	
29		15	직업의 편견과 고정 관념 극복하기(모둠활동)			1	
30		22	직업인 역할 모델 탐색하기			1	
31	1	5	영화를 통해 진로와 직업에 대해 생각해보기			1	
32		12	영화를 통해 진로와 직업에 대해 생각해보기			1	
계						32	

나) 2학년 진로활동 차시별 연간 계획

실시일 영역			시간	지도교사	차시	비고 (외부강사 등)
			화요일 7교시	정은숙		
순	월	일	활동내용			
1	4	21	진로탐색 1		1	
2		28	진로탐색 2		1	
3	5	12	진로탐색 3		1	
4		19	진로탐색 4		1	
5		26	진로 독서 활동 오리엔테이션		1	
6	6	2	효과적인 독서 방법 알아보기		1	
7		9	올바른 독서 습관 알아보기		1	
8		16	캐리어넷을 통한 적성 검사		1	
9		23	적성 검사 결과 해석하기		1	
10		30	진로와 관련된 책 고르기		1	
11	7	7	독서와 내용 요약하기 1		1	
12		14	독서와 내용 요약하기 2		1	
13		21	독서와 내용 요약하기 3		1	
14	8	4	찾아가는 진로 체험		1	
15	9	1	독서 내용 발표하고 경청하기 1		1	
16		8	독서 내용 발표하고 경청하기 2		1	
17		15	독서와 내용 요약하기 1		1	
18		22	독서와 내용 요약하기 2		1	
19		29	독서와 내용 요약하기 3		1	
20	10	6	독서 내용 발표하고 경청하기 1		1	
21		13	독서 내용 발표하고 경청하기 2		1	
22		20	독서와 내용 요약하기 1		1	
23		27	독서와 내용 요약하기 2		1	
24	11	3	독서와 내용 요약하기 3		1	
25		10	독서 내용 발표하고 경청하기 1		1	
26		17	독서 내용 발표하고 경청하기 2		1	
27		24	자신의 대인관계 알아보기		1	
28	12	1	다양한 직업 알아보기(동영상) 1		1	
29		15	다양한 직업 알아보기(동영상) 2		1	
30		22	다양한 직업 알아보기(동영상) 3		1	
31	1	5	다양한 직업 직접 조사해서 알아보기		1	
32		12	직업의 편견과 고정 관념 알아보기		1	
계					32	

2) 고등학교

가) 1학년 진로활동 차시별 연간 계획

영역			시간	지도교사	차시	비고 (외부강사 등)	
실시일		목요일 1교시	김하은				
순	월	일	활동내용				
1	4	16	오리엔테이션			1	
2		23	직업카드 활용한 다양한 직업 탐색(현실형)			1	
3	5	7	직업카드 활용한 다양한 직업 탐색(탐구형)			1	
4		14	직업카드 활용한 다양한 직업 탐색(예술형)			1	
5		21	직업카드 활용한 다양한 직업 탐색(사회형)			1	
6		28	직업카드 활용한 다양한 직업 탐색(진취형)			1	
7		4	직업카드 활용한 다양한 직업 탐색(관습형)			1	
8	6	11	진로 특강			1	
9		18	학과카드 활용한 다양한 학과 탐색(인문계열)			1	
10		25	학과카드 활용한 다양한 학과 탐색(인문계열)			1	
11	7	2	학과카드 활용한 다양한 학과 탐색(사회계열)			1	
12		9	학과카드 활용한 다양한 학과 탐색(사회계열)			1	
13		16	학과카드 활용한 다양한 학과 탐색(경영계열)			1	
14		23	학과카드 활용한 다양한 학과 탐색(경영계열)			1	
15		30	진로 특강			1	
16	8	6	학과카드 활용한 다양한 학과 탐색(교육계열)			1	
17	9	3	학과카드 활용한 다양한 학과 탐색(교육계열)			1	
18		10	학과카드 활용한 다양한 학과 탐색(공학계열)			1	
19		17	학과카드 활용한 다양한 학과 탐색(공학계열)			1	
20		24	학과카드 활용한 다양한 학과 탐색(자연계열)			1	
21	10	8	학과카드 활용한 다양한 학과 탐색(자연계열)			1	
22		15	진로 특강			1	
23		22	학과카드 활용한 다양한 학과 탐색(의약계열)			1	
24		29	학과카드 활용한 다양한 학과 탐색(의약계열)			1	
25		5	학과카드 활용한 다양한 학과 탐색(예체능계열)			1	
26	11	12	학과카드 활용한 다양한 학과 탐색(예체능계열)			1	
27		19	학과카드 활용한 다양한 학과 탐색(이색학과)			1	
28		26	학과카드 활용한 다양한 학과 탐색(이색학과)			1	
29	12	3	진로 특강			1	
30		10	모의 창업 (1)			1	
31		17	모의 창업 (2)			1	
32		24	지망 직업 / 지망 학과 탐색			1	
계					32		

나) 2학년 진로활동 차시별 연간 계획

영역 실시일			시간	지도교사	차시	비고 (외부강사 등)
			월요일 7교시	최유라		
순	월	일	활동내용			
1	4	20	오리엔테이션		1	
2		27	나에 대해 알기		1	
3	5	4	흥미 찾기		1	
4		11	카드로 적성 알아보기		1	
5		18	카드로 적성 알아보기		1	
6		25	나 소개하기		1	
7	6	1	주변 사람들과 관계 맺기		1	
8		8	게임을 통한 타인과의 소통		1	
9		15	의사소통 방법		1	
10		22	역할극을 통한 의사소통		1	
11		29	직업의 의미		1	
12	7	6	다양한 직업의 종류		1	
13		13	색다른 직업 찾아보기		1	
14		20	내 주변의 직업 알아보기		1	
15		27	내 주변의 직업인 인터뷰		1	
16	8	3	내 주변의 직업인 인터뷰		1	
17	9	7	내 주변의 직업인 인터뷰		1	
18		14	미래 세계의 직업		1	
19		21	새로운 직업 만들기		1	
20		28	모의 창업		1	
21	10	5	나의 미래 모습 생각해보기		1	
22		12	성과 인격 존중		1	
23		19	성폭력 이해와 예방		1	
24		26	직업 가치관 이해		1	
25	11	2	올바른 직업 윤리		1	
26		9	직업 선호도 조사		1	
27		16	직업 편견과 고정 관념		1	
28		23	진로와 학습의 관계		1	
29		30	대학교의 유형과 특성		1	
30	12	7	대학교의 유형과 특성		1	
31		14	진로와 관련된 학과 탐색		1	
32		21	진로와 관련된 학과 탐색		1	
계					32	

다) 3학년 진로활동 차시별 연간 계획

영역			시간	지도교사	차시	비고 (외부강사 등)
실시일			목요일 1교시	김하은		
순	월	일	활동내용			
1	4	9	오리엔테이션		1	
2		16	학과카드를 활용한 학과 탐색		1	
3		23	학과카드를 활용한 학과 탐색		1	
4	5	7	학과카드를 활용한 학과 탐색		1	
5		14	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의사항 이해하기		1	
6		21	자기소개서 작성하기		1	
7		28	자기소개서 작성하기		1	
8	6	4	자기소개서 작성하기		1	
9		11	자기소개서 작성하기		1	
10		18	자기소개서 작성하기		1	
11		25	자기소개서 작성하기		1	
12	7	2	자기소개서 작성하기		1	
13		9	자기소개서 작성하기		1	
14		16	자기소개서 작성하기		1	
15		23	자기소개서 작성하기		1	
16		30	자기소개서 작성하기		1	
17	8	6	자기소개서 작성하기		1	
18	9	3	자기소개서 작성하기		1	
19		10	자기소개서 작성하기		1	
20		17	자기소개서 작성하기		1	
21		24	자기소개서 작성하기		1	
22	10	8	모의 면접		1	
23		15	모의 면접		1	
24		22	모의 면접		1	
25		29	모의 면접		1	
26	11	5	모의 면접		1	
27		12	모의 면접		1	
28		19	나의 꿈(보물지도) 만들기		1	
29		26	나의 꿈(보물지도) 만들기		1	
30	12	3	나의 꿈(보물지도) 발표하기		1	
31		10	나의 꿈(보물지도) 발표하기		1	
32		17	성과 건강		1	
계					32	

다. 동아리활동 연간 운영 계획

1) 중학교

가) 창체 동아리 활동(금 6,7교시)

실시일 영역			시간	지도교사	협조	이수 시간	학년			비고
			금요일 6,7교시	부별 담당교사	담임교사		1	2	3	
순	월	일	활동영역	활동내용						
1	6	12	동아리활동	부별 활동 계획 세우기		2	2	2	2	
2	7	3	동아리활동	부별활동		2	2	2	2	
3		17	동아리활동	부별활동		2	2	2	2	
4	9	11	동아리활동	부별활동		2	2	2	2	
5		25	동아리활동	부별활동		2	2	2	2	
6	10	30	동아리활동	부별활동		2	2	2	2	
7	11	13	동아리활동	부별활동		2	2	2	2	
8	12	11	동아리활동	부별활동		2	2	2	2	
계						16	16	16	16	

나) 1학년 스포츠클럽 차시별 연간 계획

실시일 영역			시간	지도교사	차시	비고 (외부강사 등)
			목요일 4교시	이승미		
순	월	일	활동내용			
1	4	16	(온라인) 줄넘기 강좌- 손동작, 몸동작		1	
2		23	(온라인) 줄넘기 강좌- 발동작, 줄길이 조절		1	
3	5	7	(온라인) 줄넘기 강좌- 리듬감, 밸런스		1	
4		14	(온라인) 줄넘기 강좌- 타이밍, 줄돌리기		1	
5		21	오리엔테이션 및 안전 지도, 줄넘기 엇걸어 뛰기		1	
6	6	29	농구공 잡는 방법, 이동하는 공 잡는 방법 연습		1	
7		4	배드민턴 셔틀콕을 라켓으로 튀기기		1	
8		11	줄넘기 앞흔들어 내어 뛰기		1	
9		18	농구 볼 컨트롤, 기본 드리블 연습		1	
10	7	25	배드민턴 웨스턴 그립 방법, 이스턴 그립 방법		1	
11		2	줄넘기 옆흔들어 내어 뛰기		1	
12		9	농구 레이업 슛 및 리바운드 연습		1	
13	8	16	배드민턴 스텝을 이용한 하이클리어		1	
14		23	줄넘기 방향 전환 뛰기		1	
15	8	6	농구 패스, 삼각패스, 사각패스 연습		1	
16		27	배드민턴 스텝을 이용한 포핸드, 백핸드 드라이브		1	
계					16	

※ 2학기 자유학기제 운영

다) 2학년 스포츠클럽 차시별 연간 계획

영역 실시일			시간	지도교사	차시	비고 (외부강사 등)
			목요일 3교시	김하은		
순	월	일	활동내용			
1	4	16	오리엔테이션		1	
2		23	줄넘기 손동작		1	
3		7	줄넘기 몸동작		1	
4		14	줄넘기 발동작		1	
5	5	21	줄넘기 줄길이 조절		1	
6		28	리듬감 연습		1	
7	6	4	밸런스 교정		1	
8		11	줄넘기 타이밍 연습		1	
9		18	줄돌리기 연습		1	
10		25	손잡이 잡는법		1	
11	7	2	좌우옆떨쳐 돌리기		1	
12		9	되돌리기		1	
13		16	좌우옆떨쳐 되돌리기		1	
14		23	돌리기 중간 연습		1	
15	8	6	1회선 2도약		1	
16		27	구보로 뛰기		1	
17	9	3	좌우 2박자 뛰기		1	
18		10	실전 연습		1	
19		17	십자뛰기		1	
20		24	앞뒤 2박자뛰기		1	
21	10	8	좌우벌렸다 붙여뛰기		1	
22		15	앞뒤벌렸다 붙여뛰기		1	
23		22	가위바위보 뛰기		1	
24		29	실전 연습		1	
25	11	5	되돌려 흔들어뛰기		1	
26		12	앞흔들어뛰기		1	
27		19	옆흔들어뛰기		1	
28		26	넓적다리 들어뛰기		1	
29	12	10	엇걸었다풀어뛰기		1	
30		17	내어뛰기		1	
31		24	실전 연습		1	
32		31	음악에 맞춰 뛰기		1	
33	1	7	음악에 맞춰 뛰기		1	
계					33	

라) 3학년 스포츠클럽 차시별 연간 계획

영역 실시일			시간 화6, 목7	지도교사 김종구	차시	비고 (외부강사 등)
순	월	일				
1	4	17	배구 이론	1		
2		21	배구공 던지고 받기	1		
3		23	언더 패스	1		
4		28	오버 패스	1		
5	5	7	토스	1		
6		12	포지션 역할 이해	1		
7		14	서브	1		
8		19	스파이크	1		
9		21	실전	1		
10		26	실전	1		
11		28	피구 이론	1		
12	6	2	공 던지고 받기	1		
13		4	공격 패턴 익히기	1		
14		9	실전	1		
15		11	실전	1		
16		16	탁구 이론	1		
17		18	공 튀기기	1		
18		23	공 넘기기	1		
19		25	포핸드 연습(개인)	1		
20		30	포핸드 연습(2인1조)	1		
21	7	2	백핸드 연습(개인)	1		
22		7	포핸드 연습(2인1조)	1		
23		9	서브	1		
24		14	드라이브	1		
25		16	커트	1		
26		21	실전	1		
27		23	실전	1		
28	8	4	테니스 이론	1		
29		6	라켓에 공 튀기기	1		
30		27	네트 공 넘기기	1		
31	9	1	포핸드(던져주는 공 넘겨보기)	1		
계				31		

꿈과 열정이 살아 숨 쉬는 인월인

영역 실시일			시간	지도교사	차시	비고 (외부강사 등)
			화6,목7	김종구		
순	월	일	활동내용			
32	9	3	기초체력훈련 및 기초기능 형성		1	
33		8	서브리시브로부터 어택, 찬스 볼 리시브		1	
34		10	블로킹 커버로부터 어택, 서브 리시브로부터 어택		1	
35		15	수비 및 공격 연결 훈련 및 팀 전술 훈련		1	
36		17	기초체력훈련 및 기초기능 형성		1	
37		22	서브리시브로부터 어택, 찬스 볼 리시브		1	
38		24	블로킹 커버로부터 어택, 서브 리시브로부터 어택		1	
39		29	기초기능형성, 수비부분연습		1	
40		10	6	기초체력훈련 및 기초기능 형성		1
41	8		서브리시브로부터 어택, 찬스 볼 리시브		1	
42	13		수비 및 공격 연결 훈련 및 팀 전술 훈련		1	
43	20		기초체력훈련 및 기초기능 형성		1	
44	22		서브리시브로부터 어택, 찬스 볼 리시브		1	
45	27		블로킹 커버로부터 어택, 서브 리시브로부터 어택		1	
46	29		기초기능형성, 수비부분연습		1	
47	11	3	기초체력훈련 및 기초기능 형성		1	
48		5	수비 및 공격 연결 훈련 및 팀 전술 훈련		1	
49		10	기초체력훈련 및 기초기능 형성		1	
50		12	서브리시브로부터 어택, 찬스 볼 리시브		1	
51		17	기초체력훈련 및 기초기능 형성		1	
52		19	블로킹 커버로부터 어택, 서브 리시브로부터 어택		1	
53		24	기초기능형성, 수비부분연습		1	
54		26	수비 및 공격 연결 훈련 및 팀 전술 훈련		1	
55	12	1	기초체력훈련 및 기초기능 형성		1	
56		15	서브리시브로부터 어택, 찬스 볼 리시브		1	
57		17	수비 및 공격 연결 훈련 및 팀 전술 훈련		1	
58		22	블로킹 커버로부터 어택, 서브 리시브로부터 어택		1	
59		24	기초체력훈련 및 기초기능 형성		1	
60		31	서브리시브로부터 어택, 찬스 볼 리시브		1	
61	1	5	블로킹 커버로부터 어택, 서브 리시브로부터 어택		1	
62		7	기초기능형성, 수비부분연습		1	
63		12	기초체력훈련 및 기초기능 형성		1	
계					32	

2) 고등학교

가) 창체 동아리 활동(금 6,7교시)

실시일 영역			시간	지도교사	협조	이수 시간	학년			비고
			금요일 6,7교시	부별 담당교사	담당교사		1	2	3	
순	월	일	활동영역	활동내용						
1	6	12	동아리활동	부별 활동 계획 세우기		2	2	2	2	
2	7	3	동아리활동	부별활동		2	2	2	2	
3		17	동아리활동	부별활동		2	2	2	2	
4	9	11	동아리활동	부별활동		2	2	2	2	
5		25	동아리활동	부별활동		2	2	2	2	
6	10	30	동아리활동	부별활동		2	2	2	2	
7	11	13	동아리활동	부별활동		2	2	2	2	
8	12	11	동아리활동	부별 활동 반성회		2	2	2	2	
계						16	16	16	16	

라. 동아리활동 세부 운영 계획

1) 창체 동아리

가) 개설 부서 : 중 7개, 고 8개

나) 운영시간 : 금요일 창체 동아리 시간

다) 창체 동아리 조직 현황

구분	순	동아리명	지도교사	인원	학생 명단		
중 학 교	1	당구 (체력단련실)	김종구	7	중1	김**, 전**	
					중2	강**, 원**, 노**, 민**	
					중3	최**	
	2	프로그래밍 (정보화실)	이승미	5	중1	장**, 장**	
					중2	최**, 원**, 김**	
					중3		
	3	도예&공예 (미술실)	정은숙	7	중1	정**, 이**	
					중2	김**, 최**, 전***	
					중3	김**, 김**	
	4	영화 속 조각들 (1년 교실)	박진혁	9	중1	김**, 김**, 박**, 강**	
					중2	김**	
					중3	정**, 최**, 배**, 김**	
	5	캘리그래피 (상담실)	이선숙	5	중1	김**, 양**	
					중2	오**, 최**	
					중3	이**	
	6	농구 (체육관)	이상웅	8	중1	양**, 전*** 강*, 이**	
					중2	최**	
					중3	이**, 오**, 박**	
	7	밴드 (음악실2)	김경미	7	중1	전**, 김**	
					중2	장**	
					중3	김**, 서**, 김**, 양**	

꿈과 열정이 살아 숨 쉬는 인월인

구분	순	동아리명	지도교사	인원	학생 명단	
고 등 학 교	1	교지 편집부 (도서실)	이현정	4	고1	강**, 김**
					고3	송**, 양**
	2	역사 탐구부 (고 1교실)	최유라	6	고1	손**, 김**, 김**
					고3	공**, 박**, 배**
	3	영미문화 (영어교과실)	김현영	7	고1	최**, 박**
					고2	김**, 김**, 홍**
					고3	윤**, 이**
	4	Barrier Free Friendship (학습도움실)	유 순	5	고1	임**
					고2	강**
					고3	서**, 오**, 장**
	5	Angel-IN-Nurse (북카페)	안수빈	6	고1	배**
					고2	강**, 김**, 홍**
					고3	김**, 형**
	6	스매싱 (강당)	천개일	7	고1	김**, 최**
					고2	김**, 이**, 정**
					고3	노**, 정**
	7	음악과 문화 (토론학습실)	김하은	8	고1	양**
					고2	양**, 장**, 정**, 임**
					고3	김**, 김**, 윤**
	8	과학창의부 (생화학실)	임정일	6	고1	강**, 김**
					고2	공**, 이**, 박**
					고3	이*

2) 자율동아리

- 가) 개설 부서 : 4개
- 나) 운영시간 : 점심시간, 방과후 시간
- 다) 운영방법 : 월 1회 지도교사와 협의 및 점검
- 라) 자율동아리 현황

순	지도교사	동아리명	활동 내용 소개	회장	인원	학생 명단	
1	천혜련	연금밴드	밴드 악기를 연주하며 악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연을 통해 연주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는 동아리	임**	9	고1	김**, 배**, 최**, 최**
						고2	임**, 공**, 이**, 정**, 이**
2	김현영	HOLA	여러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탐구하는 동아리	윤**	5	고3	윤**, 이**, 공**, 박**, 배**
3	이상웅	과학토론동아리	과학, 기술, 사회적 문제를 독서를 통해 인식하고 이에 대해 토론함으로써 다양한 생각을 나누는 동아리	이*	11	고1	박**, 강**, 김**, 김**
						고2	김**, 김**, 박**, 홍**
						고3	이*, 장**, 정**
4	임정일	사회탐구동아리	학교, 지역, 사회단위의 사회 현상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에 대해 탐구하고 해결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동아리	송**	5	고3	송**, 양**, 서**, 오**, 노**

라. 봉사활동 운영

1) 추진배경

- 가) 실천 위주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다양한 경험과 삶의 보람을 체득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학생 봉사활동 운영
- 나) 나눔과 배려의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봉사활동의 효율적인 안내와 지원체제 강화
- 다) '학생 봉사활동 인정 기준'을 제공하여 학생 봉사활동 실적 관리의 공정성 및 합리성 제고

2) 추진방향

- 가)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구성
 - 위원장(교감) : 신희철
 - 부위원장(봉사활동 업무담당) : 장익성
 - 위원(학급 담임) : 고1 임정일, 고2 김현영, 고3 장익성
- 나) 봉사활동은 「학교 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과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다) 학교 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은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의 봉사활동 영역으로 운영한다.
- 라) 학생 봉사활동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실시한다.
- 마) 학생이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인성 함양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자기주도적 봉사활동(프로젝트 형 봉사활동)을 실천한다.
- 바) 국가 인정 봉사활동 기관과 연계한 학생 봉사활동 지도 및 관리로 실적 부풀리기 등 비교육적 행태를 개선한다.
- 사) 학생 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非政派性), 비종파성(非宗派性)의 원칙 아래 수행한다.

3) 학생 봉사활동 시간

- 가) 학생 봉사활동의 연간 이수시간은 학교 교육과정상의 시간과 학교 교육과정 이외의 봉사활동 시간을 포함하여 중학교는 12시간, 고등학교는 14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 특정 시기에 편중하지 않도록 하게 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 나) 학교 교육과정상의 봉사활동 시간은 중·고등학교 9시간을 편성하여 운영한다.(양식1)

4) 학생 봉사활동 시간 인정 기준

- 가) 봉사활동 인정 기준의 기본 원칙
 - (1)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봉사자(학생)와 봉사활동의 장소(기관, 단체)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꿈과 열정이 살아 숨 쉬는 인월인

(2) 인정 대상이 되는 봉사활동은 자원봉사의 공익성(공공성, 비영리성)과 무보수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나) 시간 및 활동 기본 인정 기준

(1) 봉사활동 시간 인증은 1일 8시간 이내 인정을 원칙으로 한다.

구분	평일 (6교시 수업기준)	휴업일(토, 공휴일)
인정시간	2시간	8시간

※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평일 수업시간이 7교시면 1시간, 6교시면 2시간, 4교시면 4시간 인정

※ 학생의 징계,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따른 학교 내 봉사활동,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2) 실제 봉사활동 시간에 한해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구분	출발	현장 도착	준비 / 교육	활동	식사	활동	평가	봉사활동 후 휴식	현장 출발	도착	귀가
인정			활동 인정 가능								

- 이동시간은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되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자원봉사 등 국가적 재난극복을 위한 활동의 경우에는 2시간이내에서 이동시간을 추가로 인정한다.

다) 봉사활동 내용별 인정 기준

(1) 봉사활동 관련 교육 및 회의시간 : 봉사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본.전문교육 및 회의시간은 봉사활동시간으로 인정한다.

※ 봉사활동 시작 전에 실시하는 교육 등 봉사활동과 직접 관련된 시간은 인정

(2) 문화공연 준비 : 공연에 의한 봉사활동 시 공연당일 공식적인 준비시간 및 최종연습시간은 인정한다.

※ 봉사활동 현장에서 공연시작 전에 하는 공식적 공연준비나 최종연습 등은 포함하되 공연주체의 일상적인 공연준비나 연습은 제외한다.

(3) 번역 : 공익적 목적에 의해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경우 200자 원고지 5매 당 또는 A4 1매를 1시간 기준으로 인증

※ 점자, 녹음 등 번역과 유사한 활동의 경우에도 인정한다.

(4) 행사참여 : 각종 행사에 따른 안내(내빈이나 주차), 주변정리, 홍보 등 실질적 봉사활동은 인정하나 단순참여는 불인정한다.

※ 정부 . 지자체 기념식 등의 공공행사에 단순 동원식 참여 및 행정기관으로부터 활동비 등 대가를 받는 활동은 제외

(5) 물품 및 현금기부 등 : 물품 및 현금 기부는 봉사활동 시간으로 환산하여 인정할 수 없다. 예) 헌옷 모으기,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폐휴대폰 수거 등

(6) 학생의 헌혈 자원봉사 시간 인정 : 교육과정 시수와 상관 없이 1회 4시간 인

정.(1년에 인정 횟수 3회 이내, 연 12시간 이내로 인정)

※ 헌혈자 본인만 인정, 헌혈 증서를 양도 받은 자는 적용하지 않음

※ 헌혈 후 소감록을 작성(동기, 목적 등 기록)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봉사활동 인정 (양식4)

(7)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활동 인정 : 선플 작성 최대 12시간 인정(중 50자 이상, 고60자 이상으로 20건당 일주일 최대 1시간 인정)

(8) 해외봉사활동 실적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실적 입력을 금지한다.

(9) 안전 신고: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 안전 신고 학생 가운데 수용된 사고 1건 당 1시간 봉사활동 인정. 반드시 소감록을 작성(동기, 목적 등 기록)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인정

- 하루 최대 4시간, 기간 중 최대 10시간 인정

라) 봉사활동 인정 가능한 기관

(1) 시·도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

(2) 자원봉사센터(안행부), 사회복지협의회(복지부),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여가부) 등에서 인정하는 기관

※ 학생봉사활동 인정 불가 기관 :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이나 단체

마) 학생 봉사활동 절차 및 운영 방법

(1) 학교 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은 교육부 고시 교육과정 및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 및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 지도 자료를 준거로 편성한다.

(2) 학교 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은 학년 초에 학교 교육계획으로 수립하여 실시·운영한다.

(3) 봉사활동 시간은 다른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의 시간과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다.

(4) 봉사활동 실시 전에 사전 계획을 수립하여 담당교사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도록 지도한다.

(5) 봉사활동 수행 절차를 통해 학생 대상 봉사활동 소양 교육을 실시하며 사전 교육을 통해 봉사활동에서 필요한 태도와 방법 역할 분담을 부여한다. 특히 현장 교육과 실천 그리고 반성 및 평가를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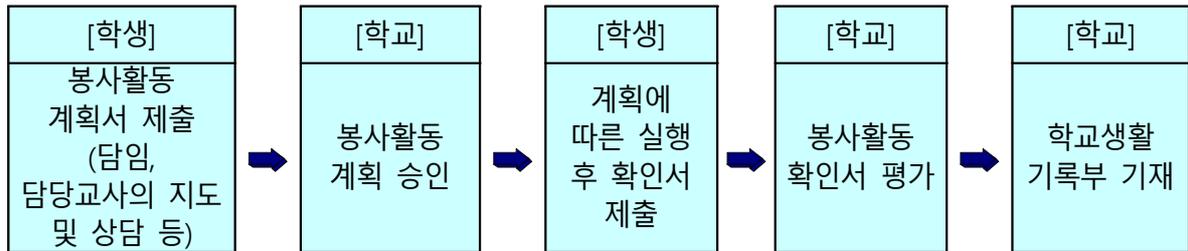
(6) 봉사활동 지도교사는 학교 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 상황을 봉사활동 기록 표에 기록(양식3, 학생 개인별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 생략)

5) 학교 교육과정 이외의 봉사활동(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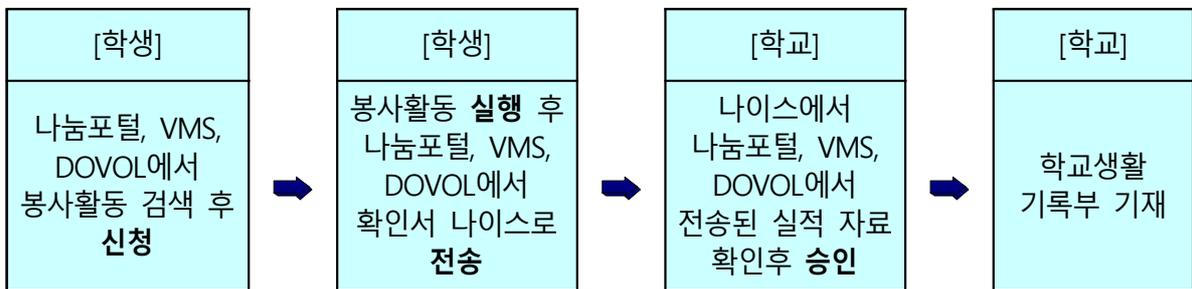
가) 학교 교육과정 이외의 봉사활동 절차

꿈과 열정이 살아 숨 쉬는 인월인

- (1) 나눔포털, VMS, DOVOL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추천(허가)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한다.(양식2)



- (2) 나눔포털, VMS, DOVOL을 이용하는 경우 :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실시 전 담당 교사와 사전 상담 실시하여 인정 가능 기관과 활동인지 확인 필요



※ 나눔포털 ⇔ VMS 자료전송 시 실적 공유, 나눔포털 ⇔ DOVOL 실적 자동 공유 (자료 전송 불필요)

(3) 편성 및 운영 방법

- (가) 학교 교육과정 이외의 봉사활동은 교육감, 교육장, 학교장이 인정한 기관이나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봉사 관련 단체 등 학교 밖의 봉사활동 장소에서 실시하도록 한다. 단, 학교의 공식행사나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과 방학 중 별도의 계획에 의하여 실시되는 교내 봉사활동은 인정한다.

- (나) 학교에서는 봉사활동 계획서 승인 시에 봉사활동 인정기관 여부, 봉사활동 계획(내용), 지도교사 유무, 안전 등 학생들의 봉사활동 계획이 적절한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해당기관에 협조 요청을 한다.

(4)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또는 봉사활동 실적 나이스로 전송

- (가) 학교 교육과정 이외의 봉사활동 실시 후에는 봉사활동 확인서에 활동 기관으로부터 활동 내용을 확인받아 담임교사에게 확인서를 제출한다.

- (나) 봉사활동 확인서에는 봉사자의 성명, 소속, 활동 시간, 활동 장소, 활동 내용 및 의견, 확인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활동 기관의 직인, 확인서 발급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양식 2, 3 참조]

※ 발급기관의 사정으로 발급번호가 미기재되어 있거나 기록 내용이

부실할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발급기관에 확인 후 재요청한다. 그러나 확인자의 서명과 활동기관의 직인이 없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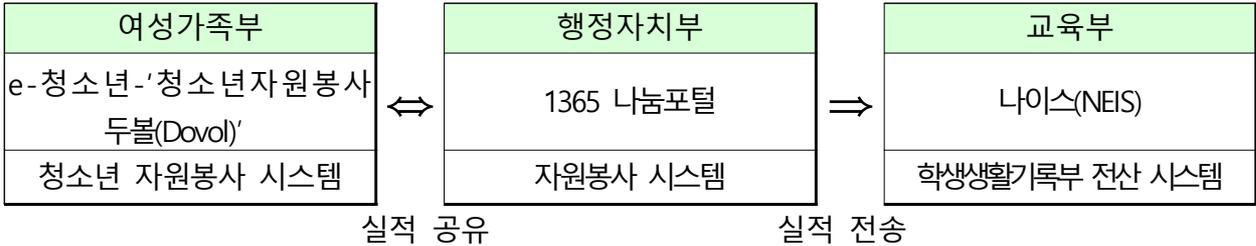
- (다) 봉사활동 확인서 양식은 학교에 항시 비치하며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지한다.
- (라) 학생들이 나눔포털, VMS, DOVOL을 이용하여 봉사활동을 한 경우에는 봉사활동 실적이 나이스로 전송된 내용을 지도교사가 확인 후 승인한다.(확인서 제출 안함)

전라북도 봉사활동 기관 안내

전북자원 봉사종합센터	주 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산너머 3길 61 4층		
	전화번호	227-1365	팩스번호	227-1364
	홈페이지	http://www.jbvollo.or.kr		
전북청소년 활동진흥센터	주 소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동로 264 JK사이언스 2층		
	전화번호	232-0479	팩스번호	287-0479
	홈페이지	http://www.jb0479.or.kr		
전북사회복지 협의회	주 소	전주시덕진구 전주천동로 483(금암동)		
	전화번호	224-1861,2	팩스번호	224-1863
	홈페이지	http://www.jbcsw.or.kr		
전주시자원봉사 종합센터	주 소	전주시 덕진구 전주천동로 455		
	전화번호	273-1364	팩스번호	281-2994
	홈페이지	http://nanum.jeonju.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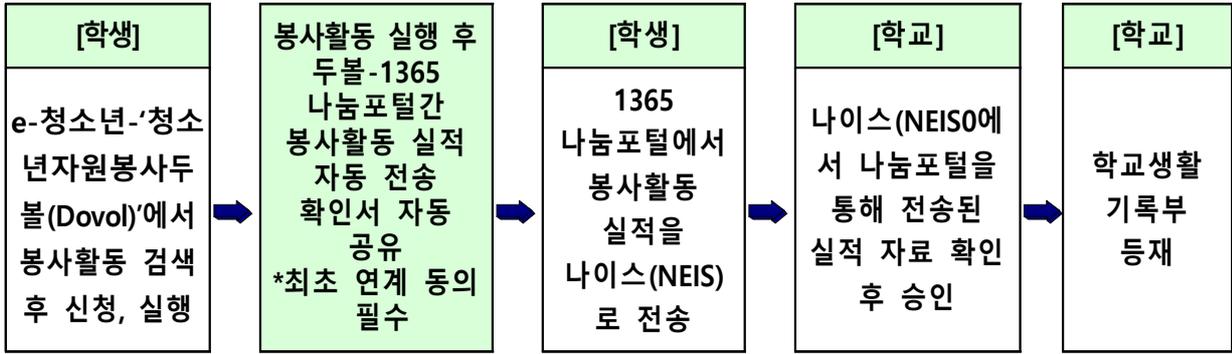
Dovol(두볼)-나눔포털 봉사활동 실적 연계 안내자료

- 시스템 구성
- e-청소년 홈페이지(www.youth.go.kr)에서 청소년자원봉사 두볼(Dovol) 접속('17.8.27.)



- 연계 개요
 - '14. 7.27(수)부터 "두볼-나눔포털-나이스" 봉사활동 실적 연계 서비스 실시
 - 두볼에서 '14. 3. 1(토)부터 참여한 봉사활동만 나이스로 전송 가능
- 안내 및 요청사항
 - 두볼을 이용하는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 없음.**

꿈과 열정이 살아 숨 쉬는 인월인



- 담임 교사는 나이스에 직접 등록한 봉사활동 실적과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실적이 중복 기재되지 않도록 철저한 확인을 요망
- 두볼 혹은 나눔포털에서 참여한 봉사활동 내역을 학생이 나이스에 전송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

마. 운영계획

1) 단체 봉사활동 운영 계획

순	봉사 일자	봉사 시간	활동영역	세부유형	세부내용	봉사단체 (학년,학급)	주관 (담당자)
1	5.15	2	자연환경 보호활동	환경보호, 시설 정비 활동	환경정화활동, 재활용품 분리 배출	고1, 고2, 고3	인월 중고등학교
2	6.5	2	자연환경 보호활동	환경보호, 시설 정비 활동	환경정화활동, 재활용품 분리 배출	중1, 중2 고1, 고2	인월 중고등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새봄 맞이 인월 시장통 정비 둘레길 환경 정화	인월 시장통 환경 정화 둘레길 환경 보호	고3 중3	
3	6.19	1	자연환경 보호활동	환경보호, 시설 정비 활동	환경정화활동, 재활용품 분리 배출	고1,고2, 고3	인월 중고등학교
4	7.10	2	자연환경 보호활동	환경보호, 시설 정비 활동	환경정화활동, 재활용품 분리 배출	중2,중3 고1,고3	인월 중고등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둘레길 초입 환경 보호 인월 시장통 정화 활동 둘레길 재정비	지리산 둘레길 환경 정화 인월 시장통 정화활동 둘레길 환경 보호	고2 중2	
5	7.31	2	자연환경 보호활동	환경보호, 시설 정비 활동	환경정화활동, 재활용품 분리 배출	중2, 중3 고2, 고3	인월 중고등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인월 동산 환경 정화	인월 동산 환경 정화 폐비닐 빈병 수거	고1,중1	
계		중:9 고:9					

2) 개인봉사활동 운영계획

가) 목적: 자율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민주 시민의 자질을 기른다.

환경 개선과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한다.

나) 운영 방침: 정기적인 봉사활동으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

‘깨끗한 인월’을 위하여 점심 시간, 청소 시간, 저녁 시간에 활동을 전개한다.

다) 구성 운영 계획

명칭	활동 인원	활동 기간	학기당 시간	주요 활동	담당교사
그린 스카우트	고5명	2020.3.2. ~ 2021.2.28.	8시간	재활용품 분류 배출 및 환경 정화	장익성
도서 도우미	중5명, 고5명	2020.3.2. ~ 2021.2.28.	6시간	도서관 도서 대출 및 서가 정리	김하은
토론 학습실 도우미	중3명, 고3명	2020.3.2. ~ 2021.2.28.	6시간	점심시간 토론 학습실 기자재 관리 및 토론 토의 체험 프로그램 운영	이상웅
방송도우미	중2명, 고2명	2020.3.2. ~ 2021.2.28.	6시간	방송 시설 관리 및 설치	임정일

꿈과 열정이 살아 숨 쉬는 인월인

V

부 록

1. 업무분장 / 97
2. 부장, 담임, 부담임 및 특별실관리 / 99
3. 부서별 · 교과별 연간 시상 계획 / 100
4. 청소구역 배정표 / 102
5. 정보공시 운영 / 104
6. 행정실 업무분장 / 106
7. 학교규칙 / 107
8. 학교생활규정, 학생자치규정, 학생인권조례 / 127
9. 학업성적관리규정 / 156
10.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 190
11. 위임전결규정 / 199
12. 학교회계 세입 · 세출 예산서 / 210
13.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 / 214

1

업무분장

부서	순	업무명	담당	주요 업무 내용	분류	비고
	1	교감	신희철	교무 학사관리, 행동강령 책임관업무, 각종 공문서 분류 및 확인		
교무 기획부	2	교무기획부장	김종구	교무기획, 학사운영, 교원표창, 교원인사, 월중 행사 계획, 행사기획, 각종위원회 관리(인사, 교권 등), 학교홍보기획, 교원단체, 교육기부, (중)영어업무	통합	중2 담임
	3	자유학기제	박진혁	자유학기제 계획 및 운영, 자율선택과제 운영	통합	중1 담임
	4	수업	천혜련	수업(시간표, 이수집계, 결보강), 출석부 및 결석계 관리, 순회교사 관리, 교수학습연간계획 관리, 음악업무	통합	중1 부담임
	5	정보전산	조경준	교육정보총괄, 나이스 권한관리, 인증서 관리, 전산장비관리, 개인정보보호, 쿨메신저	통합	정보 순회
	6	정보방송	임정일	홈페이지 관리, 내PC지키미, 장학금, 행사사진, 방송(강당) 관리, 학적(입학, 진급, 졸업), 생활기록부(고), 고(과학업무)	통합	고1 담임
	7	교무지원	정경연	문서수발(접수, 분류, 발송)전반, 교무일지, 연수공문, 수상관련업무(상장출력), 공람 및 쪽지 전달, 월주간업무수합, 홈페이지 월별 학사일정 입력, 교내행사지원, sms문자발송		
	연구 기획부	8	연구기획부장	이승미	연구기획, 교육계획서, 역점(특색)사업, 교원역량강화(컨설팅, 교원연수, 교사동아리, 교직원 배움성장날 운영), 교육실습생, 워크숍 총괄, 학교평가, 초중어울림, 관리실 환경구성	통합
9		평가(중)	김경미	(중)정기고사 운영(고사시간표관리, 성적처리) 평가규정관리, 성적우수자 시상, 졸업앨범	중	중3 담임
10		평가(고)	이현정	(고)정기고사 운영(고사시간표관리, 성적처리) 평가규정관리, 성적우수자 시상, 수상계(중, 고), 모의고사 운영 및 결과 분석, 교과서(보조), 홍보(고), 국어 문예	고	고3 부담임
11		일반고역량	이상웅	일반고 역량 강화, 토론학습실 운영 (2학기 혁신 업무 추가 가능),중(과학업무)	고	고2 부담임

꿈과 열정이 살아 숨 쉬는 인월인

부서	순	업무명	담당	주요 업무 내용	분류	비고
교육과정운영부	12	교육과정 운영부장	유순	중고 교육과정편성 운영(나이스포함), 교과서, 교원능력개발평가	통합	특수학급담임
	13	특수교육		특수학급운영, 통합교육지원, 식사지도, 학생이동, 신변자립지원, 수업준비, 치료수업지원	통합	
	14	방과후(중)	이선숙	방과후 업무 총괄 (교과보충, 특기적성, 기초), 진로상담(중)	중	비담임
	15	방과후(고)	김현영	방과후 업무 총괄 (교과보충, 특기적성, 기초), 학력증진, 진로상담(고), 고(영어업무)	고	고2담임
	16	창체(중)	정은숙	창의적 체험활동 연간 계획 수립 및 운영 (자율, 진로, 동아리) 생활기록부(중), 축제 지원(중)	중	중2부담임
	17	창체(고)	김하은	창의적 체험활동 연간 계획 수립 및 운영 (자율, 진로, 동아리), 축제 지원(고), 도서관	고	비담임
인성인권부	18	인성인권 안전부장	천개일	인성인권안전기획, 현장체험학습, 수련활동, 교내외생활지도, 학교폭력관련업무, 학생선도위원회, 체육업무	통합	
	19	인성인권 안전계	최유라	학급사진첩, 포상 및 표창(봉사, 선행, 효행 등), 안전교육, 안전공제회, 교내외 생활지도, 학생회(학생자치), 학교축제기획, 학부모회 운영(따뜻한 등교맞이), 시사계기	통합	고1부담임
	20	보건	안수빈	보건업무전반, 응급처치, 영양호학생관리, 학생복지(위원회포함), 약물오남용예방교육, 학생건강검진, 성교육(폭력), 양성평등교육, 흡연예방교육, 다문화교육, 교복	통합	보건교사 특수학급부담임
	21	교내생활환경	장익성	교실 청소구역 배당 지도, 봉사활동 기획 및 관리, 그린스카우트 운영, 야간 자율학습 계획 및 운영, 방법대 관리, 자율학습실 관리	통합	고3담임

2 부장, 담임, 부담임 및 특별실 관리

가. 부장

순	부서	성명	비고
1	교무기획부	김종구	
2	연구기획부	이승미	
3	교육과정운영부	유순	
4	인성인권부	천개일	

나. 담임 및 부담임

구분	학년	담임	부담임	비고
중학교	1-1	박진혁	천혜련	
	2-1	김종구	정은숙	
	3-1	김경미	이승미	
고등학교	1-1	임정일	최유라	
	2-1	김현영	이상웅	
	3-1	장익성	이현정	
개별반	통합	유 순	안수빈	

다. 특별실

1 층

도서실	보건실	북카페	진로상담실	동아리실
김하은	안수빈	이현정	이선숙	정은숙
정보화실	수학과실	영어과실	물리과실	
임정일	김경미	김현영	이상웅	

2 층

과학실험실	학생회실	서버실	인성인권실	여학생탈의실	자율학습실	토론학습실
임정일	최유라	조경준	천개일	김현영	장익성	이상웅

야 외

다목적실, 강당 체력단련실	미술실	전통음악실	음악실	기술실	가사실	목공실
천개일	천혜련	천혜련	천혜련	이승미	이승미	박진혁

3

부서별 · 교과별 연간 시상 계획

연 번	수상명	시행(월)	참가대상	수상비율	담당부서	공개방식
1	인월 독서왕	연중	중학교 전교생	20% 이내	국어과	학교홈페이지
2	백일장	1학기	중·고등학 교전교생	20% 이내	국어과	학교홈페이지
3	한글 디자인·백일장	10월	중·고등학 교전교생	20% 이내	국어과	학교홈페이지
4	독서 감상문	2학기	고등학교 전교생	20% 이내	국어과	학교홈페이지
5	수학 주제 탐구 발표대회	연중	중학교 전교생	20% 이내	수학과	학급 게시
6	수학사고력 경진대회	연중	고등학교 전교생	20% 이내	수학과	학급 게시
7	영어왕 선발	7월, 12월	중학교 전교생	20% 이내	영어과	학교홈페이지
8	영어 5행시 대회	연중	고등학교 전교생	20% 이내	영어과	학급 게시
9	타이포서너리 대회	연중	고등학교 전교생	20% 이내	영어과	학급 게시
10	영어 Keyword 작문 대회	연중	고등학교 전교생	20% 이내	영어과	학급 게시
11	과학의 날	4월	중학교 전교생	20% 이내	과학과	학교홈페이지
12	역사 포스터 그리기	9월	고등학교 1학년	20% 이내	사회/역사 과	학교홈페이지
13	음악상식 골든벨	연중	중·고등학 교 전교생	20% 이내	음악과	학교홈페이지

연 번	수상명	시행(월)	참가대상	수상비율	담당부서	공개방식
14	건강체력 왕복 달리기	5월, 10월	중·고등학 교 전교생	20% 이내	체육과	학교홈페이지
15	요리대회	연중	중학교 전교생, 고등학교 1학년	20% 이내	기술가정과	학급 게시
16	나의 책 소개하기	2학기	중·고등학 교 전교생	20% 이내	도서관	도서관 게시
17	다독자상	학기별	중·고등학 교 전교생	20% 이내	도서관	학급 게시
18	모범상, 선행상, 효행상, 봉사상	학기별	중·고등학 교 전교생	20% 이내	인성인권부	학교홈페이지
19	금연, 금주, 성폭력 예방 글짓기, 표어, 포스터 대회	2학기	중·고등학 교 전교생	20% 이내	인성인권부	학교홈페이지
20	학급 실장·부실장, 학생회 임원 등 유공자	연중	중·고등학 교 전교생	20% 이내	인성인권부	학교홈페이지
21	자율동아리 발표회 우수상(비교과)	연중	중·고등학 교 전교생	20% 이내	자율활동부	학급 게시
22	자율동아리 발표회 우수상(교과)	연중	고등학교 전교생	20% 이내	창의적체험 활동부	학급 게시
23	교과우수상	학기별	중·고등학 교 전교생	과목별 4%	평가부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학급 게시

4 청소구역 배정표

가. 학급별 청소구역 배정

학년	배 정 구 역	비고
중1	교실(5명), 2층서편남화장실(1명), 2층서편여화장실(1명), 서편계단 및 신발장(2명), 기술가정실(3명), 토론학습실(2명), 행정실(2명), 1층동편남화장실(1명), 1층동편여화장실(1명)	18명
중2	교실(5명), 1층서편남화장실(1명), 1층서편여화장실(1명), 영어교과실(2명), 수학교과실(2명), 보건실(2명), 중앙현관(1명)	14명
중3	교실(5명), 인성부실(1명), 음악실(2명), 미술실(2명), 체력단련실(2명), 교문~학교주변(2명), 교장실(1명)	15명
고1	교실(5명), 그린스카우트(2명), 1층교무실(4명), 도서실(2명), 개별반(1명)	14명
고2	교실(5명), 그리스카우트(2명), 2층교무실(3명), 2층동편남화장실(1명), 2층동편여화장실(1명), 특수학급(2명), 달빛관(3명)	17명
고3	교실(5명), 그린스카우트(1명), 북카페(1명), 상담실(1명), 정보화실(1명), 동편계단 및 신발장(1명), 야자실(2명), 물리실(2명), 학생회실(1명), 화학실(2명), 탈의실(1명)	18명
계		총96명

나. 청소구역 지도교사

순	성명	배 정 장 소	비고
1	천개일	달빛관 출입구와 쓰레기통, 다목적실 고2(3명)	
2	유 순	특수반 고2(2명)	
3	김종구	학급(중2), 영어전용교실 중2(2명)	
4	이승미	기술가사실 중1(2명)	
5	김현영	학급(고2), 2층 교무실 고2(3명)	
6	이상웅	천체물리실 고3(2명), 토론학습실 중1(2명), 1층 동편남자화장실 고2(1명)	
7	안수빈	보건실 중2(2명), 북카페 고3(1명)	
8	장익성	학급(고3), 그린스카우트 관리, 쓰레기장 분리 배출 지도	
9	임정일	학급(고1), 생화학실 고3(2명)	
10	천혜련	음악실 중3(2명), 1층서편여자화장실 중2(1명)	
11	박진혁	학급(중1), 2층서편남자화장실 중1(1명), 서편계단 및 신발장 중1(2명)	
12	이선숙	동편계단 및 신발장 고3(1명), 상담실 고3(1명)	
13	김경미	학급(중3), 수학교과실 중2(2명)	
14	김하은	도서실 고1(2명), 1층 동편 여자화장실 중1(1명)	
15	정은숙	미술실 중3(2명), 체력단련실 중3(2명)	
16	최유라	2층 학생회실 고3(1명), 인성부실 중3(1명), 탈의실 고3(1명)	
17	조경준	2층 동편 남자 화장실 중1(1명), 정보화실 고3(1명), 교무실	
18	이현정	2층 동편여자화장실 고2(1명), 학급(고3)	
19	정경연	교무실 및 탕비실 고1(4명)	
20	교감	교무실	
21	교장	교장실	
행정실	장혜숙	행정실 중1(2명)	
	박민호	중앙현관 중2(1명)	
	권형택	행정실 중1(2명)	
	유현정	교장실 중3(1명)	
	박노인	분리수거장 협조	

5 정보공시 운영

공시정보 항목	공시정보 범위	작성자	확인자	공시횟수	공시 시기
1.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김종구	교감	수시	수시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교과·체험활동계획 포함)	유순	교감	연 1회	4월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현황	천혜련	교감	연 1회	5월
	수업공개 계획	이승미	교감	연 2회	4월, 9월
	교육운영 특색사업 계획	이승미	교감	연 1회	4월
	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한 사항	박진혁	교감	연 2회	4월, 9월
3. 학년·학급당 학생 수 및 전·출입, 학업중단 등 학생변동 상황	학년·학급당 학생 수	임정일	교감	연 1회	5월
	전·출입 및 학업중단 학생 수	임정일	교감	연 1회	5월
4. 학교의 학년별·교과별 학습에 관한 사항	교과별(학년별)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김경미 이현정	교감	연 2회	4월, 9월
	교과별 학업성취 사항	김경미 이현정	교감	연 2회	4월, 9월
	교과별(학년별) 교과진도 운영계획	천혜련	교감	연 2회	4월, 9월
5. 교지(校地) 교사(校舎) 등 학교시설에 관한 사항	학교용지·교사(校舎) 현황	권형택	행정실장	연 1회	5월
	각종 지원시설 현황	권형택	행정실장	연 1회	5월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	김점곤	행정실장	연 1회	5월
6. 직위·자격별 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직위별 교원 현황	김종구	교감	연 1회	5월
	자격별 교원 현황	김종구	교감	연 1회	5월
	표시과목별 교원 현황	김종구	교감	연 1회	5월
7. 예산·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학교회계 예·결산서(국공립)	박민호	행정실장	연 1회	(예) 5월 (결) 9월
	학교발전기금	유현정	행정실장	연 1회	5월
8.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행정실장	행정실장	수시	수시

공시정보 항목	공시정보 범위	작성자	확인자	공시횟수	공시시기
9.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급식 실시 현황	유현정	교감	연 1회	5월
10. 학교의 보건관리·환경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보건관리 현황	안수빈	교감	연 1회	4월
	환경위생관리 현황	권형택	행정실장	연 1회	4월
	시설 안전점검 현황	권형택	행정실장	연 1회	4월
	안전교육 계획 및 실시현황	최유라	교감	연 1회	4월
11. 학교폭력의 발생 현황 및 처리에 관한 사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관련 계획 및 운영 현황	천개일	교감	연 1회	4월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천개일	교감	연 1회	9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현황 및 심의 결과	천개일	교감	연 1회	4월
12. 학생의 입학 관련 사항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입학전형 요강	김종구	교감	수시	수시
13. 학생의 입학 상황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입학생 현황	임정일	교감	연 1회	5월
	졸업생의 진로 현황	임정일	교감	연 1회	5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 등 진로 현황	김종구	교감	연 1회	5월
14. 「초·중등교육법」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	김종구	교감	수시	수시
15. 그 밖에 교육 여건 및 학교 운영 상태 등에 관한 사항	장학금 수혜 현황	임정일	교감	연 1회	4월
	동아리활동 현황	정은숙 김하은	교감	연 1회	5월
	학교도서관 현황	김하은	교감	연 1회	5월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및 운영·지원 현황	이선숙 김현영	교감	연 1회	5월
	학생·학부모 상담계획 및 실시 현황	이선숙 김현영	교감	연 1회	4월
	사무직원 현황	권형택	행정실장	연 1회	5월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 운영 현황	김종구	교감	연 1회	9월
	교원능력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유순	교감	연 1회	4월
	학생의 체력 증진에 관한 사항	천개일	교감	연 1회	5월
	학교평가지표 및 평가종합의견	이승미	교감	연 1회	4월
	교복 구매 유형 및 단가	안수빈	교감	연 2회	9월

6 행정실 업무분장

소속	직위 (직급)	성 명	단위업무	세 부 업 무	비고
행정실	실장	장혜숙	업무총괄	1. 행정실 업무 총괄 2. 학교운영위원회	
	지방 행정 주사보	박민호	○ 인사	1. 지방공무원 인사 2. 관인·관수	
			○ 학교회계	1. 학교회계 예산 및 결산 관리(중,고) 2. 학교회계 예산 집행(중, 고) 3. 계약업무(용역, 시설, 물품 등)	
			○ 기타	1. 복무, 상훈, 교육훈련, 감사, 보안업무, 반부패	
	지방행정 서기보	유현정	○ 일반서무	1. 민원 및 우편물 관리 2. 기록물관리 3. 급식업무(우유급식 포함)	
			○ 학교회계	1. 학교회계 세입 2. 학교발전기금 관리 3. 학교회계 예산 집행(중, 고) -여비, 공공요금, 제세, 시설용역비, 학교환경위생관리, 교장실 업무추진비, 행정실 운영비 4. 교육급여, 교육비 사업	
			○ 발전기금	1. 학교 발전기금 관리	
			○ 교육공무직업무	1. 교육공무직 및 비정규직 인사, 복무, 급여 (방과후강사, 청소원, 행정대체)	
	지방 사무 주사보	권형택	○ 재산	1. 학교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 급여	1. 교직원 급여, 복지후생 2. 기간제교원 급여, 퇴직금 3. 나이스 시간외 근무관리 4. 맞춤형복지	
			○ 재난관리	1. 방재·재난대비 관리 2. 소방·민방위 관리 3. 행정재산 사용허가 4. 환경위생 관리(정수기, 공기질, 수질, 소독) 5. 에너지 절약업무	
			○ 학교회계	1.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 통계	1. 각종 통계에 관한 사항 2. 교육통계	
			○ 정보공시	1. 정보공시 2. 정보공개	
			○ 물품	1. 학교회계 소관 물품관리	
			○ 시설	1. 시설, CCTV관리, 관사관리	
			행정대체	박노인	○ 시설물 관리

7

학교규칙

인월중학교 학교규칙(전문)

- 개정 1996. 02. 25 학무
- 개정 2000. 04. 20 관리
- 개정 2003. 01. 18 관리
- 개정 2004. 06. 05 학무 제6530호
- 개정 2004. 10. 19
- 개정 2005. 03. 16
- 개정 2005. 06. 29
- 개정 2006. 03. 09 관리과-1902호
- 개정 2006. 04. 21 인월중
- 개정 2018. 12. 15 인월중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교는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초등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0. 04. 20)

제2조(명칭) 본교는 인월중학교라 칭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전북 남원시 인월면 인월장터로 48에 둔다.

(개정'96.02.25, '00.04.20, '18.11.15)

제2장 수업연한 . 학년 . 학기 및 휴업일

제4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의 승인을 받은 자는 수업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개정'96. 02. 25)

제5조(학년.학기)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2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한 날까지, 제 2학기는 제 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개정'05.03.16)

제6조(휴업일 등) ① 본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여름휴가
3. 겨울휴가
4. 학년말휴가
5. 개교기념일 5월 3일 (개정'03.01.18)

- ② 학교장은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휴가기간은 법정수업일수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 이를 실시한다.
- ③ 학교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 ④ 학교장은 휴업일이라도 교육과정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실습 또는 등교를 시킬 수 있다.

제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7조(학급편제) 본교의 학급편제는 당해연도 교육청에서 배정받은 학급정원에 의한다.

(개정`96.02.25, `00.04.20, `03.01.18)

제8조(학생정원) 본교의 학생정원은 전라북도남원교육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정한다.(개정`96.02.25, `00.04.20, 신설 `18.12.15)

- 1. 유예 및 유급생
-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 3. 재입학, 전학 또는 편입학 하는 자

제8조의2(유예) 본교에 재학 중인 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유예할 수 있다.(신설 `18.12.15)

-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유예하려는 자는 사유서와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학교장에게 유예원을 출원하여야 한다.
- ②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시 이를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출석일수가 법정일수에 미달될 때에는 유예 조치한다.

제8조의3(유예자 제적) 졸업 적령 연도가 넘는 자로서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제적한다.(유예기간 제외)(신설 `18.12.15)

제4장 교과 및 교육과정.수업일수.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및 졸업

제9조(교과 및 교육과정 등) 본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 등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한다.(개정`00.04.20)

제10조(수업일수) 본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주5일 수업의 실시,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전라북도남원교육청교육장의 승인을 얻어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개정`05.03.16, `06.03.09, `18.12.15)

제11조(교외체험학습) (개정 `06.04.21)

- ①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정기고사 실시기간은 제외한다.)
- ② 현장체험학습은 국외교류체험학습, 개별위탁체험학습, 집단교류체험학습, 부모님과 함께 하는 효도방문체험학습 등으로 한다.

- ③ 학습기간은 국외교류체험학습은 2주, 개별위탁체험학습은 2주, 집단교류체험학습은 2주, 부모님과 함께하는 효도방문체험학습은 2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고 집단교류 체험학습은 실시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8.12.15)
- ⑤ 현장체험학습의 운영은 보호자가 3일(토·일 및 공휴일 제외)전까지 체험학습 계획을 수립한 후 효도.방문 체험학습 신청서(서식 8)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학교장 심사 후 허가.통보를 받아 체험학습을 실시하고 체험학습 보고서(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출입국 증명 등 관련 서류 학교 비치)를 제출한다.(개정 '18.12.15)
- ⑥ 이 외 현장체험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12조(고사) 본교의 학생에 대한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고사를 실시한다.
(개정`11.05.01,`11.06.02)

- ① 1학기 1차고사. 2차고사
- ② 2학기 1차고사. 2차고사
- ③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시고사

제13조(수료 및 졸업) ① 각 학년의 과정의 수료 또는 전학년의 졸업을 인정함에는 출석일수와 평상시의 성적을 고사하여 정한다.

- ② 각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학교의무교육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개정 `00.04.20)
- ③ 법 제27조와 영 제53조에 의한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96.02.25, `00.04.20)
- ④ 학교장은 본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5장 입학 . 재입학 . 편입학 . 전학 . 휴학 . 취학의무면제 등

제14조(입학시기) ① 본교의 입학 시기는 학교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개정 '18.12.15)

- ② 본교의 재취학 또는 편입학의 시기는 본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단, 3학년의 경우 고등학교 입학전형일에 따라 전.편입학 시기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18.12.15)

제15조(입학결정) 본교의 입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8조 내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남원교육청교육장의 배정으로 입학이 결정된다.(개정 `00.04.20, 개정 '18.12.15)

제16조(전·재·편입학) ① 유예한 자가 재입학할 수 있는 학년은 유예당시 학년의 이하 학년에 한한다.(신설 `00.04.20, 개정 '18.12.15)

- ②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신설 `00.04.20)

제16조의2(귀국학생 등의 전.편입학)

- ①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체류하면서 정규학교에 재학한 후 귀국한 학생(학생 본인 및 보

호자를 포함한 전 가족이 본교를 학구로 하는 거주지 내에 거주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이나 외국인학생, 탈북자(자녀포함)가 본교에 전.편입학하고자 하는 경우 학년별 정원외 2%이내에서 허가한다.(신설 `04.06.05)

② **외국에서 수학한 학생 중, 특례입학대상자 자격 기준에 미달된 자**(부모를 동반하지 않은 미인정 유학 후 귀국한 학생, 비정규학교에 취학한 후 귀국한 학생 등), **즉 일반귀국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결정하고 특례입학자 및 일반 전.편.재입학을 포함하여 학년별 정원외 3%이내에서 학교장이 전.편입학을 허가한다.**(신설 `04 06.05, 개정 `18.12.15)

제16조의3 (일반 귀국자의 부분적 성적산출)

①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 이탈주민의 자녀 등은 국내 학교에 전.편입학한 후 취득한 성적만으로 성취도와 석차를 산출한다. 다만 일반귀국자가 부분적으로 성적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중등장학자료 제2004-30호 2004, 02.06에 의거하여 <별표 1>, <별표 2>와 같이 대체한다. (신설 `04.10.19)

제17조(전학) 본교에서 타교로 전학할 경우에는 영 제73조의 규정에 의한다.(개정`00. 04. 20)

제18조(휴학) (삭제 `18.12.15)

제19조(취학의무의 면제 등) 본교의 입학생 또는 재학생 중 취학의무의 면제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한다.(신설 `00.04.20)

제19조의2(의무교육면제.유예.정원외관리 중인 자의 취학)

① 의무교육을 면제.유예.정원외관리 중인 자(본인과 보호자를 포함하여 전 가족이 본교를 학구로 하는 거주지에 거주하는 자에 한함)로서 본교에 취학(재취학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29조 제2항에서 정한 절차에 의한다.(신설`04. 06. 0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교에 취학을 희망하는 경우 학교장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한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한 취학 희망학년의 수학기능성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취학할 학년을 결정하고 취학을 허가한다.(신설`04. 06. 05)

③ 교과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는 취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국내외 정규학교의 총 재학 기간을 합산하여 산출한 학년과 본인 및 보호자가 희망하는 취학 학년을 고려하여 평가교과목, 평가내용, 평가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하며, 이때 학교성적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신설 `04.06.05)

1. **희망하는 취학 학년의 평가 교과목은 학업수행 기본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내용을 평가하며, 평가 교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 과목으로 한다.**(신설 `18.12.15)

2. **해당학년 인정은 모든 평가 교과목에서 60점 이상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18.12.15)

3.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3일 이내에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신설 `18.12.15)

④ 취학을 희망하는 학생 본인 및 보호자는 취학희망학년을 선택하여 취학희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국내외 정규학교의 총 재학기간과 다르게 취학 학년을 희망하는 경우 학교

장은 상급학교 진학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설명하고 학생 본인 및 보호자는 학교측의 설명을 받았음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학교장에서 제출한다.(신설 `04.06.05)

⑤ 국내외 총재학기간 합산 결과에 따라 해당학년 또는 그 이하 학년으로 취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생 본인 및 보호자가 제출한 서류의 심사로 취학가능성에 대한 평가절차를 대신할 수 있다.(신설 `04.06.05)

⑥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의 설치)법 제13조에 따라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1. 역할

가. 취학 및 입학 유예 등 신청 심의

나. 미취학, 미입학 및 무단결석 학생에 대한 보호자 면담

2. 구성

가. 본위원회는 총 9인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1년(3월1일~다음 해 2월말)으로 한다.

나. 구성원은 학교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내부위원 5명,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다. 내부위원은 교감, 교무, 1학년부장, 학교폭력담당자, 학적담당자(간사)로 한다.

라. 외부위원은 학교전담경찰관 1인, 학부모위원 2인으로 한다.

3. 심의

위원회는 재적위원 1/2 이상 참석으로 개의하여, 참석위원 간 합의로 심의 결과를 결정한다.

4.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신설 2018.12.15.)

제6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20조 (목적)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고 한다)은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제도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5.06.29)

제21조 (방침) ① 중학교에서 지적·학문적 분야에서 재능이 뛰어난 특수 재능아를 발굴, 그들이 잠재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한다.(개정 `05.06.29)

②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학교실정을 고려하여 시행한다.(개정 `05.06.29)

③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택 또는 개발하여 운영한다.(개정 `05.06.29)

④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 판별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개정 `05.06.29)

⑤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의 타당성,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한다.(개정 `05.06.29)

⑥ 특수재능과 인성을 모두 고려하여 전인적 발달에 힘쓴다.(개정 `05.06.29)

⑦ 특수재능교육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효과적으로 업무를 추진한다.(개정 `05.06.29)

⑧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정확한 내용을 홍보하여 참여를 유도한다.(개정 '05.06.29)

제22조 (조기진급.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① 조기진급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한 각 급 학교의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조기진급하고자 하는 경우, 1학년에서 3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다.(개정 '05.06.29)

②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조기졸업은 중학교 2학년에서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졸업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개정 '05.06.29)

③ 중학교 2학년에서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는 조기 졸업할 수 있으며, 차상급 학교로 조기 입학 할 수 있다.(개정 '05.06.29)

제23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중학교의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자는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개정 '05.06.29)

제24조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의 선정) ①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 선정은 매 학년 초 30일 이내에 선정한다. 단,신입생의 경우에는 입학 후 3개월 이내에 선정한다.(개정 '05.06.29)

②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학생본인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05. 06. 29)

③ 선정 절차(개정 '05.06.29)

1. 학생과 학부모의 신청에 의한(또는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후)학급담임 교사의 추천
2. 개인지능검사 등 각종 검사 실시
3. 학교장이 정하는 교과목의 학업성취도 평가(정기고사 성적 활용 가능)
4. 교직원 회의 사정
5. 학교장 선정

④ 선정 기준(개정 '05.06.29)

1. 심신발달 및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하며,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국어,수학,과학)에서 우수한 재능을 발휘하는 자
2. 국어,수학,과학,영어교과의 학업 성취도가 '수'이거나 수학,과학,외국어,예.체능 각 분야에서 특별히 우수한 재능을 보이고 전 교과목의 학업 성취도가 '우'이상인 자로서
가. 교육부 또는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시행한 경시.경연대회 입상자
나. 공인된 전국 규모의 경시.경연대회 입상자 등
3. 상급학교 입학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학교장이 조기졸업자로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

⑤ 선정 방법(개정 '05.06.29)

1.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는 선정 기준을 만족하는 자 중에서 학교장이 정하는 교과목의 학업성취도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2. 학교장은 교과목의 학업성취도를 고려할 경우 모든 교과목 또는 필요한 일부 교과목의 학업성취도를 고려할 수 있다. 단,일부 교과목의 학업성취도를 고려할 경우에는 국어,수학,과학,영어 교과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3. 학교장은 학업 성취도와 공인된 검사기관에서 실시한 개인 지능검사, 적성검사, 창의성 검사, 흥미검사, 학습습관검사 등의 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

제25조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의 학습방법)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의 차상급 학년 교육과정 이수 방법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선택하여 실시한다.(개정 '05.06.29)

- ① 교과목별 능력별 이동 수업으로 실시
- ② 학교에서 자체 제작하여 제공하는 심화학습 프로그램을 자학학습
- ③ 차 상급 학년의 교과 내용을 자기 주도적 학습으로 실시

제26조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 평가 위원회) (개정 '18.12.15)

- ① 위원회의 구성(개정 '05.06.29)
 1. 교감을 위원장으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교무부장, 해당과목 교사 2인,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과 교과부장 등 9명으로 구성한다.
 2. 당해 학교 과목담당 교사가 1인인 경우에 학교장은 다른 학교의 해당 과목 교사를 1인 이상 위촉하여 2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의 임무(개정 '05.06.29)

위원회는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및 성적 산출
 2.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방법 결정
 3.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도구의 제작 또는 선정
 4.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기준 결정
 5. 기타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평가와 관련된 업무
 6.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사항(신설 '18.12.15.)
 7. 기타 조기 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하여 학교장이 심의를 의뢰한 사항(신설 '18.12.15.)
- ③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방법(개정 '05.06.29)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는 지필평가, 실험, 실기평가, 면접평가 등 다양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④ 조기이수 인정을 받아야 할 교과목(개정 '05. 06. 29)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는 차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 교과에 대한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야 한다.
- ⑤ 교과별 이수인정 평가시기(개정 '05.06.29)
 1. 학교장은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에 대한 개별 교과목에 관한 이수 인정평가를 수시로 행해야 한다.
 2. 조기졸업 대상자의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는 상급학교 조기진학에 지장이 없는 시기에 실시한다.

제27조(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재심) ① 학교의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05.06.29)

② 학교의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학생과 학부모가 연서한 서류로 재심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05.06.29)

05.06.29)

③ 재심 신청을 접수하면 학교장은 조속히 해당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실시하고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개정 '05.06.29)

④ 재심 신청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재심 결정에 따라야 한다.(개정 '05.06.29)

제28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 ① 학교장은 차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 교과목에 대한 조기이수 인정을 받은 자 중에서 심신발달과 건강상태,사회적응력 등을 고려하여 조기진급자나 조기졸업자를 선정한다.(개정 '05.06.29)

② 학교장은 교직원 회의의 사정을 거쳐서 조기진급 및 조기 졸업대상자를 선정한다.(개정 '05. 06. 29)

③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 1인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1인으로 한다.(개정 '05.06.29)

제29조(조기진급자의 환원 조치) ① 조기 진급 후에 부적응 현상이 심각한 경우에 학교장은,학생본인과 보호자의 원에 의하거나 동의를 받아 학년초 60일 이내에 환원조치하고, 환원조치 후 7일 이내에 보고한다.(개정 '05.06.29)

② 학교장은 환원조치 이전에 학급담임 및 교과교사,학생본인,보호자와 상담하고 부장교사회의 자문을 받는다.(개정 '05.06.29)

제30조(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의 성적처리)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의 생활기록부 정리,성적처리 등 사무는 대상자의 현 소속 학급담임이 관리한다.(개정 '05.06.29)

제31조(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의 학력 인정) ① 조기이수에 의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 졸업한 자는 해당 학년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다.(개정 '05.06.29)

②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학생은 학적사항,교과학습발달 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종합의견 등의 해당란(1학년→3학년 진급이면 2학년란에,2학년→졸업이면 3학년란)에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입력한다.

제7장 학생포상 및 학생징계

제32조(포상등) ① 학생포상 및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이하 '학교생활규정'이라 한다)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11.06.02)

② 전항의 포상을 시행하기 위하여 학교장이 따로 포상규정을 정한다.(신설 '00.04.20)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시행한다. (신설 '18.12.15.)

③ 항 제1항 제1호에서 8호의 운영방법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학생 선도 규정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신설 '18.12.15.)

④ 학교장은 제1항의 징계처분을 한때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내지 제7항의 사항을 준수한다. (신설 '18.12.15.)

제33조(학생징계)(삭제 '11.06.02)

제8장 수업료 · 입학금

제34조(수업료.입학금) (삭제 18.12.15.)

제35조(수업료 등의 면제.감액) (삭제 18.12.15.)

제9장 기 타

제36조(학생자치활동) ① 본교는 학생자치활동으로 학생회를 둔다.(신설'00. 04. 20)

② 학생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둔다.(신설'00.04.20)

③ 학생회의 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학생회규정으로 따로 이를 정한다.(신설'00. 04. 20)

제37조(학교규칙개정절차) ① 학칙은 교직원 회의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고 시행한다.(개정'11. 06.02, 개정 '18.12.15.)

② 다만, 학교생활규정 및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학칙개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11. 06.02)

③ 제2항의 학생 의견수렴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신설 '11.06.02)

제38조(중학교 의무교육) 본교의 의무교육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제12조 내지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다. (신설 '18.12.15.)

부 칙

① (시행일) 본학칙은 서기 1971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학칙의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이를 정한다.

부 칙

(시행일) 본학칙은 1972년 03월 0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학칙은 1980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학칙은 1982년 01월 0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학칙은 1982년 04월 0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02. 25 학무 제81110-45호)

(시행일) 본학칙은 1996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04. 20 관리 제81412-319호)

꿈과 열정이 살아 숨 쉬는 인월인

- ① (시행일) 본 학교규칙은 2000년 04월 20일로부터 시행한다.
- ② (시행세칙) 본 학교규칙의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정한다.
 - 부 칙(2003. 01. 18 관리 제81412-144호)**
(시행일) 본학칙은 2003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04. 06. 05 학무 제6530호)**
(시행일) 본학칙은 2004년 06월 0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04. 10. 19)**
(시행일) 본학칙은 2004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05. 03. 16)**
(시행일) 본학칙은 2005년 0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05. 06. 29)**
(시행일) 본학칙은 2005년 0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06. 03. 09)**
(시행일) 본학칙은 2006년 03월 0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06. 04. 21)**
(시행일) 본학칙은 2006년 0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1. 04. 05. 행정 제4497호)**
(시행일) 본학칙은 2011년 06월 02일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외국의 정규학교에서 1~3개 학기를 적법하게 수학하였음이 인정된 일반귀국자

1학년 성적		2학년 성적	
산출 불가능 성적	대체 성적	산출 불가능 성적	대체 성적
1학년 1학기 성적	1학년 2학기 성적	2학년 1학기 성적	2학년 2학기 성적
1학년 2학기 성적	2학년 1학기 성적	2학년 2학기 성적	3학년 1학기 성적
1학년 1.2학기 성적	2학년 1학기 성적	2학년 1.2학기 성적	3학년 1학기 성적

산출 불가능 성적	대체 성적
1학년 1.2학기, 2학년 1학기 성적	2학년 2학기 성적
1학년 2학기, 2학년 1.2학기 성적	3학년 1학기 성적

<별표 2> 외국의 정규학교에서 적법하게 4개 학기 이상 수학하였음은 인정되었으나, 특
례입학 자격 기준에 미달된 일반귀국자

산출 불가능 성적	대체 성적
1학년 1.2학기, 2학년 1.2학기 성적	3학년 1학기 성적
1학년 1.2학기, 2학년 1.2학기, 3학년 1학기 성적	3학년 2학기 성적

부 칙 (2018. 12. 15.)
(시행일) 본학칙은 2018년 12월 14일로부터 시행한다.

인월고등학교 학교규칙(전문)

개정 1992. 08. 20. 행정
개정 1993. 08. 18. 행정
개정 1994. 09. 29. 행정
개정 1996. 03. 16. 행정
개정 1998. 11. 14. 행정
개정 2001. 08. 31. 행정
개정 2003. 03. 01. 행정
개정 2004. 06. 05. 행정
개정 2004. 10. 19.
개정 2005. 03. 16.
개정 2005. 06. 29
개정 2005. 09. 02. 행정
개정 2011. 06. 02. 인월고
개정 2018. 12. 15. 인월고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 및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0.3.1, '92.3.1, '98.11.18)

제2조(명칭) 본교는 인월고등학교라 칭한다. (개정 '80.3.1)

제3조(위치) 본교는 전라북도 남원시 인월면 **인월장터로 48** 에 둔다.
(개정 '80.3.1, '98.11.18, '18.12.15)

제2장 수업연한 및 입학자격

제4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승인을 받은 자는 2년으로 한다. (개정 '80.3.1, '96.3.1)

제5조(입학자격)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80.3.1, 개정 '03.3.1)

- ① 중학교를 졸업한 자
- ②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 (개정 '03.3.1)
- ④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신설 '98.11.18)
- ⑤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나 평생교육시설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

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신설 '98.11.18, 개정 '03.3.1, 11.6.2, '18.12.15)

⑥ 소년원법 제29조 제4항에 의하여 중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신설 '98.11.18)

제3장 학과, 학급수 및 학생정원

제6조 (학과) 본교에는 보통과를 둔다. (개정 '80.3.1, '83.3.1, '92.3.1, '03.3.1, '05.9.2)

제7조(학급수) 본교의 학급수는 전라북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80.3.1, '92.3.1, '02.3.1, '03.3.1, '05.9.2, '11.6.2)

제8조 (학생정원) ①(삭제 '2005.09.02)

②본교의 학생정원은 전라북도교육감이 배정한 인원으로 한다. 단,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수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05.09.02)

1. 유급생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3. 재입학, 전학 또는 편입학 하는 자
4. 국가 유공자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 유공자의 자녀
5. 기타 전라북도 교육감이 정하는 자

제9조 (교육과정) ①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 및 전라북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80.3.1, '03.3.1, '11.6.2, '18.12.15)

② **교과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전북교육감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신설 '18.12.15.)

제10조 (과외수업의 금지) ① 법령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지 아니한 과외수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아니한다.(개정 '99.10.23, 개정 '03.3.1)

② (삭제 '11.6.2)

③ 학교장은 과외수업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행한다.

④ 과외수업이라 함은 제9조의 교육과정에 의하여 본교에서 행하는 수업이외의 수업을 말한다.

제11조 (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주5일 수업의 실시,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전라북도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신설 '80.3.1, 개정 '81.12.26, '98.11.18, '05.03.16, '06.03.09).

제12조 (수업운영)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신설 '03.3.1)

② 현장체험학습은 개별위탁체험학습, 현장탐사체험학습, 부모님과 함께 하는 효도·방문체험학습 등으로 나누어 추진한다. (신설 '03.3.1, 개정 '04.10.19)

③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기간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체험학교의 형편에 따라 개별위탁체험학습은 1개월(4주) 이내의 기간으로, 효도·방문체험학습과 현장탐사체험학습은

1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단, 개별위탁 체험학습의 경우, 최장 연장은 1회, 2개월로 제한한다.(신설 '03.3.1, 개정 '04.10.19)

④ 현장체험학습의 활동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개별위탁체험학습은 이를 위탁받은 기관이 교육 목적을 고려하여 지도하되, 그 기관은 학교 및 교육청 산하 기관이나 수시1.2학기 입학이 확정된 경우 자신의 진로에 연관이 있는 학원 등, 교육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곳이어야 한다.
2. 효도.방문체험학습은 노부모 봉양활동 및 가족이나 친인척의 애 경사 또는 가족이 외국에 거주할 경우 방문 목적으로,
3. 현장탐사체험학습은 각종 유적지 및 교육 목적 상 방문이 필요한 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학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신설 '03.3.1, 개정 '04.10.19)

⑤ 운영방안은 다음과 같다.

1. 개별위탁 체험학습은 학생의 희망과 부모의 동의 하에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위탁받은 기관에서 교육목적에 도달할 수 있는 교육을 받도록 한다. 시기는 고3 수시 1학기 입학이 확정된 이후나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에 가능하다.
2. 효도.방문 체험학습은 부모와 함께 학교 밖 체험을 하고자 할 경우 학생.학부모의 신청에 의해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실시한다. 시기는 학기 내로 하고 **기간은 2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개정 '18.12.15)**
3. 현장탐사체험학습은 교육 상 유적지나 기타 교육상 방문이 필요한 장소에서 학년도별 현장탐사계획에 의거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한다. 단, 고3 학생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에 실시한다.(신설 '03.3.1, 개정 '04.10.19)

⑥ 이 외 현장체험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신설 '03.3.1)

제13조 (고사) ① 정기고사는 1차고사와 2차고사로 구분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80.3.1, 개정 '11.6.2).

②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고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③ 고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98.11.18)

제4장 학년, 학기 및 휴업일

제14조 (학기) ① 학년은 이를 2학기로 나눈다. (개정 '80.3.1)

②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개정 '05.03.16)

③ 전항의 학기 기간은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 (휴업일) ①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개정 '80.3.1, '99.10.23)

1. 관공서의 공휴일 (개정 '98.11.18)
2. 개교기념일 : 3월 13일(단, 공휴일시 익일로 한다). (개정 '11.6.2)
3. 여름휴가 : 7월 중순 ~ 8월 하순(개정 '11.6.2)

4. 겨울휴가 : 12월 하순 ~ 다음해 2월 초순(개정 '11.6.2)
 5. 학년말 휴가 : 2월 중순 ~ 2월 하순(개정 '11.6.2)
 6. 재량휴업일(개정 '11.6.2)
-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휴가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절할 수 있다.
- ③ 제1항 각호 외에 비상재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11.18)
- ④ 휴일이라도 필요한 때에는 실습을 과할 수 있다.

제5장 수료 및 졸업

제16조 (수료.졸업)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개정 '80.3.1, '96.3.1, '98.11.18, '99.10.23)

② 각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개정 '80.3.1)

③ 학교의 장은 본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졸업장을 수여한다. (개정 '80.3.1, '98.11.18)

제17조 (목적) 이 규정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초중등교육법 제27조에 따라 본교의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5.06.29)

제18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이하 조기이수 대상자로 한다.)로 선정되어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자는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개정 '05.06.29)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의 선정>

제19조 (선정 시기) 조기이수 대상자의 선정은 학년 초 30일 이내로 한다. 단, 1학년의 경우에는 입학 후 90일 이내로 한다.(개정 '05.06.29)

제20조(선정절차) 조기이수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절차에 따른다.(개정 '05.06.29)

- ① 학생과 학부모의 신청에 의한(또는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후) 학급 담임의 추천
- ② 개인지능 검사 혹은 적성검사 실시(기존의 검사 자료 활용)
- ③ 학교장이 정하는 교과목의 학업 성취도 평가(정기고사 성적 활용 가능)
- ④ 교직원회의 사정
- ⑤ 학교장의 선정

제21조(선정기준) ① 조기이수 대상자는 품행이 방정하고 심신발달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개정 '05.06.29)

1. 전학년도 1,2학기 국어, 수학, 과학, 영어 교과목의 학업성취도가 '수' 인자로서, 개인 지능 검사 혹은 적성검사에서 우수한 능력을 나타낸 자
2. 수학, 과학, 외국어, 예체능 각 분야에서 특별히 우수한 재능을 보이고 전 교과목의 학업 성취도가 '우' 이상인 자로서, 교육부 및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시행한 경시.경연대회, 또는 공인된 전국 규모의 경시.경연 대회 입상자로 해당 교과목 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3. 기타 학교장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자로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

② 신입생의 경우 전학년도 성적은 중학교 3학년 때의 성적으로 한다.

제22조(선정방법) 조기이수 대상자는 선정 기준을 만족하는 자 중에서 선정절차에 따라 선정한다.(개정 '05.06.29)

<교과목별 이수방법 및 학습장소>

제23조(이수방법 및 학습장소) ① 조기이수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차상급 학년의 전교과목을 해당 교과목 담당교사의 지도 아래 학교 및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학습한다.(개정 '05.06.29)

② 신입생의 경우 전학년도 성적은 중학교 3학년 때의 성적으로 한다.(개정 '05.06.29)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4조(구성)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운영한다.(개정 '05.06.29)

①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는 교감, 해당 교과목 담당 교사 2인, 교무부장, 연구부장, 교육정보부장, 조기 이수 대상 교과가 편성된 학년의 학년부장, 교육과정 담당교사 등 8인으로 구성한다.

② 해당 교과목 담당교사가 1인인 경우에는, 다른 학교의 해당 교과목 교사 1인을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한다.

제25조(운영)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05.06.29)

- ①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의 지도 계획 수립
- ②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방법의 결정
- ③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도구의 제작 또는 선정
- ④ 교과목별 이수인정 기준 결정
- ⑤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및 성적 산출
- ⑥ 기타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평가와 관련된 업무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제26조(시기) 조기이수 대상자의 조기이수 인정을 위한 교과목별 이수 인정평가를 수시로 실시하되, 상급학교 조기진학에 지장이 없는 시기에 완료한다.(개정 '05.06.29)

제27조(기준)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모두 만족한 자에 한하여 조기이수를 인정한다.(개정 '05.06.29)

- ① 교과목별 학습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여 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정한 수준에 도달한 자
- ② 차상급 학년 학생들이 치르는 2학기 기말고사에 응시하여 해당 교과에서 60점 이상을 받거나,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에서 정한 다른 방법으로 이수를 인정받은 자

제28조(이수교과목) 조기이수 대상자는 차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교과목에 대한 조기이수 인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05.06.29)

제29조(재심)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절차에 따라 학교장에게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05.06.29)

꿈과 열정이 살아 숨 쉬는 인월인

- ①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학생과 학부모가 연서한 서류로 재심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재심신청을 접수하면 학교장은 해당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실시하고,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 및 환원조치>

제30조(자격) ① 조기진급 대상자는 2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 교과목에 대한 조기이수 인정을 받은 자로 한다.(개정 '05.06.29)

② 조기졸업 대상자는 3학년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 교과목에 대한 조기이수 인정을 받고, 대학에 합격하여 입학이 확정된 자로 한다.(개정 '05.06.29)

제31조(선정절차)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에 대하여 교직원 회의의 사정을 거쳐 학교장이 확정한다.(개정 '05.06.29)

제32조(조기이수 대상자의 환원조치) (개정 '05.06.29)

① 조기이수 대상자로 선정된 후 부적응 현상이 심각할 경우에는, 학생본인과 보호자의 원에 의하거나 동의를 받아 학년초 30일 이내에 재입학 등의 방법으로 환원 조치할 수 있다.

② 학년말에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는 즉시 환원 조치한다.

제33조(처리담당자)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의 성적처리는 교육정보부에서, 생활기록부 정리는 현 소속 학급 담임이 처리한다.(개정 '05.06.29)

제6장 입학, 전학, 편입학 및 재입학

제34조 (입학 시기) 입학 시기는 학년 초 30일 이내로 한다.(개정 '80.3.1).

제35조 (입학방법)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가 정원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시험에 의하여 학교장이 입학자를 결정한다. 단, 전라북도 교육청이 승인을 받아서 실업계고등학교추천입학제 전형요강에 따라 학교장이 입학자를 결정할 수 있다. 단, 동점일 경우 생활기록부 과목순서에 따른 과목별 성적순으로 순위를 결정한다.(개정 '80.3.1, '92.3.1, '98.11.18)

제36조 (전.편입학 방법) ① 본교에 전.편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학교장이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지원자는 본교 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한다.(개정 '80.3.1, '98.11.18)

② 학교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일반계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예.체능계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목적고등학교,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각종학교 간의 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98.11.18, 개정 '11.6.2)

③ 실업계고등학교와 일반계고등학교 간의 전학은 제2학년 제1학기 이하에 한한다.

제36조의2(귀국학생 등의 전.편입학)

①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체류하면서 정규학교에 재학한 후 귀국한 학생(학생 본인 및 보호자를 포함한 전 가족이 본교를 학구로 하는 거주지 내에 거주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이

나 외국인학생, 탈북자(자녀포함)가 본교에 전.편입학하고자 하는 경우 학년별 정원외 2%이내에서 허가한다.(신설 '04.06.05)

② 제1항의 귀국학생 중 부모를 동반하지 않은 유학 등 불법 출국하여 재학한 후 귀국한 학생, 비정규학교에서 취학한 후 귀국한 학생 등은 일반 전.편.재입학을 포함하여 학년별 정원외 3%이내에서 학교장이 전.편입학을 허가한다.(신설 '04.06.05)

제 36조의3 (일반 귀국자의 부분적 성적산출)

①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 이탈주민의 자녀 등은 국내 학교에 전.편입학한 후 취득한 성적만으로 성취도와 석차를 산출한다. 다만 일반귀국자가 부분적으로 성적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등장학자료 제2004-30호 2004, 02.06에 의거하여 <별표 1>, <별표 2>와 같이 대체한다.(신설 '04.10.19)

제37조 (재입학) 본교를 자퇴한 자로서 다시 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동일학년 이하에 학교장이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80.3.1)

제38조 (입학서류)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0.3.1)

제39조 (전.편입학 서류) 본교에 전.편입학하려는 자는 입학에 필요한 서류외에 재학한 학교에 있어서의 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80.3.1)

제40조 (서약서) 입학(전.편입학 포함)을 허가받은 자는 따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보증인 연서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80.3.1)

제41조 (보증인) ① (개정 '80.3.1, 삭제 '11.6.2)

② (개정 '80.3.1, 삭제 '11.6.2)

③ (개정 '80.3.1, 삭제 '11.6.2)

제7장 휴학, 퇴학 및 상벌

제42조 (휴학)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휴학하려는 자는 그 사유서에 내용을 증명할만한 증빙서를 첨부하여 보증인이 연서로서 학교장에게 출원하여야 한다.(개정 '80.3.1)

② 휴학을 허가하는 기간은 매회 3월 이상 1년으로 하되 3회 이상 거듭할 수 없다.(개정 '80.3.1)

③ 병역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휴학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80.3.1)

제43조 (자퇴) 스스로 퇴학(타교 전학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써 그 사유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80.3.1)

제44조 (포상 등) 학생포상 및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이하 '학교생활규정'이라 한다)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11.6.2)

제45조 (징계) ① (개정 '80.3.1, 삭제 '11.6.2)

② (개정 '80.3.1, '98.11.18, 삭제 '11.6.2)

③ (개정 '98.11.18, 삭제 '11.6.2)

④ (개정 '98.11.18, 삭제 '11.6.2)

꿈과 열정이 살아 숨 쉬는 인월인

⑤ (개정 '98.11.18, 삭제 '11.6.2)

제46조 (퇴학처분) 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퇴학처분을 행하여야 한다.(개정 '80.3.1, 삭제 '98.11.18. 31조 1항2호)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
3.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

② 학교의 장은 퇴학 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8.11.18)

③ 학교의 장은 퇴학 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98.11.18)

제47조 기타 포상 및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생선도규정으로 정한다.(개정 '98.11.18)

제48조 (징수금)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에 관한 교육부 및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80.3.1)

제49조 (수업료 및 입학금 감면기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와 장학상 필요하다고 학교장이 인정한 자에 대하여는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개정 '80.3.1, 개정 '82.4.6)

제50조 (체납자 조치) (개정 '80.3.1, 개정 '99.10.23, 삭제 '11.6.2)

제8장 학생자치활동

제51조 (학생자치활동의 보장) ① 학교의 장은 자치활동을 권장,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신설 '98.11.18)

② 학교 운영 및 생활 규정 등에 대한 학생의 참여 규정을 마련하여 학생 자치기구의 실질화를 도모하여야 한다.(신설 '18.12.15.)

제52조 (학생회 구성) ① 학생의 자치활동을 위하여 학생회를 조직, 운영한다. (신설 '98.11.18)

② 학생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신설 '98.11.18)

제9장 학칙개정

제53조 (학칙개정 절차) ① 학칙은 교직원 회의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개정한다.(신설 '98.11.18, 개정 '11.6.2)

② 다만, 학교생활규정 및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학칙개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11.6.2)

③ 제2항의 학생 의견수렴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신설 '11.6.2)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76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1980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1981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1981년 12 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1982년 04월 0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1983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1985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1987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1988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1989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1990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1991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199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 08. 20. 행정 제632호)

(시행일) 이 학칙은 1993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08. 18. 행정 제727호)

(시행일) 이 학칙은 1994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09. 29. 행정 제821호)

(시행일) 이 학칙은 1995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03. 16. 행정 제237호)

(시행일) 이 학칙은 1996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1. 14. 행정 제1163호)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8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 이 학칙의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의 장이 이를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1999년 10월 23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08. 31. 행정 제1130호)

(시행일) 이 학칙은 2002년 03월 0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02. 28. 행정 제353호)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3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학교규칙 시행당시 설치된 학과 및 학급수는 제6조, 제7조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꿈과 열정이 살아 숨 쉬는 인월인

부 칙 (2004. 06. 05. 행정 제2887호)

(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06월 05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0. 19.)

(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10월 19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03. 16.)

(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03월 16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06. 29.)

(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06월 29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09. 02. 행정 제8041호)

(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09월 02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03. 09.)

(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03월 09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04. 05. 행정 제4497호)

(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06월 02일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외국의 정규학교에서 1~3개 학기를 적법하게 수학하였음이 인정된 일반귀국자

1학년 성적		2학년 성적	
산출 불가능 성적	대체 성적	산출 불가능 성적	대체 성적
1학년 1학기 성적	1학년 2학기 성적	2학년 1학기 성적	2학년 2학기 성적
1학년 2학기 성적	2학년 1학기 성적	2학년 2학기 성적	3학년 1학기 성적
1학년 1.2학기 성적	2학년 1학기 성적	2학년 1.2학기 성적	3학년 1학기 성적

산출 불가능 성적	대체 성적
1학년 1.2학기, 2학년 1학기 성적	2학년 2학기 성적
1학년 2학기, 2학년 1.2학기 성적	3학년 1학기 성적

<별표 2> 외국의 정규학교에서 적법하게 4개 학기 이상 수학하였음은 인정되었으나, 특례입학 자격 기준에 미달된 일반귀국자

산출 불가능 성적	대체 성적
1학년 1.2학기, 2학년 1.2학기 성적	3학년 1학기 성적
1학년 1.2학기, 2학년 1.2학기, 3학년 1학기 성적	3학년 2학기 성적

부 칙 (2018. 12. 15.)

(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11월 15일로부터 시행한다.

8

학교생활규정, 학생자치규정, 학생인권조례

인월중·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및 목적) 이 규정은 ‘인월중·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이라 하며,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이 공동체 속에서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근거 및 원칙)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5(학생의 인권보장), 제20조 제4항(교사의 교육권), 동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며,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해서는 아니 되고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의거 권리를 최대한으로 보장한다.

제3조(학교 구성원의 책무)

- ① 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학생은 학교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규정을 준수하고 인권을 학습하며, 교사와 다른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학교장은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 제30조 및 제31조에 의거하여 소속 학생에게 학기당 2시간 이상 및 교직원, 학부모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인권우호적인 학교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제2장 권리(학생인권)

제4조 (학생 인권 보장)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

제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 ① 학생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차별의 정의와 종류에 따른 이유로 합리적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은 특히, 성적 등의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6조 (학습에 관한 권리)

- ①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
- ② 학교는 정규 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학생은 쾌적한 환경(생난방, 미세먼지 관련)에서 학습할 권리가 있다.

제7조 (개성 실현의 권리)

- ① 학생은 두발, 복장 등 용모에 있어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가 있다.
- ② 학교는 교복 및 복장에 대한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제8조 (정보에 관한 권리)

-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 ② 학생은 학교에 대해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고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자치 및 참여의 권리)

- ① 학교는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에 대한 자율적 활동을 보장한다.
- ② 학교는 학교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며, 학생회를 통한 의견 제출권을 보장해야 한다.

제10조(징계 절차에서의 권리)

-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 사유에 대한 사전 통보, 공정한 심의 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② 학생 징계 때에는 학생의 성장을 돕는 방향으로 교육적 배려가 수반된 상태에서 실시한다.

제11조 (건강에 관한 권리)

-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절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여학생의 생리 공결을 보장하며, 생리로 인하여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학생 생활

제12조 (대인 관계에서의 자세)

- ① 학교 구성원은 서로를 존중하며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 ② 학생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권한과 지시를 존중하고 따른다.
- ③ 학생은 교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의견을 개진하고 개선을 요구한다.
- ④ 학교 구성원 사이의 따돌림, 폭력 등 공동체의 평화를 깨뜨리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으며, 갈등이나 문제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
- 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차별행위의 정의에 해당하는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 타인을 존중하고, 권리와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 ⑥ 성(性)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⑦ 다른 학생과 교제시 불쾌감과 수치심을 유발 하는 행동을 삼가고 서로 인사하고 배려하며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제13조(시설이용 및 환경)

- ① 자신이 배출한 쓰레기는 스스로 분리수거하는 등 청결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② 학교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훼손하지 않는다.
- ③ 특별교실과 체육관(강당) 등 학교 시설을 사용할 때 규칙과 절차를 잘 지킨다.
- ④ 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을 인지할 경우 교사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 ⑤ 수도물, 전기 등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한다.
- ⑥ 일회용품, 플라스틱 사용을 자제하는 등 환경보존을 위해 노력한다.
- ⑦ 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사용하는 공간(식생활관, 화장실 등)을 청결하게 유지해야한다.

제14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 ①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 ②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절도행위 포함)했을 경우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제15조(폭력 등에 관한 대처)

- ① 교내에서 폭력이나 괴롭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조짐을 알게 될 경우나 관련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는 반드시 그 사실을 학교에 알려야 한다.
- ② 스토킹이나 성희롱, 성폭력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제16조(학급 및 수업에서의 태도)

- ① 수업 등 교육활동의 시종시간을 지킨다.
- ② 수업 내용과 무관한 말과 행동, 소음 등으로 교사의 원활한 수업진행이나 다른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 ③ 교사의 허락 없이 본시 교과 이외의 과목을 공부하지 않으며, 수업 중 교실 안팎에서 돌아다니지 않는다.
- ④ 수업에 필요한 교재, 준비물을 지참하고 제시된 과제는 성실히 수행한다.
- ⑤ 수업 중 껌을 씹거나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다.
- ⑥ 수업 중 휴대폰을 꺼내놓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 ⑦ 학생은 정규교과 시간 이외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제17조(휴식시간)

- ① 학교장, 교직원 등은 학생들의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 ②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는 타인의 휴식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 ③ 건강과 안전을 위해 교실과 복도 등에서 체육활동을 하지 않는다.
- ④ 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휴식공간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 ⑤ 교사의 허가 없이 학교 밖을 출입하지 않는다.
- ⑥ 일과 중 휴식시간에 교정에서는 자전거, 오토바이, 각종 스케이트 및 보드를 타지 않는다.
- ⑦ 화투, 카드놀이 등 사행성 오락을 하지 않는다.

⑧ 실내에서는 타인의 휴식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복도에서 뛰는 행위, 고함을 지르는 행위, 욕설을 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

제18조(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 학교 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일부 물품의 경우 특별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① 성냥, 라이터, 폭죽, 드라이기, 고대기 등의 인화물질 및 전열기
- ② 칼,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등 타인을 해칠 가능성이 뚜렷한 물품들
- ③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 ④ 모든 형태의 도박에 관한 물품
- ⑤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 ⑥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 ⑦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일체
- ⑧ 면허증이 없거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차량 및 오토바이

제19조(용모)

- ① 학생은 두발의 길이·모양·색상 등 용모에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은 교복에 대한 선택권(착용 여부 및 시기, 방법, 치마바지 등)을 갖는다.
- ③ 청결을 유지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한다.
- ④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 ⑤ 실내화와 실외화는 구분하여 착용한다.

제20조(표현의 자유)

- ① 학생은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 ③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 ④ 학생은 모임이나 단체활동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⑤ 학교장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제21조(정보통신 윤리)

- ①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인권과 정보, 사생활을 존중·보호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한다.
- ②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 및 불법 유해 매체물을 반입하거나 유통하지 않는다.
- ③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 ④ 학교에서 영리를 취할 목적이거나 상거래를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다.

제22조(전자기기 사용)

- ① 교육활동 과정(조·종례 시간, 수업, 청소활동, 학교행사, 체험활동)에서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 활동을 위해 교사가 허락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② 휴대폰을 사용할 때에는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 ③ 전자기기를 무단으로 사용한 학생에 대해 전자기기 제출을 교사가 요구할 경우 학생은

그 요구에 응하며, 벌칙은 담임교사의 재량에 맡긴다.

④ 시험기간 중 휴대폰은 등교 시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보관하며, 시험 중 휴대폰을 소지하거나 사용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제23조(자치활동)

- ① 학생회, 동아리 등의 학생자치활동은 보장된다.
- ② 학생들은 학생자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한다.
- ③ **학생대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④ 학교는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활동에서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 ⑤ 성적, 징계 등을 이유로 구성원의 선거권, 피선거권 등의 권리와 자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 ⑥ 자치활동의 조직 및 기능에 관련한 사항은 학생회 규정에 따른다.
- ⑦ **학생회 규정 및 선거관리규정의 제·개정은 학생회에서 한다.**

제24조(동아리 활동)

- ① 학생은 자유롭게 동아리활동을 할 수 있다.
- ②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 ③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 ④ 동아리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학생생활교육

제25조(체벌금지) 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어 폭력 등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 ① 도구에 의한 체벌
- ② 손이나 발 등 신체에 의한 체벌
- ③ 반복적·지속적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 ④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⑤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시키는 언어폭력

제26조(교사의 권한) 생활교육에 있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교육적 상담 및 조언
- ② 교육환경 조성
- ③ 행동 개선 요구
- ④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 ⑤ 학교생활교육위원회 소집 요구 및 의견 제출
- ⑥ 교권보호위원회 구제 신청

제27조(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 ① 교사는 먼저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행동의 원인을 파악한다.

② 교사는 학생에게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고, 수정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훈계·훈육의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
2. 교실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시키기
3. 학습 과제 부여 및 방과 후 교육
4. 훼손 시설·물품,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5. 학부모 통보 및 상담
6. 기타 학교위원회에서 마련한 인권우호적인 교육적 조치

③ 교사가 상담 및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이 행동을 수정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학교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소지품 검사)

①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키고, 학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건을 소지하여 사용 가능성이 현저할 경우 해당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소지품 검사 시에는 학생의 동의를 얻고, 동성(同性) 교원 입회하에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가능한 한 간결하고 신속하게 실시한다.

③ 신체 내 휴대가 의심되는 소지품에 대한 검사는 여학생은 여교사, 남학생은 남교사가 실시한다.

④ 사안 발생 시 학교장에게 보고 후 협의를 통해 대처하되, 상황이 급박한 경우 선대처 후, 학교장에게 보고하여 처리한다.

⑤ 소지품 검사가 가능한 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8조 제1호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타인을 상해하거나 화재를 발생시킬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2. 제18조 제2호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타인을 상해할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3. 제18조 제7호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본인 또는 타인과 흡입 및 섭취할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제29조(전자기기 사용)

① 전자기기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을 단계적으로 거친다.

② 제22조 제1항에서 예시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활동 시간 동안 전자기기를 제출하도록 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기기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거부할 경우, 해당 학생을 학교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④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전자기기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은 단계적으로 징계 조치할 수 있다.

제30조(학교생활교육위원회)

① 학생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이하 '학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학교위원회는 교감(위원장), 생활교육 담당부장, 생활교육 담당교사, 교무부장, 각 학년부장, 상담교사로 하며, 특정한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 협의 시에는 그 학생의 소속 학급 담임

교사 또는 학부모 대표를 비상임 위원으로 참석하도록 한다.

- ③ 학교위원회는 교감이 위원장이 되어 운영을 총괄하며, 인성인권안전 담당부장은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관한다.
- ④ 학교위원회는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인성인권안전 담당부장의 제청으로 교감이 소집하여 이를 심의·의결한다.
- ⑤ 학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 ⑥ 학교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징계의 원칙)

-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 ②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고, 그것을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한다.
- ④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 ⑤ **징계 대상 학생의 신상정보를 노출시키면 안 된다.**

제32조(징계의 종류와 기간) 징계의 종류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학교 내 봉사 :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하며, **수업참여 여부는 학교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② 사회봉사 :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③ 특별교육이수 : 기간은 위탁기관과 협의를 거쳐 학교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출석으로 처리한다.
- ④ 출석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 ⑤ 훈계·훈육, 교실에서 분리조치, 상담지도, 특별과제 부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아니하고, 학생 지도의 한 방법으로 한다.

제33조(징계의 방법)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 ① 학교 내 봉사 : 해당 학생은 등교할 수 있으나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학생인권부, 진로상담부, 해당 학년 교사, 교감, 교장 등의 지도를 받으며 봉사활동(교내 환경 미화, 교재·교구 정비, 학교 인성교육프로그램, 기타 적절한 활동 등)을 하여야 한다.
- ② 사회봉사 : 해당 학생은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사회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사회봉사기관으로부터 대상 학생의 불참 및 이탈 통보가 있을 경우, 무단결석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 ③ 특별교육이수 : 해당 학생은 전라북도 교육감이 설치·지정·위탁한 교육기관에서 교육 및 상담·치료를 받아야 한다. 교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 ④ 출석정지 : 해당 학생은 학교에서 상담 및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보호자의 요청시 보호가능 확인 후 가정학습(과제 부여 등 학습 조치)을 할 수 있다. **출석정지 기간은 무단**

결석으로 처리하되, 학교생활기록부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제34조(징계통보 및 진술권 보장)

- ① 학교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에 간사의 사안 설명 및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품성·가정환경 등에 대한 의견을 담임교사(또는 상담교사)로부터 청취한다.
- ② 학교위원회는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듣는다.
- ③ 학교위원회는 학생과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 '의견진술(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유선통화 일시, 내용의 기록 또는 서면 통보 사본을 보관한다.)**

제35조(심의 확정 및 재심 요구)

- ① 학교장은 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 ② 학교위원회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가 결정되면, 이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보호자에게 학생 선도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 ③ 학교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는 5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학교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 ⑤ 학교장은 학교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36조 퇴학처분에 대한 징계 재심 청구

- ① 학생 생활교육위원회의 징계 처분 중 퇴학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학생 또는 보호자가 학생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1.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 2. 피청구인
 - 3. 퇴학조치가 있음을 안 날
 - 4. 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③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청구사항을 전라북도교육청 지정 서식에 작성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접수한다.

제37조(징계의 유보, 경감, 해제, 가중, 사후 조치 등)

- ①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 응시하게 하되, 시험 참여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 ②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잘못을 뉘우치는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 ③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사안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다.
- ④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는 학생의 학교생활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상담 및 회복적 교육을 통해 학생의 학교생활을 돕는다.

제38조(장애학생 대상 징계)

- ① 특수학급, 통합학급을 운영하는 일반학교 또는 일반학교(다른 학교 재학하는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적용)에 적용 된다
- ② 일반학생 대상 학교폭력(성폭력) 사안에 적용하는 처벌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수위의 징계를 적용한다.
- ③ 장애학생 대상 성폭행의 경우, 인지 즉시 경찰신고 및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서 가해학생을 격리조치 할 수 있다.

제39조(장애학생의 보호)

- ①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장애학생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장애를 이유로 불쾌감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아야 한다.
- ③ 생활교육위원회는 폭력 및 차별 등의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장 규정의 개정

제40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 ① 본교의 학교생활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하여 「남원인월중고등학교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인 이상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간사(생활지도업무담당자),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감으로한다. **학생위원은 전체의 4/10이상이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 위원으로 전문가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학생·학부모·교원 대표로 선출된 위원들의 추천에 의하여,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한다.
- ⑥ 위원회 구성 완료 후에는 학교 홈페이지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 내용 등에 대해 공고하여야 한다.
- ⑦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을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 ⑧ 위원회는 규정안을 심의할 때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1조(개정안 발의)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학생회 대표(대의원회 의결서 첨부)
3. 재직 교원의 과반수
4.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5.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장 발의

② 개정의 필요가 있을 시에는 시기에 상관없이 수시로 개정할 수 있다.

제42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민주적인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3조(심의 및 결정)

- ① 위원회는 학교생활규정개정안이 발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안을 확정하여 **학교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44조(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교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 6장 학생인권

제45조(학생인권의 보장)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46조(책임과 의무)

교권에 관한 문제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 및 지시에 불응하여 인권을 침해할 경우 교외 봉사활동에 처한다.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 적절한 절차에 의해 처리한다.(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 선도 위원회 등)

제47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지며, 학교장은 학교 내 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긴급구조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안이 발생 시 학교는 피해학생에 대한 즉각 보호조치를 취하며 가해학생은 학교폭력으로서의 사안을 처리한다.)

제48조(사생활의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사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 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당사자 간에 나눈 대화를 상대방이 불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제3자에게 또 다른 비밀이라고 이야기 하는 경우에 해당 된다.

제49조(양심·종교의 자유)

학생은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특정 종교에 대한 교내 활동은 학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일정 공간에서 정해진 시간에 활동 할 수 있으나, 해당 종교 활동이 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정도로 심각할 경우는 학교장이 이를 제지할 수 있다.

제50조(표현의 자유)

학생은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개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표현을 할 수 있으나 일반 학생들의 학습에 피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개인의 인격이나 신상과 관련된 내용이나 사회적, 정치적으로 오용될 소지의 내용일 경우 학교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단, 실명게시의 경우는 게시자에게 제한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51조(소수 학생의 권리보장)

학교장은 빈곤, 장애, 학부모 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운동선수, 성 소수자, 학교부적응 학생 등 소수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학교장은 위와 관련하여 해당 학생 및 이에 반하는 학생들에 대한 소수 학생의 권리를 지켜주며 이에 대한 상황과 여건에 맞게 조치를 취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학교장의 이 규정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에서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인월중·고등학교 학생자치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학생회는 학급학생자치회, 전체 학생자치회로 구분하여, 각각 **인월중·고등학교** 학급 학생자치회(이하 학급 학생회), 인월중·고등학교 학생자치회 또는 총학생회(이하 학생회)라 한다.

제2조(목적) 학생회는 회원의 권리와 복지를 신장하고 자치활동을 통해 민주시민의식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 학생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또는 유예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4조(기구 및 조직) 학생회는 다음과 같은 기구 및 조직을 둔다.

1. 학생총회
2. 대의원회
3. 학년학생회
4. 학급학생회
5. 운영위원회
6. 동아리연합회
7. 선거관리위원회
8. 기타

제5조(권리 및 의무) 학생회의 회원은 학생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2장 권한

제6조(권한)

- ① 학생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공간, 비품 등을 제공받을 권리를 갖는다.
- ② 자유로운 학생자치활동을 운영할 권리를 갖는다.
- ③ 학교 운영, 학교규칙 등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갖는다.
- ④ 학교의 운영 및 전라북도교육청의 교육정책결정과정에서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제7조(역할)

- ① 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사항과 심의 의결한 사항을 추진한다.
- ② 학생회 활동 예산편성 집행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③ 학생의 의견 요구를 수렴하여 대변한다.
- ④ 학생의 인권과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⑤ 축제 및 학교 행사를 능동적으로 기획 및 추진한다.
- ⑥ 바람직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등의 활동을 기획하고 추진한다.

제8조(기능)

- ① 학교 생활(교과 활동, 학교행사, 학생 간 갈등 및 분쟁, 환경미화, 학생복지, 기타) 전반에 관한 학생 의견의 수렴 및 건의 활동
- ② 학생 중심의 자발적인 연구, 예술, 체육, 취미, 봉사 활동
- ③ 학교에 대한 건의를 위한 의견 수렴 및 전달
- ④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된 학생의 인권·복지·생활 관련 안건에 대한 협의 및 의견 개진
- ⑤ 학생회 운영
- ⑥ 학생복지 및 활동과 관련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⑦ 기타 학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제3장 기구 및 조직

제9조(학생총회)

- ① 학생총회는 학생자치회 회원 전체로 구성한다.
- ② 전교 학생들의 직접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에 연다.

제10조(대의원회)

- ① 학생회의 심의·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 ②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학생회장단
 2. 각 학급 학생회장 1명
- ③ 대의원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이 맡는다.
- ④ 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회의 사업계획·사업보고 심의 및 승인
 2. 예·결산 심의 및 승인
 3. 교육정책 제안 사항 심의
 4. 집행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 처리
 5. 집행위원회의 각 부서 부장 및 차장 임명 동의안 인준
 6. 학생자치회규정 및 선거관리규정의 제·개정 안 심의·의결
 7. 기타
- ⑤ 대의원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의원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2. 정기회는 분기별로 소집하며 임시회는 대의원 1/5 이상 또는 학생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여길 때 이를 소집한다.
 3. 대의원회의에서 일반 안건에 대한 의결은 재적의원 1/2이상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4. 학생자치회 업무담당교사는 학교 상황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을 하거나 학생들의 요구 사항을 학교에 전달한다.

5.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 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하며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

- ① 학생회 운영기구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학생회장, 부회장 및 각 부의 부·차장으로 한다.
- ③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
 - 1. 기획부 : 축제 등 학생자치활동 계획 및 기타 사항
 - 2. 문화부 : 학술, 예술 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 등에 관한 사항
 - 3. 체육부 : 심신단련을 위한 활동
 - 4. 인성안전자치부 : 학생 간 갈등 중재, 기타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 길라잡이 담당.
 - 5. 환경부 : 학교 내의 환경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
 - 6. 학습부 : 학력 향상에 관한 사항, 자율학습 등의 사항
 - 7. 홍보부 : 학교 및 학생자치활동 홍보에 관한 사항
 - 8. 봉사부 : 교내 외 봉사활동 안내 및 추진
 - 9. 인권복지부 : 학생 인권 및 복지 관련 사항
- ④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 2. 사업계획(안) 작성
 - 3. 예산편성 요구 및 결산 보고
 - 4. 학교생활규정 개정(안) 발의
 - 5. 기타
- 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 1. 운영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가지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2. 학생회 업무담당교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학교 현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제12조(학년학생회)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년학생회를 둘 수 있다.

제13조(학급학생회)

- ① 기능
 - 1. 학교 생활(교과 활동, 학급행사, 학생 간 갈등 및 분쟁, 환경미화, 학생 인권 및복지, 기타 학생회에서 위임 및 요구한 사항 등) 전반에 관한 학생 의견 수렴 및 건의
 - 2. 학생 중심의 자발적인 연구, 예술, 체육, 취미, 봉사 활동
 - 3. 학급 규칙 등의 제정
- ② 학급학생회의 부서는 제11조와 같이 하거나 학급 자체로 구성할 수 있다.
- ③ 학급학생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 1. 학급회장, 학급 부회장 각 1명
 - 2. 각 부장 1명
 - 3. 제1호의 학급회장은 대의원회의 대의원이 된다.
 - 4.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차장을 두지 않을 수 있다.
- ④ 학급회장, 부회장 선거 및 당선자 결정

1. 학급학생회 선거는 학생회 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한다.
2. 학급회장, 학급 부회장은 무기명, 직접,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3. 학급 학생회장, 부회장 선거는 매년 학기 초(3월, 9월)에 실시한다. 단, 회원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2학기 선거는 하지 않을 수 있다.

⑤ 학급 학생회의 운영

1. 학급 학생회 회의는 월 1회 정기회를 개최하며, 학급 학생회 회원 1/5이상 또는 학급회장이 필요하다고 여길 때 임시 회의를 소집한다.
2. 학급회의의 의결은 회원 2분의 1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의 경우 학급 학생회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3.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 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하며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⑥ 기타 학급학생회에 필요한 사항은 학생회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선거관리위원회)

① 학생회 회장, 부회장(이하 학생회장단) 선거 등의 공정한 관리 및 진행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구성

1.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하 선거관리위원)은 각 학급에서 1명 내외의 추천 또는 지원을 받아 7~9명으로 선출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선거관리위원은 학생회장단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③ 이 규정의 선거관련 위임사항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선거

제15조(선거일 공고)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일 14일 전까지 선거 일시 등 선거에 관한주요 사항을 학교 게시판 등에 공고한다.

제16조(선거인 명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공고 후 5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이때 선거인명부는 각 학급 명렬표로 대신할 수 있다.

제17조(학생회장단 후보 등록)

① 회장단에 입후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

1. 선거 공고일 현재 학생회 회장 후보는 2학년(차기 학년도 3학년), 부회장 후보 1인은 2학년(차기 학년도 3학년), 부회장 후보 나머지 1인은 1학년(차기 학년도 2학년)으로 한다.
2. 학생회장단 후보는 소정의 양식에 1~2%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때 학생회장단 후보자에 대한 중복 추천은 불가하다.
3. 학생회장단 후보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후보 등록일 안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때 필요한 서류(후보자 추천서, 후보자 등록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 받는다.

꿈과 열정이 살아 숨 쉬는 인월인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된 서류를 심사하여 주요 사실에 허위가 있거나 후보로서 부적격한 경우에는 무효처리하고, 이 사실을 당사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③ 후보자가 후보를 사퇴하고자 할 때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한다.
-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천 등의 공정한 방식으로 후보 기호를 결정한다.
-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등록 마감 및 후보 기호 결정 후, 그 결과를 학교 게시판 등에 공고한다.

제18조(학생회장단 선거 및 당선자 결정)

- ① 투표는 무기명, 직접,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 ② 선거인의 1/2 이상이 투표하여 유효투표의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자에게 당선증을 준다. 다만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또 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는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 ③ 학생회장단 선거는 해마다 실시하며, 임기는 다음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④ 대의원회의의 결정으로 선거 시기 및 학생회장단 임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19조(학생회 각 부서의 부·차장 인준 및 임명)

- ① 학생회장은 각 부서의 부·차장 임명동의안을 제10조 대의원회에서 인준 받은 후 임명한다. 이 경우 임명 동의안은 임기 개시 이후 첫 번째 대의원회에 상정한다.
- ② 각 부서의 부장은 3학년으로, 차장은 2학년으로 한다.

제5장 예산 및 결산

제20조(예산편성 요구)

- ① 학생회의 예산은 학교에서 지원한 예산과 후원금, 기타 수익금으로 편성한다.
- ② 운영위원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후 10일 이내에 예산안을 편성하여 대의원회에 제출하고, 대의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21조(결산) 학생회장은 회계연도 만료 후 1개월 이내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6장 규정의 제·개정

제22조(규정의 제·개정) 학생회 규정의 제·개정은 대의원 1/3 이상의 찬성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대의원회에서 재적의원 3/4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의결의 자율성 보장) 학생자치기구의 심의·의결은 그 자율성을 보장받는다.

제24조(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 ① 학생은 학교생활규정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학교생활규정 등 학교 규정을 수시로 제·개정하

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학교생활규정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해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의 제정 및 시행일은 「인월중.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 개정안」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헌법」, 국제연합「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학교”란 전라북도 내에 소재한「초·중등교육법」제 2 조의 학교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유치원을 말한다.
- ②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 또는 유치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과 퇴학 여부를 다투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③ “교직원”이란「초·중등교육법」제19조 제1항의 교원과 같은 조 제2항의 직원,「유아교육법」 20조 제1항의 교원 및 같은 조 제2항의 직원을 말한다.
- ④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과 그 밖의 사람으로서 유아 또는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⑤ “학생의 인권”이란「대한민국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체결·공포한 조약과 국제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중 학생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원칙)

- ①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의 인권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만 제한될 수 있으며,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 한다.
- ③ 학생의 개성과 자율성은 학교생활에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제4조(책임과 의무)

- ① 전라북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학예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때 학생의 인권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설립자와 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 스스로가 인권을 학습하고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고, 타인의 인권을 존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③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학생이 교사, 학생 등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학칙에 따른 책임을 진다.
- ④ 교육감과 학교의 설립자와 경영자는 학생의 교육활동에 적합한 교육시설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학생의 인권

제1절 교육에 관한 권리

제5조(학습에 관한 권리)

- ①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②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 참석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에 근거한 특성화 고등학교는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북한 이탈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

- ① 학생은 정규교과 시간 이외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종례 이후 실시되는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③ 학교의 장은 방과후 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7조(인권교육을 받을 권리)

- ① 학생은 자기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고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은 인권을 옹호하고 자기나 타인의 인권을 위한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이 조례의 주요내용을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절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제8조(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 ① 학생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차별행위의 정의에 해 당하는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② 학교의 설립자와 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3절 폭력과 위협으로부터의 자유

제9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교육과정에서 체벌은 금지된다.
- 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교 내 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긴급구조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에 대한 권리)

-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휴식을 취할 권리)

-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정규교과 시간 이외 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교육감은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 ① 학생은 복장, 두발의 길이·모양·색상 등 용모에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 ② 교복을 입는 학교의 여학생은 치마와 바지에 대한 선택권을 가진다.
- ③ 학교의 장은 교육목적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 조례 제19조 제2항에 정한 절차를 거쳐 정하는 학교의 규정으로 제1항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사생활의 자유)

- ① 학생은 학교의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
- ②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해서는 아니 된다. 소지품의 검사 또는 압수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 필요한 최소한에 한하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는 지양하여야 한다.
- ③ 교직원은 일기장이나 개인 수첩 등 학생의 사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대전화기, 그 밖에 전자기기의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수업방해의 방지 등 교육목적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 조례 제19조 제2항에 정한 절차를 거쳐 정하는 학교의 규정으로 학생의 휴대전화기 사용과 그 밖에 전자기기의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
- ⑤ 학교의 장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 등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 사실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생활의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

- ①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사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교외에서 이름표의 부착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교육비, 급식비 미납사실 등 학생에 관한 사적 정보를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 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정보에 관한 권리)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학교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예·결산등학교재정에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공개를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이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④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에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등이 있을 경우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5절 양심·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제16조(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여와 대체과목 없는 특정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단, 학교의 장은 교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 조 제19조제2항에 정한 절차를 거쳐 정하는 학교의 규정으로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에 관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④ 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모임이나 단체 활동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⑤ 학교의 장은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6절 자치와 참여의 권리

제18조(자치활동의 권리)

① 동아리, 학생회 그 밖에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운영 등 학생의 자치 활동은 보장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운영 등 학생자치활동의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성적, 징계를 받은 사실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조직의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자치조직의 대표는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④ 학생자치조직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꿈과 열정이 살아 숨 쉬는 인월인

1.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공간, 비품을 제공 받을 권리
2. 학교운영, 학교 규칙 등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
3. 학생자치조직이 주관하는 행사를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는 권리

제19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이하 '학교규정'이라 한다)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학교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교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0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 ① 학생은 학교 운영과 교육청의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와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 있는 사항에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가진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직원들은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학생대표는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⑤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7절 복지에 관한 권리

제21조(복지에 관한 권리)

- ① 학생은 학습 부진, 폭력 피해, 가정 위기, 비행·일탈 등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 발견, 진로 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빈곤, 장애, 다문화가정 등 경제·사회·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예산 등의 자원을 배정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이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 필요한 상담과 그에 따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수립·정비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특별한 상담과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아동복지 및 인권과 관련된 지역 사회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자를 교육하고 보호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제22조(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 ①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적절한 양과 질의 도서와 도서관 공간 확보, 청결한 환경의 유지, 화장실과 적절한 탈의 및 휴게 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난방 관리, 녹지공간 확대 등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교 공간의 성 인지적 설계를 통해 성 평등이 보장되는 교육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문화활동에 참여할 권리)

- ① 학생은 다양한 문화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공연, 전시 등의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은 제2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교와 지역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4조(급식에 대한 권리)

- ①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급식재료, 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친환경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은 유·초·중·고등학교의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건강에 관한 권리)

-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절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여학생이 생리로 인하여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공결로 처리하는 등 생리 중인 여학생에 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보건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절 인권침해구제를 위한 권리

제26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징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벌점제를 포함한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과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상담과 조사 등 청구권)

- ①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하여 인권옹호관에게 상담과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모든 학생의 인권 관련 사항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문서 등으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 ③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의 청구권과 청원권 행사에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④ 인권옹호관 및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청구와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며, 그 처리 결과를 청원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학생인권의 진흥

제1절 인권교육

제28조(전라북도 학생인권의 날)

- ①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학생인권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교육감은 학생인권의 날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홍보) 교육감은 국제연합의「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이 조례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 등 학생의 인권에 대한 교육용 자료를 제작·배포하는 등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학생에 대한 인권교육)

- ①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실습, 학생 노동활동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노동권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 스스로 행하는 자율적인 인권 학습 및 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31조(교직원에 대한 인권 연수와 지원)

- ① 학교의 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직원 연수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교직원에 대한 각종 연수에 학생의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은 학교의 인권교육과 교직원 연수를 위한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32조(보호자의 권리와 교육)

- ① 보호자는 학교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교육과 관련하여 교직원에 대하여 상담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보호자에 대하여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 또는 간담회를 연 2회 이상 추진하여야 하며, 보호자에 대한 인권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2절 인권실천계획 등

제33조(인권실태 조사)

- ① 교육감은 매년 전라북도 내 학생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학생인권 교육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제1항의 조사 결과가 확정되는 즉시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34조 (인권 모니터링)

- ①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침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연례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차기 년도 인권실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학생인권의 모니터링을 위하여 민간단체의 모니터링 활동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실천계획의 작성)

- ①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교육활동과 적절한 수준의 교육·복지·휴식

시설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제1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의 인권 등의 향상을 위한 실천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할 때는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공청회, 토론회, 지역순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학생, 교직원, 보호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④ 실천계획에 대해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은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6조(학교별 평가와 지침 제시)

- ① 교육감은 정기적으로 학교별 학생인권 실현 상황을 조사하고, 그 개선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제2장에서 규정하는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각 학교에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시민활동 지원)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민간단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절 소수 학생의 권리 보호

제38조(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 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빈곤, 장애,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운동선수, 성 소수자, 학교부적응 학생 등 소수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소수 학생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인권교육 프로그램과 소수 학생을 위한 진로·취업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장애 학생에 대하여 교내·외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하며, 적절한 교육과 평가방법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빈곤 학생이 가정형편으로 말미암아 수학여행 등 교육활동에서 소외 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⑤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하여 교육활동에서 언어·문화적 차이등으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아니 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다문화가정 학생의 전·입학 기회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절 학원 및 대안학교 등에서의 인권보장

제39조(학원, 대안학교, 평생교육 등)

-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 평생교육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교육감은 학교에 재학하지 않으나 학생과 같은 연령대의 어린이와 청소년의 학습을 위한 시설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교육감은 전라북도 내의 「학원의 설립 운영과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과 대안학교, 평생학습센터 등 대안 교육 기관에 다니는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들 교육기관에서의 인권 보장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제5절 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한 기구

제40조(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 ① 학생의 인권에 관한 전라북도교육청의 정책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심의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인권옹호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③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 1. 교육, 아동복지, 청소년, 의료, 법률, 인권 전문가로서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 2. 학생참여위원회의 위원
 - 3. 도민 중에서 학생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 사람으로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신청한 자
 - 4. 전라북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 ④ 심의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 1. 학생인권실천계획의 수립
 - 2. 학생의 인권에 관한 제도개선
 - 3. 인권옹호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 권고 등 중요한 사항
 - 4. 기타 학생의 인권 신장을 위하여 교육감 또는 인권옹호관이 제안한 사항
- ⑥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5항 각 호의 기능 중 일부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41조(전라북도 학생참여위원회)

- ① 학생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라북도학생참여위원회(이하 ‘학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학생위원회는 교육감이 위촉하는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학생위원은 공개적으로 모집한 학생 중에서 추천을 통하여 선발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소수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10명 이내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절차를 거쳐 위촉할 수 있다.
- ④ 학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교육감과 인권옹호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1.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2. 학생인권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3. 학생인권실천계획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학생인권 실현과 학생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⑤ 교육감은 지역교육지원청별로 학생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2조(학생인권교육센터)

- ① 학생인권교육을 위하여 인권옹호관을 장으로 하는 학생인권교육센터를 둔다.
- ②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대해서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3조(인권옹호관)

- ①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과 구제 및 인권교육을 위하여 인권옹호관을 둔다. 그 구성 및 권한에 대해서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② 인권옹호관은 상임 1인으로 하며, 학생인권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이 임명한다.
- ③ 인권옹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④ 인권옹호관은 학생의 인권에 대한 「대한민국헌법」과 관련 법령, 그리고 국제연합의 「아동의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의 정신에 따라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44조(검직금지)

- ① 인권옹호관은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교직원을 겸할 수 없다.
- ② 인권옹호관은 전라북도교육청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이나 단체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

제45조(인권옹호관의 직무)

- ① 인권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 1.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 2.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와 직권조사
 - 3.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과 조치 요구
 - 4.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 등의 연구·개발
 - 5.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
 - 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내용에 대한 공표
 - 7. 학생 인권교육
 - 8. 그 밖에 위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제46조(사무국)

- ① 인권옹호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는 기획·정책의 수립, 인권침해의 조사 및 구제, 인권교육을 위한 조직과 인원을 둔다.
- ③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7조(규정 개정 심의위원회)

- ① 학교는 이 조례에 합치하도록 학교생활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이하 '규정 개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 ②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교직원, 보호자, 학생대표로 구성하며,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 ③ 교육감은 규정개정의 방향, 절차,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제4장 학생인권상담 및 인권침해의 구제

제48조(지역교육지원청별 상담실)

- ① 각 지역교육청마다 학생인권상담실을 둔다.
- ② 제1항의 상담실은 학생의 인권에 관한 상담을 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인권옹호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49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과 조치)

- ①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인권옹호관에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구제신청을 받은 인권옹호관은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 후 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학교와 교직원에게 시정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권옹호관은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1. 제삼자가 한 조사청구에 대해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조사나 상담이 청구될 당시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 조사청구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4. 그 밖에 인권옹호관이 상담 및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인권옹호관이 제2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⑤ 인권옹호관으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은 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학교와 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인권옹호관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권옹호관의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50조(조사)

- ① 인권옹호관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과 학교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교직원과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할 수 있다.
- ② 인권옹호관은 제49조제1항의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방문조사를 할 수 있다.
- ③ 교직원과 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자료요구와 질의, 제2항의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5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사항과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3. 7. 12 조례 제37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 ① 교육감은 인권옹호관에 대한 제도가 정비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인권옹호관을 비상임으로 할 수 있다.
- ② 이 조례가 공포된 이후 6개월 이내에 학교는 제47조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9

학업성적관리규정

2020 인월중학교 학업성적관리 규정

I 목적

본 지침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2018.1.31.)” [교육부훈령 제243호, 2018.1.31.]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을 제시함으로써 각 교과에서 세부적인 학업성적관리규정 제정의 기초가 되게 하고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적정을 기하고자 한다.

II 방침

1.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 등을 제고하여,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한다.
2.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각 교과협의회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기능을 강화한다.
3. 교과학습발달상황의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유의미한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4. 수행평가 반영비율은 **과목별 학기 단위 성적 총점 40% 이상**으로 하고,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제 제출형 방식의 수행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며, 학생 중심 수업에 맞는 과정중심형 수업밀착 평가를 적극 권장한다.
※ 과목 특성상 수업활동과 연계하여 수행평가만으로 평가가 필요한 경우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지필평가 없이 수행평가만으로 실시할 수 있다.
5. **지필평가의 횟수는 학기당 2회**로 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학교의 교과협의회에서 정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교육부 훈령 195호) 1회만 실시할 수 있다.
가. 수행평가 반영 비율이 학기단위 과목 총점의 70% 이상인 교과
나. 시수가 적은 교과(1단위)
6. 자유학기의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는 학교별로 자유학기의 취지에 맞는 평가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자유학

- 기에 이수한 과목의 '성취도(수강자수)'란에 'P'로 입력하고,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란은 '공란'으로 둔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모든 과목에 대해 각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활동 내역 등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또한, 학생이 자유학기에 이수한 체육·예술(음악/미술) 교과(군)의 과목은 '성취도'란에 'P'를 입력하고, '특기사항'란에는 모든 과목에 대해 각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실기능력, 교과적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7. 성적관리의 부적정 사례 및 비교육적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연수 및 확인 점검을 강화하여 평가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 확보에 노력한다.
 8.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 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제8조 2항에 따라 학교 내 각종 평가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9. 학업성적관리와 관련하여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교 실정에 맞게 학교별 교과협의회의 협의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Ⅲ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및 교과협의회 구성·운영

1.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구성 및 임무

- 가. 위원장은 학교장으로 하며,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나. 부위원장은 교감으로 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을 대행한다.
- 다. 위원은 연구부장, 평가계로 구성되며 본교의 학업성적관리 관련 업무에 대하여 심의한다.
- 라.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사안 발생 시 수시로 개최하며, 심의 사항은 학교장의 최종 결정으로 확정하여 교무회의에 공개한다.

2.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운영

- 가. 교육평가 및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대한 교직원 연수를 강화하고 평가에 대한 전문성과 책무성을 높인다.
- 나. 학업성적 및 평가관리의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상시 운영한다.
- 다.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내용은 관련 자료와 함께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하여 보관하고, 심의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관련자료 및 회의록 스캔하여 첨부)를 받아 시행한다.

3.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내용

- 가.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제·개정
- 나. 각 교과협의회(학년협의회)에서 제출한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영역·방법·횟수·기준·반영비율 등과 성적처리방법 및 결과의 활용
- 다.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의 평가 기준 및 방법

라. <삭제>

마.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 제고 방안 (평가의 기준.방법.결과의 공개 및 홍보 등)

바.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방법 및 기재내용, 자료의 정정 등에 관한 사항

사. 기타 학교 학업성적관리 관련 업무

4. 교과협의회(소규모 학교 학년협의회) 구성 및 운영

가. 교과협의회는 교과별로 구성하되 소규모 학교는 교과군 별 또는 관내 학교 동일 교과, 학년협의회로 구성할 수 있다.

나. 교과협의회(학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추진한다.

1)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 계획 수립

2) 교과목별 성취기준 및 성취수준 확정

3)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에서 벗어난 문항 유무 상호 점검

4) 채점 및 평가 결과 분석.환류를 통한 교수.학습 방법 개선

5) 기타 교과 관련 업무

다. 교과협의회(학년협의회)는 상시 운영(학기당 2회 이상)하고 협의록을 비치한다.

교과협의회 조직

교 과	교과부장	교 과 담 당 교 사
국어/영어/사회/한문	정은숙	박진혁, 김종구, 황순희
수학/과학/정보	김경미	임정일, 이상웅, 조경준
도덕/기술.가정/음악/미술/체육	천혜련	이승미, 이선숙, 천개일, 김규표

Ⅳ 평가의 목표 · 내용 및 방법

1. 교과학습의 평가(지필평가 및 수행평가)는 모든 학생들이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교육의 과정으로 실시하며, 학생의 교육 목표 도달도를 확인하고 교수·학습의 질을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또한, 교수·학습과 평가활동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며, 평소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과 기능에 대하여 학생 개개인의 교과별 성취기준·평가기준(2009 개정 교육과정 '역사'는 '성취기준 단위 성취수준')에 따른 성취도와 학습 수행과정을 평가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2. 성취기준이란 학생들이 교과를 통해 배워야 할 내용과 이를 통해 수업 후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능력을 결합하여 나타난 활동의 기준을 의미하며, 학생의 특성·학교 여건 등에 따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을 분석하여 교과협의회를 통해 재구조화할 수 있다.

3. 각 교과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평가 영역·요소·방법·횟수·반영비율, 수행평가 세부기준(배점) 등은 각 학교·교과지도의 형편을 고려하여 교과협의회에서 정하고, 이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성적처리방법 및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도 교과협의회에서 정하고, 이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4. 확정된 평가 계획은 정보공시 등을 통해 학생 및 학부모에게 공개한다. 또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변경사항을 확정하고 평가 실시 전에 재공지한다.
5.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내 각종 평가 및 교내대회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지 않도록 한다.
6. 모든 평가(지필평가, 수행평가)는 사전에 교직원 연수를 통하여 충분히 안내하고 유의사항 등 평가 전반 내용에 대하여 교직원간에 충분히 논의한다.
 - ※ 중학교 3학년 2학기 평가(지필평가, 수행평가)는 후기고 내신성적산출 기준일 이전까지 입력 마감한다.
7. 지필평가 고사원안, 문항정보표의 양식과 작성 방법 등을 학교 실정에 맞게 일치시켜 안내하고, 결재과정에서 확인하며, 일치되지 않는 부분은 시정하도록 한다.
8. 고사 시에는 문항정보표, 채점기준표 등을 작성하여 고사 개시 7일전까지 학업성적관리부위원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9. 고사시간표는 고사 개시일 2주 전에 발표함을 원칙으로 한다.

V 지필평가

1. 평가문항 출제

- 가. 평가문항 출제에 관한사항(출제범위, 시험시간, 공동출제, 공동채점, 기타 등)은 교과협의회를 통하여 반드시 협의하고, 그 결과를 협의록으로 남긴다. 또한 평가 운영 기간(출제, 시행, 채점 등) 중에는 교무실, 인쇄실, 평가관리실 등을 학생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 관리한다.
- 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지필평가 관련 보안규정과 시험지 유출시 처리기준을 마련하고, 평가 문제는 평가의 전 과정에서 보안이 유지되도록 철저히 관리한다.([별지3],[별지4])
- 다. 평가문제는 타당도·신뢰도·객관도 및 변별도를 높이도록 출제하고, 평가의 영역·내용 등을 포함한 문항정보표 등을 작성하여 활용하되, 교사별로 문항수를 분담하여 출제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동일 학년·교과를 2명 이상의 교사가 담당할 때에는 담당 교사 간 **협의를 통한** 공동출제로 학급간의 성적차를 최소화한다.
- 라. 모든 출제 원안에는 문항별 배점을 표시하여 가급적 100점 만점으로 출제하고 문항의 수준별 난이도의 배열에 유념한다. 또한 평가의 변별력을 최대한 높이고 동점자가 가능한 한 생기지 않도록 문항수를 적절하게 출제하고, 문항당 배점(소수점 배점 등) 및 채

점기준 세분화에 유의한다.

마. 모든 출제는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1) 시판되는 참고서(자습서)의 문제를 전재하거나 일부 변경하여 출제하는 일
- 2) 전년도에 출제된 문제를 그대로 다시 출제하는 일
- 3) 추측에 의하여 정답을 쓸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는 일
- 4) 객관성의 결여로 정답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를 출제하는 일
- 5) 교사원안 출제 후 출제된 문제를 수업 중에 지도하거나 문제의 정답을 암시하는 일
- 6) 사전에 출제 예상 문제를 유인물로 배부하거나 가르쳐 주고 출제하는 일
- 7) 평가 관련 자료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하여 평가 관련 자료가 사전에 유출되는 일

바. 지필평가 중 서답형 문제 비율은 30% 이상으로 한다.

(각 교과협의회에서 정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30% 이상으로 결정하여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반영함)

※ 서답형 : 기존의 주관식 문제를 말하고 단답형, 완성형, 서술형, 논술형 등이 있음

사. 서술(논술)형 문항은 국어, 사회(역사포함), 수학, 과학, 영어 교과의 경우 지필평가 총 배점의 20% 이상, 도덕 교과는 지필평가 총 배점의 10% 이상 출제하며, 이외의 교과는 가급적 서술(논술)형 평가 문항을 포함하여 출제한다.

다만, 지필평가에서 실시하기 곤란한 논술형 평가를 수행평가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배점은 학기당 과목별 총점의 20% 이상으로 한다. 이러한 경우에 지필평가에서는 서답형(단답형, 완성형)의 비율을 교사별 총 배점의 20% 이상으로 한다. 이때 채점 기준표(답안, 유사답안, 부분점수 등 점수 부여 방법 등)를 완전하게 갖추어 정확한 채점이 되도록 한다.

※ 학기단위 지필평가에서 서술(논술)형 배점은 총 배점의 20%(평균)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예) 1차지필 서술형 20% + 2차지필 서술형 20%,
1차지필 서술형 10% + 2차지필 서술형 30%,
1차지필 서술형 0% + 2차지필 서술형 40%

아. 서답형 문제는 문항정보표에 문항별로 채점 기준을 명시하되, 문항당 배점을 다양화하고 부분점수 부여에 유념한다.

자. 문항정보표는 인월중학교의 양식(엑셀)을 이용하여 내용영역, 성취기준(내용 혹은 성취 기준 번호), 난이도, 정답, 문항별 배점 등을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채점기준표 등은 학교 양식을 제작하여 사용한다.

차. 과목별로 제출한 교사원안, 문항정보표, 채점기준 등은 평가담당교사, 평가담당부장, 교감 등이 철저히 이상 유무를 확인·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해당 교사에게 통보하고 수정·제출하도록 한다.

카. 과목별·평가 영역별 비율과 평가 방법은 전라북도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참조하여 교과협의회에서 정하고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하여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반영한 후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과목별 평가영역 비율**

(100%=지필평가 반영비율+수행평가 반영비율)

국어과

1) 1학기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40%		60%					
평가영역	읽기. 국어지식. 문학 2차고사		말하기	듣기	쓰기	독서 쓰기	이해 활동 ①	이해 활동 ②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영역만점	60점	40점	10점	10점	10점	10점	10점	10점
반영비율	24%	14%	10%	10%	10%	10%	10%	10%
기본점수	0점		4점	4점	4점	4점	2점	2점

2) 2학기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60%				40%			
평가영역	읽기. 국어지식. 문학				말하기	듣기	쓰기	독서쓰기
	1차고사(30%)		2차고사(30%)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영역만점	60점	40점	60점	40점	10점	10점	10점	10점
반영비율	18%	12%	18%	12%	10%	10%	10%	10%
기본점수	0점		0점		4점	4점	4점	4점

도덕과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30%		70%	
평가영역	2차고사(30%)		행동(40%) (주제토론, 프로젝트)	가치(30%) (가치실천, 가치 탐구, 과정)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영역만점	70점	30점 (10점)	40점	30점
반영비율	21%	9%	40%	30%
기본점수	0점		16점	12점

● 사회과 - 1학년

1) 1학기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40%		60%		
평가영역	2차고사(40%)		워크북	과제 해결	공간 이해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영역만점	70점이하	30점이상 (20점이상)	20점	20점	20점
반영비율	28%이하	12%이하	20%	20%	20%
기본점수	0점		8점	8점	8점

2) 2학기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30%		70%			
평가영역	2차고사(30%)		워크북	과제 해결	주제탐구	서술형 형가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영역만점	70점이하	30점이상 (20점이상)	10점	20점	20점	20점
반영비율	21%이하	9%이하	10%	20%	20%	20%
기본점수	0점		4점	8점	8점	8점

● 사회과 - 3학년

1) 1학기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40%		60%		
평가영역	2차고사(40%)		워크북	과제 해결	주제 탐구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영역만점	70점이하	30점이상 (20점이상)	20점	20점	20점
반영비율	28%이하	12%이하	20%	20%	20%
기본점수	0점		8점	8점	8점

2) 2학기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30%		70%			
평가영역	2차고사(30%)		워크북	과제 해결	주제 탐구	서술형 형가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영역만점	70점이하	30점이상 (20점이상)	10점	20점	20점	20점
반영비율	21%이하	9%이하	10%	20%	20%	20%
기본점수	0점		4점	8점	8점	8점

● 역사과 - 2, 3학년

1) 1학기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40%		60%		
평가영역	2차고사(40%)		워크북	과제 해결	연표 제작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영역만점	70점이하	30점이상 (20점이상)	20점	20점	20점
반영비율	28%이하	12%이하	20%	20%	20%
기본점수	0점		8점	8점	8점

2) 2학기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60%				40%		
평가영역	1차고사(30%)		2차고사(30%)		워크북	연표 제작	과제 해결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영역만점	70점이하	30점이상 (20점이상)	70점이하	30점이상 (20점이상)	10점	20점	10점
반영비율	21%이하	9%이상	21%이상	9%이상	10%	20%	10%
기본점수	0점		0점		4점	8점	4점

● 수학과

1) 1학기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40%				60%	
평가영역	1차고사(0%)		2차고사(40%)		배움평가 (포트폴리오, 개념평가, 서술평가, 구술평가 등)	역량평가 (단원보고서, 프로젝 트, 5분프로젝트, 수업 관찰일기)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영역만점	0점	0점 (0점)	70점이하	30점이상 (20점이상)	30점	30점
반영비율	0%	0%	28%이하	12%이상	30%	30%
기본점수	0점		0점		12점	12점

2) 2학기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50%				50%	
평가영역	1차고사(25%)		2차고사(25%)		배움평가 (포트폴리오, 서술평가, 구술평가 등)	역량평가 (단원보고서, 프로젝 트, 5분프로젝트, 수 업관찰일기)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영역만점	70점이하	30점이상 (20점이상)	70점 이하	30점이상 (20점이상)	30점	20점
반영비율	17.5% 이하	7.5%이상	17.5% 이하	7.5%이상	30%	20%
기본점수	0점		0점		12점	8점

● 과학과 - 1, 2학년

1) 1학기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40%		60%		
평가영역	1차고사(0%)	2차고사(40%)		수업밀착형평가	융합평가
		선택형	서답형		
영역만점		70점이하	30점이상	40점	20점
반영비율		28%이하	12%이상	40%	20%
기본점수		0점		16점	8점

2) 2학기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60%				40%		
평가영역	1차고사(30%)		2차고사(30%)		수업밀착형 평가	자유 탐구	융합평가
	선택형	서답형	선택형	서답형			
영역만점	70점이하	30점이상	70점이하	30점이상	20점	10점	10점
반영비율	21%이하	9%이하	21%이하	9%이상	20%	10%	10%
기본점수	0점		0점		8점	4점	4점

● 과학과 - 3학년

1) 1학기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40%		60%		
평가영역	2차고사(40%)		실험 보고서	자유 탐구	융합평가
	선택형	서답형			
영역만점	70점이하	30점이상	30점	20점	10점
반영비율	28%이하	12%이상	30%	20%	10%
기본점수	0점		12점	8점	4점

2) 2학기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60%				40%		
평가영역	1차고사(30%)		2차고사(30%)		실험 보고서	자유 탐구	융합평가
	선택형	서답형	선택형	서답형			
영역만점	70점이하	30점이상	70점이하	30점이상	20점	10점	10점
반영비율	21%이하	9%이상	21%이하	9%이상	20%	10%	10%
기본점수	0점		0점		8점	4점	4점

● 영어과

평가방법	지 필 평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30%		70%			
평가영역	2차고사(30%)		듣기	쓰기	말하기	수업 참여도
	선택형	서답형(서술형)				
영역만점	70점	30점 (20점이상)	20점	20점	20점	10점
반영비율 (100%)	21%	9%	20%	20%	20%	10%
기본점수	0점		8점	8점	8점	4점

● 기술·가정과

1) 1학기

평가방법	지 필 평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40%				60%		
평가영역	1차고사(0%)		2차고사(40%)		프로 젝트1	프로 젝트2	포트 폴리오
	선택형	서답형	선택형	서답형			
영역만점	-	-	70점이하	30점이상	25점	25점	10점
반영비율	-	-	28%이하	12%이상	25%	25%	10%
기본점수	-		0점		12점	12점	4점

2) 2학기

평가방법	지 필 평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30%				70%			
평가영역	1차고사(0%)		2차고사(30%)		프로 젝트1	프로 젝트2	프로 젝트3	포트 폴리오
	선택형	서답형	선택형	서답형				
영역만점	-	-	70점이하	30점이상	20점	20점	20점	10점
반영비율	-	-	21%이하	9%이상	20%	20%	20%	10%
기본점수	-		0점		8점	8점	8점	4점

꿈과 열정이 살아 숨 쉬는 인월인

● 체육과

(1) 1학기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0%		100%			
평가영역	1차고사(0%)	2차고사(0%)	도전활동	경쟁활동	표현활동	역량평가
영역만점			30점	30점	25점	15점
반영비율			30%	30%	25%	15%
기본점수			12점	12점	10점	6점

(2) 2학기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0%		100%			
평가영역	1차고사(0%)	2차고사(0%)	건강활동	경쟁활동		역량평가
				경쟁활동1	경쟁활동2	
영역만점			25점	30점	30점	15점
반영비율			25%	30%	30%	15%
기본점수			10점	12점	12점	6점

● 음악과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행평가			
반영비율	0%				100%			
평가영역	1차고사		2차고사		표현		감상	생활화
	선택형	서답형	선택형	서답형	가창	기악		
영역만점					30점	30점	20점	20점
반영비율					30%	30%	20%	20%
기본점수	0점		0점		12점	12점	8점	8점

● 한문과 -1학년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30%				70%		
평가영역	-		2차고사(30%)		캐릭터 로직 채색하기	한자명함 만들기	한자쓰기
	-	-	선택형	서답형			
영역만점	-	-	70점	30점	25점	25점	20점
반영비율	-	-	21%	9%	25%	25%	20%
기본점수	-		0점		10점	10점	8점

● **한문과 -3학년**

1) 1학기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30%				70%		
평가영역	-		2차고사(30%)		사자성어로 4행시 짓기	옥편 활용하여 한자 찾기	한자쓰기
	-	-	선택형	서답형			
영역만점	-	-	70점	30점	25	25	20
반영비율	-	-	21%	9%	25%	25%	20%
기본점수	-		0점		10점	10점	8점

2) 2학기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30%				70%		
평가영역	1차고사(30%)		-		오륜책 만들기	호짓기	한자쓰기
	선택형	서답형	-	-			
영역만점	70점	30점	-	-	25	25	20
반영비율	21%	9%	-	-	25%	25%	20%
기본점수	0점		-		10점	10점	8점

● **미술과**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0%				100%		
평가영역	1차고사(0%)		2차고사(0%)		표현1	표현2	체험 및 감상
	선택형	서답형	선택형	서답형			
영역만점					35점	35점	30점
반영비율					35%	35%	30%
기본점수	0점		0점		14점	14점	12점

● 정보과

(1) 1학기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40%				60%	
평가영역	1차고사(0%)		2차고사(40%)		미래사회 변화 조사	생활 속 정보 구조화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영역만점	-	-	70점	30점	30점	30점
반영비율	-	-	28%	12%	20%	30%
기본점수	0점		0점		12점	12점

(2) 2학기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30%				70%		
평가영역	1차고사(0%)		2차고사(30%)		알고리즘	프로그래밍	포트폴리오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영역만점	-	-	70점	30점	20점	30점	20점
반영비율	-	-	21%	9%	20%	30%	20%
기본점수	0점		0점		8점	12점	8점

* 정기고사별 고사실시 과목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 학 기	1차고사	미 실시		
	2차고사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영어, 기술·가정, 한문	국어, 도덕, 역사, 수학, 과학, 영어 기술·가정, 정보	국어, 사회, 역사, 수학, 과학, 영어, 기술·가정, 한문
2 학 기	1차고사	자유학기	국어, 역사, 수학, 과학	국어, 역사, 수학, 과학, 한문
	2차고사		국어, 도덕, 역사, 수학, 과학, 영어 기술·가정, 정보	국어, 사회, 역사, 수학, 과학, 영어 기술·가정
수행평가 100%인 과목		체육, 음악, 미술	체육, 음악, 미술	체육, 음악, 미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1학기 1차고사는 과정중심평가로 대체함.

V 출결 상황 관리

1. 수업일수

- 가.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이 정한 학년별 학생이 연간 총 출석해야 할 일수를 말한다.
- 나. 학적변동(면제·유예·전출 등) 당일까지를 수업일수에 산입한다.
- 다. 학적 변동 전·후에 중복 일수가 있는 경우 새로 학적을 부여받은(재취학·편입학·전입학 등) 일수만 수업일수로 계산한다.
- 라.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수업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수업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수업일수는 제외한다.
- 마. 전입학 학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수업일수가 당해 학교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미만이 될 경우에는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수업일수 부족으로 수료 또는 졸업이 인정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당해 학년도 전입학이 불가능하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0조 제2항 참조)

2. 출석상황 조사

학생의 출석상황조사는 조회 시와 종례 시 및 매 수업 시간에 조사한다.

3. 결석

가. 결석일수의 산정

- 1)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 2)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예: 2학년 4.15 유예 후 다음해 2학년 3.20 재취학일 경우, 원적교의 3.20~4.15 사이의 결석일수는 삭제함)

나.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4)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 5)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제6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 6)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꿈과 열정이 살아 숨 쉬는 인월인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 형제, 자매, 부, 모	1
입 양	○ 학생 본인	20
사 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및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 14조제3항에 따른 학교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 9) 경찰청 「소년업무규칙」제31조부터 제33조에 따른 경찰청관서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 10)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월 1일 결석)에는 위 7)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보아 출석으로 인정한다.

※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 시(지각, 조퇴, 결과 포함) 출석 인정을 위해 담임교사 의견서, 학부모 의견서 등을 요구하는 것 외의 의료적 확인(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 생리인정결석 시 지각, 조퇴, 결과 3회를 1일로 산정하여 출석을 인정한다.

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

-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 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3)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 4)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한 경우에 한하여 질병결석으로 인정

- 5)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만성질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4)~5)의 경우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라. 미인정 결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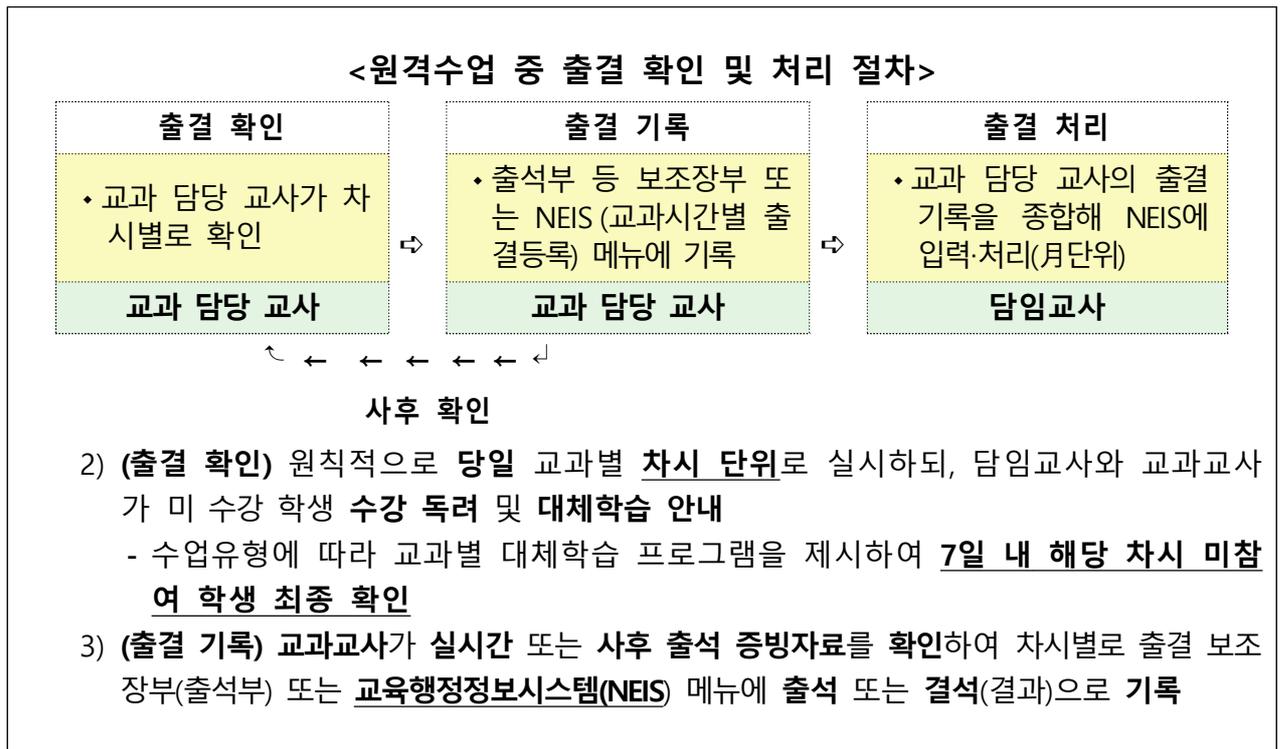
-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 4)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 기관 출석,체포,도피,구속(구인, 구금, 구류 포함), 교도소 수감 등)
- 5)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 6)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마. 기타 결석

- 1) 부모·가족봉양, 가사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2)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 3)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바. 코로나 19로 인한 원격수업 출결처리 방안

- 1) 원격수업 중 출결 확인 및 처리 절차



4) (출결 처리) 교과교사의 출결 기록(출석부 등)과 학생이 제출한 결석 사유 증빙자료 확인 후 담임교사가 종합하여 월(月)단위 또는 등교개학 후 출결(마감) 처리 가능

5) 원격수업 유형별 출석 확인 방법

<원격수업 유형별 출석 확인 방법>

수업 유형	출석 확인 방법							
	LMS 활용 방법*					기타(대체확인)		
	학습 시작일	진도율	접속기록 (출석체크)	학습 시간	산출물 탑재	SNS	메시지 유선	증빙 자료**
콘텐츠 활용	○	○	○	○	○	○	○	○
과제 수행			○		○	○	○	○
확인(인정) 기간	당일 또는 1주일(7일)내, 등교 수업 후 확인							

※ 원칙: 교과별로 출석 확인 방법 모두가 확인되어야 출석 인정

※ 완화된 기준: 교과별로 상황에 따라 출석 확인 방법 중 하나 이상만 확인되어도 출석 인정

* LMS: e학습터, ebs클래스, 네이버밴드, 카카오톡 등

** 증빙자료: 대체학습 과제물, 학부모 확인서, 입원치료(격리)통지서 등

사. 코로나 19로 인한 등교중지 대상 학생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한 출결처리는 'Ⅷ.인정점 부여'의 '4.-마.'항을 따른다.

4. 지각·조퇴·결과 (단위학교에서 정한 기준은 모든 교사가 일관되게 적용)

가. 지각 :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08:40)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나. 조퇴 :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08:40)과 하교시각(16:25) 사이에 하교한 경우

* 단, 학교교육과정운영상 등교 및 하교 시각은 변동될 수 있음

다. 결과 :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라. 위의 2. 나.의 각 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마. 지각, 조퇴는 학급 담임의 허가를, 결과는 교과담임과 학급담임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바. 지각·조퇴·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미인정,기타로 처리한다.

사. 같은 날짜에 지각·조퇴·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미인정-질병-기타의 순서로 처리하되, 동일한 사유로 인해 발생한 사항은 수업 결손이 많은 것으로 처리한다.

아.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자.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각 횟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 지각·조퇴·결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고, 이에 대한 안내를 학생·학부모에게 공지한다. 또한 이의 적용은 **단위학교 전체 교사가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한다.

VI 포상

1. 포상의 기준

해당 분야에서 그 실적이 현저하게 뛰어나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2. 포상 시기

졸업식, 학년말, 학기말, 기타 교내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수여한다.

3. 포상의 종류

- 가. **교과우수상** : 당해학기 학기말 성적처리 결과 각 과목 1위인 자, 단 동점자가 있는 경우 모두 시상한다.
- 나. **1년 개근상** : 1년 동안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없는 자
- 다. **모범상** : 모범부문에서 뚜렷한 실적이 있거나 평소의 모범적인 실천에 대한 인정받은 자로서 학급 담임 교사 및 지도 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 라. **선행상** : 선행부문에서 뚜렷한 실적이 있거나 평소의 선행에 대한 실적을 인정받은 자로서 학급 담임 교사 및 지도 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 마. **효행상** : 효행 부문에서 뚜렷한 실적이 있거나 평소의 효행에 대한 실적을 인정받은 자로서 학급 담임 교사 및 지도 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 바. **봉사상** : 봉사실적이 우수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사. 졸업예정자의 포상
 - 1) **학교장상** : 3학년 2학기말까지(전학년 전학기)의 내신성적 석차연명부 1위인 자
 - 2) **3년 개근상** : 3년 동안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없는 자
 - 3) **3년 정근상** : 3년 동안 결석 3일(지각, 결과, 조퇴 3회는 결석1회) 미만인 자
 - 4) **1년 개근상** : 1년 동안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없는 자
(단, 3년 개·정근상 수상자는 제외)
 - 5) **공로상** : 졸업예정자 중에서 3년간의 재학 중 회장, 부회장 또는 학생자치회 임원 중 자치활동에 공로가 있는 자로 담당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 6) **선행상** : 충·효·예·선 부문에서 뚜렷한 실적이 있거나 평소의 선행에 대한 실적을 인정받은 자로서 학급 담임 교사 및 지도 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 7) **기능상** : 졸업예정자 중에서 3년간의 재학 중, 체육, 음악, 미술, 문예, 과학 등의 분야의 대회에서 시단위 금상 또는 도단위 이상 대회(직속기관 주최 대회)에서 입상한 자로서 학급 담임교사 또는 지도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 8) **봉사상** : 봉사실적이 우수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아. 기타 교내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린 개인 및 학급에 대하여 수시 시상할 수 있다.
단. 생활기록부 기재시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 1) 학년초 학교교육계획에 연간 대회 및 수상내용 등의 실시계획(수상비율, 시행월, 담당부서, 공개방식 등)을 기재하되, 학년초 학교교육계획에 교내의 모든 수상을 반드시 취합하여 제시한다.

2) 학년초 학교교육계획에 의거하여 실시한 교내상의 경우에 한하여 수상경력에 입력한다. 단, 교육목표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학기초(학기 시작 후 30일 이내)에 연간수상계획을 변경하여 학교장의 결재후, 변경계획을 공개한 경우의 수상실적 내용만 입력한다.

부 칙

1. 이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은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세부적인 각 교과별 평가규정 정하여 활용한다.
3.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하여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학업성적관리 매뉴얼에 따른다.

고입 내신 성적 산출에 따른 가산점 부여 계획

순	유 형	세부 유형	기 준	점 수
1	학교장 표창자	행동 덕목	효행상, 선행상, 모범상, 봉사상, 예절상 등의 인성과 관련한 학교장 표창을 받은 자	표창별 0.5점
2	자율 활동	유공자	학급 실장·부실장, 학생회장 학생회부회장 으로 한 학기 이상 유공이 지속된 자 (동일 유공에 대해 학년별로 1회 점수 부여)	유공 항목별 0.5점 우수자 표창항목별 0.5점
		우수자	교과와 관련 없는 각종 자율활동으로 인한 학교장 표창을 받은 자	
3	동아리 활동	유공자	동아리활동반 기장으로 한 학기 이상 유공이 지속된 자 (동일 유공에 대해 학년별로 1회 점수 부여)	
		우수자	각종 동아리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장 표창을 받은 자	
단, 동아리 활동은 교내 모든 동아리활동을 포함한다.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학교스포츠클럽, (학교에 등록된)교내자율동아리)				
4	진로활동 우수자		각종 진로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장 표창을 받은 자	
5	기타 학교활동유공자		학교별 특색활동과 관련한 유공자 (동일 유공에 대해 학년별로 1회 점수 부여)	
6	가산점 부여 제외자		학교 명예를 훼손시켰거나 생활교육 규정에 따른 학교생활교육 위원회 및 교권보호위원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교내 봉사 이상의 징계 및 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 학년도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음.	

* 2021학년도 전라북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중학교 내신성적 산출 지침을 근거로 함.

2020 인월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규정

I 목적

본 지침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2020.1.6.)” [교육부훈령 제321호]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을 제시함으로써 각 교과에서 세부적인 교과 성적관리규정 기초가 되게 하고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적정을 기하고자 한다.

II 방침

1. 교과학습의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 등을 제고하여,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한다.
2. 교과학습의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각 교과협의회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기능을 강화한다.
3.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과 전라북도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의거한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4. 교과학습의 평가는 지필평가(수행평가 100% 교과는 제외)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유의미한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5. 수행평가 반영비율은 **과목별 학기 단위 성적 총점 40% 이상**으로 하고, 정규교육과정 외에 학생이 수행한 결과물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는 과제형 수행평가는 **실시하지 않으며**, 학생 중심 수업에 맞는 과정중심형 수업밀착 평가를 실시한다.
 ※ 고등학교의 실험·탐구·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과목과 전문교과Ⅱ 및 체육·예술(계열) 교과(군)의 실기를 중심으로 하는 과목 등 특수한 경우는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지필평가 없이 수행평가만으로 실시할 수 있다.
6. **지필평가의 횟수는 학기당 2회**로 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학교의 교과협의회에서 정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1회만 실시할 수 있다.
 - 가) 수행평가 반영 비율이 학기단위 과목 총점의 70% 이상인 교과
 - 나) 시수가 적은 교과(1단위)
7.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 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제8조 제3항에 따라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내 각종 평가 및 교내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8.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에 부모(친인척) 교직원이 재직하는 경우, 자녀가 재학 중인 학년의 출제, 검토, 인쇄, 채점, 평가 관리 등 자녀와 관련한 '평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소규모 학교 등)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평가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9. 부정행위 예방 대책과 부정행위자(협조자 포함) 처리 절차 및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학기초에 학생, 학부모, 교원에 안내한다. 부정행위 적발 시 절차 및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한다. (부정행위의 유형과 예방조치사항은 [별지기]에 의함.)
10. 성적관리의 부적정 사례 및 비교육적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연수 및 확인 점검을 강화하여 평가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 확보에 노력한다.
11. 학업성적관리와 관련하여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과협의회의 협의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Ⅲ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및 교과협의회 구성·운영

1.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구성 및 임무

- 가.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학교생활기록부의 전산처리 및 관리, 이에 따른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둔다.
- 나.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교장으로 하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다. 부위원장은 교감으로 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 위원장을 대행한다.
- 라. 위원은 교무기획부장, 연구기획부장, 교육과정운영부장, 생활기록부장, 3학년부장, 평가계로 구성되며 본교의 학업성적관리 관련 업무에 대하여 심의한다.
- 마.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사안 발생 시 수시로 개최하며, 심의 사항은 학교장의 최종 결정으로 확정하여 교무회의에 공개한다.
- 바. 위원의 임기는 학년도를 기준으로 매년 3월부터 차년도 2월까지로 한다.

2.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운영

- 가. 교육평가 및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대한 교직원 연수를 강화하고 평가에 대한 전문성과 책무성을 높인다.
- 나. 학업성적 및 평가관리의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상시 운영한다.
- 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인원의 과반 출석으로 개의한다.
- 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내용은 관련 자료와 함께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하여 **위원들의 확인을 받아 보관하고**, 심의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관련자료 및 회의록 스캔하여 첨부**)를 얻은 후 시행한다.

3.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내용

- 가.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제.개정
- 나. 각 교과협의회에서 제출된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영역.방법.횟수.기준.반영비율 등과 성적처리방법 및 결과의 활용
- 다.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의 평가 기준 및 방법
- 라.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 제고 방안 (평가의 기준.방법.결과의 공개 및 홍보, 평가결과 후속조치)
- 마.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방법 및 기재내용 등에 관한 사항
- 바.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객관성 여부 등을 포함한 정정에 관한 사항
- 사. 교과목별 기준성취율(원점수)에 따른 분할점수 산출 방식 등에 관한 사항
- 아. 기타 학교 학업성적관리 관련 업무

4. 교과협의회(소규모 학교 학년협의회) 구성 및 운영

- 가. 교과협의회는 교과별로 구성하되 소규모 학교는 교과군 별 또는 관내 학교 동일 교과, 학년협의회로 구성할 수 있다.
- 나. 교과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추진한다.
 - 1)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 계획 수립
 - 2) 교과목별 성취기준 및 성취수준 확정
 - 3)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에서 벗어난 문항 유무 상호 점검**
 - 4) 채점 및 평가 결과 분석.환류를 통한 교수.학습 방법 개선
 - 5) 기타 교과 관련 업무
- 다. 교과협의회는 상시 운영(학기당 2회 이상)하고 협의록을 비치한다.

교과 협의회 조직

구분 교과군	교 과	교과부장	교 과 담 당 교 사
1	국어 / 영어 / 일어 / 사회·역사	김현영	김하은, 박지영, 이현정, 조경석, 최유라
2	수학 / 과학	장익성	임정일, 이상웅
3	기술.가정/음악/ 미술/체육/도덕	천혜련	서미희, 이선숙, 이승미, 천개일

Ⅳ 과목별 평가영역 비율

* 코로나 19 온라인 개학으로 인한 과목별 학생 평가비율은 2020학년도 인월고 학업성적 관리규정에 제시한 다음의 항목에 따라 위와 같이 실시한다.

※ 코로나 19로 인한 원격수업 장기화 및 등교 개학 이후 원격수업 재개 등의 우려로 인하여 2020학년도 1학기 학생평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행평가 반영비율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단, 수행평가 반영비율 조정은 2020학년도 1학기에 한정된다. 수행평가 반영비율 조정은 의무 사항이 아니며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수행평가 반영비율은 교과협의회를 통해 조정된 뒤 학교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조정된 비율로 실시할 수 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과목별 수행평가 반영 비율	학기단위 과목 총점의 40% 이상	학기단위 과목 총점의 20% 이상
지필평가 1회만 실시할 수 있는 수행평가 반영 비율	학기단위 과목 총점의 70% 이상	학기단위 과목 총점의 60% 이상

과목별 평가영역 비율 (100%=지필평가 반영비율+수행평가 반영비율)

● 국어과

과 목 명	국어 (1학기)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80%				20%	
평가영역	1차고사(40%)		2차고사(40%)		표현	이해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영역만점	70점 이하	30점 이상 (20점 이상)	70점 이하	30점 이상 (20점 이상)	10점	10점
반영비율	28%	12%	28%	12%	10%	10%
기본점수	0점		0점		4점	4점
출제 및 채점	2인 이상의 교사가 담당할 경우, 공동 출제 및 공동 채점				2인 이상의 교사가 담당할 경우, 공동 출제 및 공동 채점	

과 목 명	국어 (2학기)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60%				40%		
평가영역	1차고사(30%)		2차고사(30%)		표현	이해	독서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영역만점	70점 이하	30점 이상 (20점 이상)	70점 이하	30점 이상 (20점 이상)	20점	10점	10점
반영비율	21%	9%	21%	9%	20%	10%	10%
기본점수	0점		0점		8점	4점	4점
출제 및 채점	2인 이상의 교사가 담당할 경우, 공동 출제 및 공동 채점				2인 이상의 교사가 담당할 경우, 공동 출제 및 공동 채점		

과 목 명	독서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80%				20%	
평가영역	1차고사(40%)		2차고사(40%)		표현	독서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영역만점	70점 이하	30점 이상 (20점 이상)	70점 이하	30점 이상 (20점 이상)	10점	10점
반영비율	28%	12%	28%	12%	10%	10%
기본점수	0점		0점		4점	4점

과목명	문학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60%				40%	
평가영역	1차고사(30%)		2차고사(30%)		표현	이해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영역만점	70점 이하	30점 이상 (20점 이상)	70점 이하	30점 이상 (20점 이상)	20점	20점
반영비율	21% 이하	9% 이상	21% 이하	9% 이상	20%	20%
기본점수	0점		0점		8점	8점

과 목 명	화법과 작문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80%				20%	
평가영역	1차고사(40%)		2차고사(40%)		쓰기 [글쓰기 활동]	독서 [독후감 활동]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영역만점	70점 이하	30점 이상 (20점 이상)	70점 이하	30점 이상 (20점 이상)	10점	10점
반영비율	28%	12%	28%	12%	10%	10%
기본점수	0점		0점		4점	4점

꿈과 열정이 살아 숨 쉬는 인월인

과목명	언어와 매체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60%				40%	
평가영역	1차고사(30%)		2차고사(30%)		매체 자료의 비평적 수용 활동	문법 탐구 활동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영역만점	70점 이하	30점 이상 (20점 이상)	70점 이하	30점 이상 (20점 이상)	20점	20점
반영비율	21% 이하	9% 이상	21% 이하	9% 이상	20%	20%
기본점수	0점		0점		8점	8점

수학과

과목명	언어와 매체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60%				40%		
평가영역	1차고사(30%)		2차고사(30%)		구술평가	수학 탐구대회	수학 독서평가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영역만점	70점 이하	30점 이상 (20점 이상)	70점 이하	30점 이상 (20점 이상)	15점	15점	10점
반영비율	21% 이하	9% 이상	21% 이하	9% 이상	15%	15%	10%
기본점수	0점		0점		10점	9점	6점

영어과

과목명	1학기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70%				30%	
평가영역	1차고사(35%)		2차고사(35%)		프로젝트	듣기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영역만점	70점 이하	30점 이상 (20점 이상)	70점 이하	30점 이상 (20점 이상)	20점	10점
반영비율	24.5% 이하	10.5% 이하	24.5% 이하	10.5% 이상	20%	10%
기본점수	0점		0점		9점	6점

과목명	2학기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60%				40%		
평가영역	1차고사(30%)		2차고사(30%)		포트폴리오	프로젝트	듣기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영역만점	70점 이하	30점 이상 (20점 이상)	70점 이하	30점 이상 (20점 이상)	15점	15점	10점
반영비율	21% 이하	9% 이하	21% 이하	9% 이상	15%	15%	10%
기본점수	0점		0점		9점	9점	6점

● 과학과 - 통합과학, 화학1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60%				40%		
평가영역	1차고사(30%)		2차고사(30%)		탐구 평가	배움기록 평가	융합평가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영역만점	60점 이하	40점 이상 (20점 이상)	60점 이하	40점 이상 (20점 이상)	20점	10점	10점
반영비율	18% 이하	12% 이상	18% 이하	12% 이상	20%	10%	10%
기본점수	0점		0점		8점	4점	4점

● 과학과 - 과학탐구실험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0%				100%			
평가영역	1차고사(0%)		2차고사(0%)		배움기록 평가	주제탐색 평가	탐구설계 평가	탐구실험 평가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영역만점	-	-	-	-	25점	25점	25점	25점
반영비율	-	-	-	-	25%	25%	25%	25%
기본점수	0점		0점		10점	10점	10점	10점

● 과학과 - 지구과학1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60%				40%		
평가영역	1차고사(30%)		2차고사(30%)		탐구평가	수업밀착 형 평가	과학예술 융합평가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영역만점	60점 이하	40점 이상 (20점 이상)	60점 이하	40점 이상 (20점 이상)	20점	10점	10점
반영비율	18% 이하	12% 이상	18% 이하	12% 이상	20%	10%	10%
기본점수	0점		0점		8점	4점	4점

● 과학과 - 생명과학1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60%				40%		
평가영역	1차고사(0%)		2차고사(60%)		자유탐구	주제탐구	실험준비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영역만점	60점 이하	40점 이상 (20점 이상)	60점 이하	40점 이상 (20점 이상)	20점	15점	5점
반영비율	21% 이하	9% 이상	21% 이하	9% 이상	20%	15%	5%
기본점수	0점		0점		8점	6점	2점

꿈과 열정이 살아 숨 쉬는 인월인

● 사회과 - 통합사회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60%				40%		
평가영역	1차고사(30%)		2차고사(30%)		프로젝트	주제표현활동	포트폴리오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영역만점	60점	40점(20점)	60점	40점(20점)	20점	10점	10점
반영비율	18%	12%	18%	12%	20%	10%	10%
기본점수	0점		0점		8점	4점	4점

● 사회과 - 사회문화 (2학년)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60%				40%	
평가영역	1차고사(30%)		2차고사(30%)		자료 분석 및 발표	탐구 및 참여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영역만점	70점	30점 (20점)	70점	30점 (20점)	20점	20점
반영비율	21%	9%	21%	9%	20%	20%
기본점수	0점		0점		8점	10점

● 역사과 - 한국사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60%				40%		
평가영역	1차고사(30%)		2차고사(30%)		프로젝트 (역사 뉴스 속보 발표하기)	문화유산 소개 카드 만들기	포트폴리오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영역만점	60점	40점(20점)	60점	40점(20점)	20점	10점	10점
반영비율	18%	12%	18%	12%	20%	10%	10%
기본점수	0점		0점		8점	4점	4점

● 윤리과 -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60%				40%	
행동영역	지식, 이해, 적용				배움평가	역량평가
평가영역	1차고사(30%)		2차고사(30%)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프로젝트, 주제토론학습	가치실천 과정평가
영역만점	70점	30점 (10점 이상)	70점	30점 (10점 이상)	20점	20점
반영비율	21%	9%	21%	9%	20%	20%
기본점수	0점		0점		8점	8점

기술가정과

기간	2020학년도 1학기							
과목명	기술·가정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40%				60%			
평가영역	1차고사(0%)		2차고사(40%)		프로 젝트1	프로 젝트2	포트 폴리오	
	선택형	서답형	선택형	서답형				
영역만점	-	-	70점	30점	25점	25점	10점	
반영비율	-	-	28%	12%	25%	25%	10%	
기본점수	-		0점		12점	12점	4점	
반영 시기	1학기			7월	학기 중			

기간	2020학년도 2학기							
과목명	기술·가정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30%				70%			
평가영역	1차고사(0%)		2차고사(30%)		프로 젝트1	프로 젝트2	프로 젝트3	포트 폴리오
	선택형	서답형	선택형	서답형				
영역만점	-	-	70점	30점	20점	20점	20점	10점
반영비율	-	-	21%	9%	20%	20%	20%	10%
기본점수	-		0점		8점	8점	8점	4점
반영 시기	2학기			12월	학기 중			

체육과

평가방법	수행평가(개별, 모둠, 자기평가, 안전, 학습지 등)					
반영비율	100%					
수행평가 평가영역	건강	도전	경쟁		표현	안전
	수행평가	수행평가	수행평가		수행평가	수행 평가
영역만점		100	100(농구)		100	역량평가
기본점수		60	60		60	상시평가
반영비율		30	30		25	
1학기		○	○		○	○
영역만점	100		100(탁구)	100(킨볼)		100
기본점수	60		60	60		60
반영비율	25		30	30		15
2학기	○		○	○		○

꿈과 열정이 살아 숨 쉬는 인월인

일본어과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30%				70%		
평가영역	1차고사		2차고사(30%)		듣기	읽기	쓰기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선택형	서답형			
영역만점	-	-	70점 이하	30점 이상	20점	30점	20점
반영비율	-	-	21% 이하	9% 이상	20%	30%	20%
기본점수	0점		0점		7점	10점	7점

음악과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0%				100%			
평가영역	1차고사(0%)		2차고사(0%)		표현		감상	생활화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가창	기악		
영역만점	-	-	-	-	30점	30점	20점	20점
반영비율	-	-	-	-	30%	30%	20%	20%
기본점수	-	-	-	-	12점	12점	8점	8점

미술과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0%				100%				
평가영역	1차고사(0%)		2차고사(30%)		체험1 (프로젝트)	체험2	표현1	표현2	감상 (논술형 평가)
	선택형	서답형 (서술)	선택형	서답형 (서술)					
영역만점	-	-	-	-	20점	20점	20점	20점	20점
반영비율	-	-	-	-	20%	20%	20%	20%	20%
기본점수	0점		0점		8점	8점	8점	8점	8점

V 출결 상황 관리

1. 수업일수

- 가.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이 정한 학년별 학생이 연간 총 출석해야 할 일수를 말한다.
- 나. 학적변동(휴학·제적·자퇴·퇴학·전출 등) 당일까지를 수업일수에 산입한다.
- 다. 학적 변동 전·후에 중복 일수가 있는 경우 새로 학적을 부여받은(재입학·편입학·전입학·복학 등) 일수만 수업일수로 계산한다.
- 라.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수업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수업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수업일수는 제외한다.
- 마. 재입학·전입학·복학한 학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수업일수가 당해 학교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미만이 될 경우에는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수업일수 부족으로 수료 또는 졸업이 인정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당해 학년도 재입학·전입학·복학이 불가능하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참조)

2. 출석상황 조사

학생의 출석상황조사는 조회 시와 종례 시 및 매 수업 시간에 조사한다.

* 코로나 19 온라인 개학으로 인한 학생 출결 관리 방안은 다음의 지침을 따른다.

1. 학생 출결 관리

원격수업 중 출결 확인 및 처리 절차

<원격수업 중 출결 확인 및 처리 절차>

출결 확인	출결 기록	출결 처리
• 교과 담당 교사가 차시별로 확인	• 출석부 등 보조장부 또는 NEIS (교과시간별 출결등록) 메뉴에 기록	• 교과 담당 교사의 출결 기록을 종합해 NEIS에 입력·처리(月단위)
교과 담당 교사	교과 담당 교사	담임교사

○ (출결 확인) 원칙적으로 당일 교과별 차시 단위로 실시하되, 담임교사와 교과교사가 미 수강 학생 수강 독려 및 대체학습 안내

- 수업유형에 따라 교과별 대체학습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7일 내 해당 차시 미참여 학생 최종 확인**

- (출결 기록) 교과교사가 실시간 또는 사후 출석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차시별로 출결 보조장부(출석부) 또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메뉴에 출석 또는 결석(결과)으로 기록
- (출결 처리) 교과교사의 출결 기록(출석부 등)과 학생이 제출한 결석 사유 증빙자료 확인 후 담임교사가 종합하여 월(月)단위 또는 **등교개학 후 출결(마감)** 처리 가능

□ 원격수업 유형별 출석 확인 방법

<원격수업 유형별 출석 확인 방법>

수업 유형	출석 확인 방법							
	LMS 활용 방법*					기타(대체확인)		
	학습 시작일	진도율	접속기록 (출석체크)	학습 시간	산출물 탑재	SNS	메시지 유선	증빙 자료**
콘텐츠 활용	○	○	○	○	○	○	○	○
과제 수행			○		○	○	○	○
확인(인정) 기간	당일 또는 1주일(7일)내, 등교 수업 후 확인							

※ 원칙: 교과별로 출석 확인 방법 모두가 확인되어야 출석 인정

※ 완화된 기준: 교과별로 상황에 따라 출석 확인 방법 중 하나 이상만 확인되어도 출석 인정

* LMS: e학습터, ebs클래스, 네이버밴드, 카카오톡 등

** 증빙자료: 대체학습 과제물, 학부모 확인서, 입원치료(격리)통지서 등

3. 결석

가. 결석일수의 산정

- 1)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 2)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예: 2학년 4.15 유예 후 다음해 2학년 3.20 재취학일 경우, 원적교의 3.20~4.15 사이의 결석일수는 삭제함)

나.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 시도(교육청)· 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기간
- 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6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6)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 형제, 자매, 부, 모	1
입 양	○ 학생 본인	20
사 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연속된 결석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8)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9) 경찰청 「소년업무규칙」제31조부터 제33조에 따른 경찰청관서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10) 학교장은 초·중·고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월 1일 결석)에는 위 7)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보아 출석으로 인정한다.

※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 시(지각, 조퇴, 결과 포함) 출석 인정을 위해 담임교사 의견서, 학부모 의견서 등을 요구하는 것 외의 의료적 확인(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을 요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함.

※ 생리인정결석 시 지각, 조퇴, 결과 3회를 1일로 산정하는 등의 출결 산정기준은 월 1일의 범위 내에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 학교장이 정함.

※ 출석인정 시 성적은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인정점 부여 기준을 정하여 결정함.

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 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4)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 관련된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한 경우에 한하여 질병결석으로 인정(2018.04.06.부터 적용).

5)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만성질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4)~5)의 경우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라. 미인정 결석

-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 4)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 기관 출석·체포·도피·구속(구인, 구금, 구류 포함), 교도소 수감 등)
- 5)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 6)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마. 기타 결석

- 1) 부모·가족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2)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 3)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지각·조퇴·결과 (단위학교에서 정한 기준은 모든 교사가 일관되게 적용)

가. 지각 :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08:40)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나. 조퇴 :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08:40)과 하교시각(16:25) 사이에 하교한 경우

* 단, 학교교육과정운영상 등교 및 하교 시각은 변동될 수 있음

다. 결과 : 수업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라. 위의 2. 나.의 각 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마. 지각, 조퇴는 학급 담임의 허가를, 결과는 교과담임과 학급담임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바. 지각·조퇴·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미인정·기타로 처리한다.

사. 같은 날짜에 지각·조퇴·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미인정·질병·기타의 순서로 처리하되, 동일한 사유로 인해 발생한 사항은 수업 결손이 많은 것으로 처리한다.

아.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자.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각 횟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 지각·조퇴·결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여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반영한다. 이에 대한 안내를 학생·학부모에게 공지하고, 단위 학교 전체 교사가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한다.

VI 포상

1. 포상의 기준

해당 분야에서 그 실적이 현저하게 뛰어나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2. 포상 시기

졸업식, 학년말, 학기말, 기타 교내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수여한다.

3. 포상의 종류

- 가. **교과우수상** : 당해학기 학기말 성적처리 결과 각 과목 1위인 자, 단 동점자가 있는 경우 모두 시상한다.
- 나. **1년 개근상** : 1년 동안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없는 자
- 다. **모범상** : 모범부문에서 뚜렷한 실적이 있거나 평소의 모범적인 실천에 대한 인정받은 자로서 학급 담임 교사 및 지도 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 라. **선행상** : 선행부문에서 뚜렷한 실적이 있거나 평소의 선행에 대한 실적을 인정받은 자로서 학급 담임 교사 및 지도 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 마. **효행상** : 효행 부문에서 뚜렷한 실적이 있거나 평소의 효행에 대한 실적을 인정받은 자로서 학급 담임 교사 및 지도 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 바. **봉사상** : 봉사실적이 우수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사. **졸업예정자의 포상**
 - 1) **학교장상** : 3학년 2학기말까지(전학년 전학기)의 내신성적 석차연명부 1위인 자
 - 2) **3년 개근상** : 3년 동안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없는 자
 - 3) **3년 정근상** : 3년 동안 결석 3일(지각, 결과, 조퇴 3회는 결석1회) 미만인 자
 - 4) **1년 개근상** : 1년 동안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없는 자
(단, 3년 개·정근상 수상자는 제외)
 - 5) **공로상** : 졸업예정자 중에서 학생회 임원 중 학생회장, 학생부회장 또는 학생회 활동에 공로가 있는 자로서 담당 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 6) **선행상** : 충·효·예·선 부문에서 뚜렷한 실적이 있거나 평소의 선행에 대한 실적을 인정받은 자로서 학급 담임 교사 및 지도 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 7) **기능상** : 졸업예정자 중에서 3년간의 재학중, 체육, 음악, 미술, 문예, 과학 기능 각종 경기 대회, 도단위 이상 대회(직속기관 주최 대회)에서 입상하거나 시단위 대회에서 금상을 입상한 자로서 학급 담임교사 또는 지도 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 8) **봉사상** : 봉사실적이 우수하거나 봉사정신이 투철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아. 기타 교내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린 개인 및 학급에 대하여 수시 시상할 수 있다. 단. 생활기록부 기재시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 1) 학년초 학교교육계획에 연간 대회 및 수상내용 등의 실시계획(수상비율, 시행월, 담당부서, 공개방식 등)을 기재하되, 학년초 학교교육계획에 교내의 모든 수상을 반드시 취합하여 제시한다.
 - 2) 학년초 학교교육계획에 의거하여 실시한 교내상의 경우에 한하여 수상경력에 입력한다. 단, 교육목표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학기초(학기 시작 후 30일 이내)에 연간수상계획을 변경하여 학교장의 결재후, 변경계획을 공개한 경우의 수상실적 내용만 입력한다.

10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인월중·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정(1998.03.15.)
개정(2000.03.06.)
개정(2000.07.10.)
개정(2003.09.23.)
개정(2004.03.17.)
개정(2005.03.16.)
개정(2007.06.27.)
개정(2012.02.17.)
개정(2016.02.17.)
개정(2017.09.1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전라북도 도립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인월중·고등학교 운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위원회는 인월중·고등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제3조(사무소) 이 위원회의 사무소는 인월중·고등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둔다.

제2장 위원의 신분

제4조(위원의 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1차 연임 후 1기(2년)는 쉬어야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에 시작한다.

제5조(위원의 자격)

- ① 학부모위원은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로 한다.
- ② (삭제)
- ③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다.
- ④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⑤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통합운영학교의 학교장은 소속 학교의 당연직 교원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 ⑥ (삭제)

제6조(위원의 의무)

- ① 위원은 무보수의 봉사직으로 하며, 수당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석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학교운영에 관여 할 수 없다.
- ③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교원위원은 사전 통지된 안건에 대하여 가능한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회의에 참여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교직원전체회의에 보고한다.
- ⑤ 학부모 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 된다.

제7조(위원의 퇴직)

- ① 학교운영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한다.**
 - 1. 학부모위원은 학생의 졸업과 **전학**, 교원위원은 교원의 전보발령으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 당연 퇴직한다.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 말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 2. 위원은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다만, 다음 사항은 3회 불참에서 예외로 한다.
 - 가. 병으로 인하여 거동이 어려울 때
 - 나. 가족의 경조사로 인하여 참석이 어려울 때
 - 다. 공무나 생업과 관련하여 장기 여행 중일 때
 - 라. 기타 운영위원회가 특별히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 3. 학부모 위원 및 지역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 경력 등의 주요 내용에 거짓이 발견된 때
- ② 학교운영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사직원을 제출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위원장이 허가할 수 있다.

제3장 위원의 선출

제8조(위원의 정수) 위원은 8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4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명, 지역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

제9조(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끝나는 날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끝나는 날 전일까지 선출한다.

제10조(선출관리위원회)

-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 선출관리위원회를 둔다.
-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을 위한 선거공고, 입후보자등록, 공보, 투표, 개표 및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일정 및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된 때까지 운영된다.
- ③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운영위원에 입후보하지 않은 학부모 및 교직원 3명

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고, 그 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위원에 입후보하지 않은 교직원 3명으로 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받아 구성하고, 그 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11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선출방법)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전체학부모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등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직접선거에 의해 중학교학부모 2명, 고등학교학부모 2명을 선출한다. 다만 중학교학부모 및 고등학교학부모가 각각 2명 미만이 입후보등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동일 학부모에 2인 이상 자녀가 본교에 재학한 때에는 높은 학년의 재학생으로 1표의 투표권을 행사한다.

③ (공고)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위원의 선출공고를 선거일 10일 이전에 운영위원회의 역할과 구성 및 선거일, 선거방법과 절차 등을 게시판과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공고한다.

④ 학부모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학부모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공고일로부터 5일간 선출공보용 원고의 접수와 입후보자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등록마감일로부터 3일 이내에 등록된 후보들의 연령, 경력, 직업 및 소견을 담은 선거공보를 제작하여 학생들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⑥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을 들은 후 투표하며, 1인 1기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⑦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연장자로 결정한다. 다만, 입후보자수가 정수의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투표로 결정한다.

⑧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입후보등록자가 학부모위원의 정수에 미달인 때에는 제1항의 학부모위원의 선출을 위한 전체학부모회의에서 추가 추천을 통하여 투표로서 선출한다.

제12조(교원위원 선출)

① 교원위원은 전체교직원회의에서 직접선거에 의해 중학교교원 1명, 고등학교교원 1명을 선출한다. 다만 중학교 및 고등학교 각각 1명 미만이 입후보등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 전까지 운영위원회의 역할과 구성 및 선거일, 선거방법과 절차 등을 교무실 게시판에 공고한다.

③ 교원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교직원의 추천을 받아 공고일로부터 3일간 입후보자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교직원은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을 들은 후 투표하며, 1인 1기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간제 교사의 선거권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정한다.

⑤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때는 연장자로 결정한다. 다만, 입후보자수가 정수의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투표로 결정한다.

⑥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입후보등록자가 교원위원의 정수에 미달인 때에는 제1항의 교원위

원의 선출을 위한 전체교직원회의에서 추가 추천을 통하여 투표로서 선출한다.

제13조(지역위원의 선출)

-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은 지역위원선출회의 개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회의개최 전까지 후보자를 추천한다.
- ② 추천을 받은 지역위원 입후보자에 대하여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 ③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때는 연장자로 결정한다.

제14조(보궐선출)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30일 이내에 제10조 내지 제13조의 절차에 따라 선출하고, 결원된 위원의 남은임기가 결원된 때부터 6월 미만으로 전체위원정수가 4분의 1 이상이 결원되지 않은 때는 보궐선출을 아니한다.

제4장 위원회의 조직

제15조(임원)

-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매년 정기회의 개최 시 선출한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는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을 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⑦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장기 출타 및 부재 시 학교장 또는 연장자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참석자중 최연장자의 주재로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제16조(소위원회의 설치.운영)

- ① 운영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학생수가 100명 이상인 경우 **예결산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의결로써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1. 학교헌장 및 학교규칙의 제.개정
 - 2. 기타 수익자부담 교육활동 및 사업
-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의결로서 선출하되 재적위원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며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만으로 구성하지 못한다.
- ③ 소위원회는 그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호선으로 선출하고 그 구성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 ④ 소위원회의 위원은 그 소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 ⑤ 소위원회의 활동은 심사한 안건이 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그 결과를 보고한 때까지 존속하며, 제1항의 규정으로 정한 기간 내에 마치지 못한 때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본회의에 그 안건을 부의한 때 그 활동이 종료된다.

제17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으며,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18조(사무처리부서) 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장을 간사로 두며, 교육과정에 관련된 사무는 교감이 의안을 작성한다.

제5장 위원회의 기능

제19조(심의사항)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한다.
 - 1. 학교헌장 및 학교규칙의 제·개정과 관련한 사항
 -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7. 학교운영지원비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9. 대학입학 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 10. 학교 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11.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 12.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 13.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현장학습, 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씨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
 - 14.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 15.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16.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최대한 존중하여 학교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법령, 조례 또는 운영규칙에 위반되거나 이를 이행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장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제1항제13호의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하여야 한다.<신설

2012.2.17>

1. 학교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④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위원장은 학생대표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2.2.17>

⑤ 제1항제11호에 따라 학생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건의할 경우 학생대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의하여야 한다.<신설 2012.2.17>

1. 학생 설문조사
2. 대의원회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제20조(학교운영지원비 및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① 위원회는 학교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부모회의 동의를 얻어 학부모로부터 일정액의 학교운영지원비를 각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학업보호를 받는 자, 수업료감면기준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자, 기타 생활이 어려운 회원에게는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학교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부금을 받아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다만, 학교발전기금은 “학교발전기금조성.운용및회계관리요령”에 따라 조성.운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학교운영지원비 및 제3항의 학교발전기금(이하 “지원비 등”이라 한다)의 규모, 모금방법, 사용처 등은 위원회가 학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지원비 등 조성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한다. 다만, 학교운영지원비에서 교직원 복지향상을 위한 수당 및 지급액은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⑤ 지원비 등에 대한 회계업무는 학교장에게 위탁하여 행하되, 학교의 교육비특별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한다.

⑥ 지원비 등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운영결과를 공개한다.

제6장 위원회의 운영

제21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 중에 개최한다.

② 위원선출 후 최초의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임시회는 학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이 된다. 다만, 정기회의의 개회로부터 위원장이 선출된 때까지 학교장이 이를 맡는다.

⑤ 회기는 집회 즉시 의결로서 이를 정한다.

- ⑥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서 폐회할 수 있다.
- ⑦ 회의는 개최예정일 7일 이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이 필요한 안건이라고 인정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
- ⑧ 회의는 연 4회이상 개최하되, 회의일수는 연 30일 이내로 한다.
- ⑨ 위원장은 위원들이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2조(안건의 제출·발의)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23조(의사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삭제)

제24조(회의 공개의 원칙)

- ① 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이나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사, 학생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한다.

제25조(서류제출 요구)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관계자 등의 출석 및 답변)

- ① 학교장은 의안을 제출하거나 발의한 안건을 설명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교직원 중 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이를 설명 또는 답변케 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학생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학생의 대표나 관련 학생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7조(회의록의 작성 등)

- ① 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록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가정통신문이나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차기 회의 시 보고한다.

제28조(건의사항의 처리) ①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은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 ③ 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건의인의 직접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⑤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결과를 건의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심의결과의 선포 및 이송)

- ①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 후 이에 대하여 발언이 없거나 반대 또는 수정 동의가 없는 때에는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으면 그 결과를 선포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안건이 심의의결된 결과를 5일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30조(합동회의) (삭제)

제7장 심의사항의 시행 등

제31조(시행 의무 등) 학교장은 제19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다만, 학교운영상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시정명령) 학교장은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시행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제30조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관할교육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33조(운영경비) 위원의 연수비의 교통비, 회의경비 기타 등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규정이나 관할교육청의 예산지침에 따른다.

제8장 규정의 개정

제34조(개정안의 제안) 이 규정의 개정안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이 발의로 제안된다.

제35조(개정안의 공고) 이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 동안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6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의결 즉시 이를 공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시효) 이 규정을 시행하기 전의 학교운영에 관한 규칙은 이 규정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된 때까지 유효하다.

제3조(최초의 위원선출) 이 규정에 따른 최초의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은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학부모총회와 전체교원회의에서 각각 선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내지 제9조는 2000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7월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통합학교 운영위원회 관련 경과 조치)

현재 운영하고 있는 통합학교 운영위원의 임기는 2004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11 위임전결규정

인월중·고등학교 위임전결규정

2018. 3. 22. 시행

부서명	업무명	세 부 업 무 명	전 결 권 자			
			업 무 담당자	보직 교사 (부장)	교감 (실장)	교 장
공 통	1.복무관리	1. 근무상황(출장, 휴가 등)				
		가. 교감, 행정실장			기안	○
		나. 교직원의 1일 미만 근무상황	기안		○	
		다. 교직원의 관내출장	기안		○	
		라. 교직원의 관외출장	기안			○
		2. 초과근무명령	기안			○
		3. 초과근무확인			○	
	2.표창지침	1. 포상기본계획	기안			○
		2. 교직원 표창	기안			○
		3. 학생표창	기안		○	
		4. 시상대상정리	기안	○		
	3.민원업무	1. 집단민원	기안			○
		2. 의례적이거나 경미한 사항	기안	○		
		3. 민원서류 이송	기안		○	
		4. 각종 증명발급				
		가. 전학용 재학증명	기안			○
		나. 보증용 재직증명발급	기안			○
		나. 기타 증명발급	기안		○	
	5. 공무원증 발급	기안○				
	4.기획관리	1. 각종 기본계획 수립	기안			○
		2. 각종 행사계획				
		가. 의식행사	기안		○	
		나. 학예행사	기안		○	
		다. 현장학습 활동	기안			○
		라. 각종 교외행사(대회)참가	기안			○
	5.기타일반	1. 기정방침에 부수된 사항	기안		○	
		2. 경미한 사항처리	기안		○	

꿈과 열정이 살아 숨 쉬는 인월인

부서명	업무명	세 부 업 무 명	전 결 권 자			
			업 무 담당자	보직 교사 (부장)	교감 (실장)	교 장
		3. 소속공무원 사무분장		기안		○
		4. 월중업무계획 수립		기안	○	
		5. 학교통신문 발송등 홍보	기안		○	
		6. 예산집행 품의				
		가. 30만원 초과	기안			○
		나. 30만원 이하	기안		○	
교무부	1.교육계획	1. 교육계획 수립		기안		○
		2. 행사계획	기안		○	
	2.학적관리	1. 의무취학				
		가. 신입생전형	기안			○
		나. 신입생 입학관리	기안			○
		다. 학생수용계획 자료조사	기안	○		
		2. 전·출입관리				
		가. 전·출입대장 정리	기안		○	
		나. 관련공문 및 반 배정	기안		○	
		3. 재적 변동 상황 보고	기안		○	
		4. 각종규정안 제정		기안		○
		5. 학칙에 관한 사항		기안		○
	6. 각종통계에 관한사항	기안		○		
	3.인사관리	1. 학급편성 및 담임배정		기안		○
		2. 교감(교사)전보 내신 및 유예 승인 신청		기안		○
		3. 보직교사(부장) 및 임시 교사 임용		기안		○
		4. 교사 차출	기안		○	
		5. 교원인사기록카드관리	기안		○	
		6. 교원인사(교사)	기안			○
		7. 교원퇴직	기안			○
	4.수업관리	1. 수업시간표 작성	기안		○	
		2. 방과후 교육활동	기안		○	
		3. 결·보강 대책부	기안		○	
		4. 출석부 작성 및 통계	기안		○	
5. 학교(교무)일지 기록		기안		○		
6. 교육과정 진도표		기안		○		

부서명	업무명	세 부 업 무 명	전 결 권 자			
			업 무 담당자	보직 교사 (부장)	교감 (실장)	교 장
연구부		7. 클럽활동 연간지도계획	기안		○	
		8. 이수실적 확인표	기안		○	
		9. 교수-학습 주간계획	기안		○	
		10. 종합성적 일람표	기안		○	
		11. 클럽활동 출석표	기안		○	
	5.장학생선발	1. 장학생 선발 규정안	기안			○
		2. 장학생 선발	기안		○	
	6.도서관리	1. 교과서 주문 및 공급	기안		○	
		2. 교사용 지도서 배분	기안○			
		3. 도서실관리	기안○			
		4. 간행물 등록	기안○			
	7.위원회관리	1. 각종위원회 운영	기안		○	
	8.학 생 회	1. 학생회 운영				
		가. 회장단 선거 계획	기안		○	
		나. 회장단 임명	기안			○
		다. 학생회 회칙	기안		○	
		라. 반장임명	기안		○	
	1.교육과정	1. 학교교육과정 편성	기안			○
		2. 열린교육과정	기안		○	
		3. 실천위주 인성지도	기안○			
2.교과연구	1. 학습지도안 작성	기안		○		
	2. 수업연구 협의회 운영	기안		○		
	3. 교과 연구협의회 운영	기안		○		
	4. 장학협의회 및 연구수업	기안		○		
3.교원연수	1. 연수대상자 선정	기안		○		
	2. 자체 연수계획	기안		○		
	3. 연수자료 작성	기안	○			
4.특색사업추진	1. 특색사업 운영계획	기안		○		
	2. 추진과제 선정	기안		○		
	3. 추진과제 확인	기안		○		
5.학습평가	1. 평가계획수립	기안			○	
	2. 채점통계	기안		○		

꿈과 열정이 살아 숨 쉬는 인월인

부서명	업무명	세 부 업 무 명	전 결 권 자			
			업 무 담당자	보직 교사 (부장)	교감 (실장)	교 장
		3. 평가결과 분석	기안		○	
		4. 학습부진아 지도	기안		○	
		5. 지능검사	기안		○	
	6. 방과후 학교활동	1. 방과후학교 교육활동계획	기안			○
	7.특별활동	1. 특활부 조직 및 활동계획	기안	○		
		2. 특활지도안 관리	기안	○		
	8.교육부조리 근절	1. 불법과외	기안	○		
		2. 교육부조리 근절에 관한 사항	기안			○
		3. 기 타	기안		○	
	과학부	1.과학교육	1. 과학교육 운영 계획	기안		
2. 과학실 운영 계획			기안		○	
3. 각종대회 참가			기안		○	
4. 과학기교재 및 시청각 기교재 관리			기안		○	
5. 일반교재 교구 관리			기안		○	
6. 실험·실습 일지기록			기안		○	
7. 과학실 비품대장 정리			기안		○	
8. 과학실 소모품대장 정리			기안○			
9. 과학행사 운영			기안		○	
2.재능아지도		1. 특수재능아 선발기준	기안		○	
		2. 특수재능아 지도계획	기안		○	
3.방송실운영		1. 방송실 운영계획	기안		○	
		2. 방송반 조직 및 지도	기안	○		
		3. 방송프로그램 편성	기안	○		
학생부		1.생활지도	1. 생활지도계획	기안		
	2. 등·하교 교통지도		기안	○		
	3. 학생선도활동지도		기안	○		
	4. 학생 교내·외 지도		기안		○	
	5. 학생회 조직, 운영, 지도		기안		○	
	6. 수학여행, 야영수련활동		기안			○
	7. 각종 단체 활동 지도					○
	2.봉사활동	1. 학생 봉사활동	기안	○		
		2. 학생 상담자원 봉사	기안	○		
		3. 녹색어머니회 활동	기안	○		

부서명	업무명	세 부 업 무 명	전 결 권 자			
			업 무 담당자	보직교사(부장)	교감(실장)	교 장
	3.인성교육	1. 경로효진 예절교육	기안		○	
정보부	1.정보화교육	1. 정보화실운영 계획	기안			○
		2. 정보화 관련 연수계획	기안		○	
		3. 정보화실 기자재 관리	기안		○	
	2.교수매체 현대화	1. 교수매체 현대화 사업추진 계획	기안			○
		2. 기자재관리 및 활용	기안	○		
환경부	1.환경미화	1. 교내환경정리 계획	기안	○		
		2. 청소구역지정 및 담당교사 배치	기안	○		
		3. 학교환경정화구역 관리	기안	○		
		4. 학교환경정리 구역 점검	기안○			
	2.자원재활용	1. 쓰레기 분리 수거	기안○			
	3.환경캠페인	1. 홍보 및 캠페인	기안		○	
		2. 자연보호 활동	기안		○	
	4.학생저축	1. 학생저축 교육	기안		○	
		2. 학생저축 관리	기안		○	
		3. 각종성금 모금	기안		○	
	5.경제교육	1. 학생저축	기안	○		
		2. 폐품, 재활용품 활용	기안	○		
	체육부	1.체육교육	1. 체육행사	기안		
2. 학교운동부 육성			기안		○	
3. 선수선발 및 훈련계획			기안		○	
4. 각종대회 참가			기안			○
5. 운동장 사용허가			기안			○
6. 체육복 착용안			기안			○
2.보건위생		1. 학생신체검사(체격, 체질, 체력)실시	기안		○	
		2. 학생병리 검사	기안		○	
		3. 양호일지 기록	기안○			
		4. 건강기록부 작성	기안		○	
		5. 약품수불부 정리	기안○			
		6. 각종예방접종실시	기안		○	
3.준거집단		1. 준거집단 조직 및 운영계획	기안			○
	2. 준거집단 각종행사	기안○				
교무실 업무			11	20	73	35

꿈과 열정이 살아 숨 쉬는 인월인

부서명	장 부 명	전 결 권 자			
		업 무 담당자	보직교사 (부장)	교 감	교 장
교무부	도서대장	기안	○		
	도서대출대장	기안	○		
	교무일지	기안		○	
	학생 입, 퇴학 처리부(학생이동원부)	기안			○
	교수. 학습과정안(교과, 재량활동, 특별활동)	기안		○	
	시상, 장학수혜대장	기안			○
	출석부	기안		○	
	졸업대장	기안			○
	학교생활기록부	기안			○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기안			○
	수업보강대책부	기안	○		
	수업이수집계표	기안		○	
	학교연혁지	기안		○	
연구부	현직연수 및 수업연구철	기안	○		
	영재아지도계획 및 실적부	기안	○		
	학업성적관리규정	기안			○
	성적단표 및 일람표	기안		○	
	학업성적평가관련자료 (출제원안, 문항정보표, 수행평가기록표)	기안		○	
	CA지도안	기안	○		
	학습지도안	기안	○		
	보충지도계획 및 실적부	기안		○	
	각 교과평가 규정철	기안		○	
	교과협의록	기안		○	
	이동수업계획 및 실적부	기안		○	
	위성방송계획 및 실적부	기안		○	
어학실운영계획 및 실적부	기안		○		
학생부	상벌대장	기안	○		
	학생회의록	기안	○		
	학생회간부임명장	기안	○		
	학생폭력예방지도기록부	기안		○	
	선도위원회회의록	기안		○	
	요선도학생지도기록부	기안		○	
	교외생활지도일지	기안		○	
	봉사활동계획 및 실적부	기안	○		
	가정방문록	기안○			
	학생수련계획 및 실적부	기안			○
건의사항처리부	기안			○	

부서명	장 부 명	전 결 권 자			
		업 무 담당자	보직교사 (부장)	교 감	교 장
진로 상담부	복교생결연지도실적	기안		○	
	진로지도실적부	기안		○	
	자원봉사자활동실적부	기안	○		
	학생이해자료카드	기안	○		
	상담일지	기안	○		
	결손학생파악지도실적부	기안	○		
과학부	과학교구대장	기안		○	
	실험실습일지	기안○			
	과학실실험폐수점검표	기안		○	
	실험실습소모품대장	기안○			
교육 정보부	컴퓨터교실운영계획 및 실적부	기안		○	
	교수매체 구입관리대장	기안		○	
	교수매체 활용실적부	기안	○		
	학교정보시스템운영일지	기안	○		
	학교정보시스템관리대장	기안			○
	방송실운영계획 및 실적자료대장	기안	○		
	방송실 비품대장	기안		○	
윤리부	민주시민육성계획 및 실적부	기안	○		
	인성지도계획 및 실적부	기안		○	
	녹색어머니교통지도일지	기안	○		
환경부	폐품수리실적부	기안	○		
	자연보호활동계획 및 실적부	기안	○		
	에너지절약지도계획 및 실적부	기안	○		
	건강기록부	기안			○
	훈련일지	기안	○		
체육부 보건부	보건일지	기안	○		
	약품수불대장	기안	○		
	각종검사결과처리부	기안		○	
	체육교구대장	기안		○	
교무실 장부		3	26	27	10

꿈과 열정이 살아 숨 쉬는 인월인

부서명	업무명	세 부 업 무 명	결 권 자		
			업 무 담당자	행정실장	교 장
행정실	1.당직관리	1. 당직근무 명령(변경포함)	기안		○
		2. 당직근무일지 작성	기안	○	
		3. 보안점검일지	기안	○	
		4. 비상연락망 정비	기안○		
		5. 당직근무관계 제보고	기안	○	
	2.보안업무	1. 일반보안, 전산보안 계획	기안		○
		2. 자체 보안교육실시 및 결과보고	기안	○	
		3. 정기보안진단 실시	기안	○	
		4. 비밀(대외비) 문서관리	기안		○
		5. 비밀자료 및 파기문서 소각대장	기안	○	
		6. 사적인 전화통화 사용부	기안	○	
	3.문서정리	1. 문서정리계획 수립	기안	○	
		2. 보존문서대장	기안	○	
		3. 문서보관.보존폐기 결정	기안		○
		4. 보존문서 이관	기안	○	
		5. 폐기문서 처리	기안	○	
		6. 문서심사	기안	○	
		7. 공문서 수발	기안○		
		8. 문서관리 일반	기안	○	
		9. 행정정보공개	기안	○	
	4.관인관수	1. 관인관수	기안	○	
		2. 관인날인 기록부	기안	○	
	5.감사업무	1. 감사결과처리 및 결과보고	기안		○
		2. 감사 자료제출	기안	○	
		3. 공직기강 확립 추진 계획수립	기안		○
		4. 공직기강 확립 추진 실적보고	기안	○	
	6.물품관리	1. 정기재물조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	기안		○
		2. 물품수급관리계획 보고	기안	○	
		3. 정수물품책정 및 관리	기안		○
		4. 물품불용 결정	기안		○
		5. 에너지절약추진계획수립.실적보고	기안	○	
		6. 소모품대장 정리	기안	○	
		7. 우표수불부	기안	○	
		8. 연료수불부	기안	○	
		9. 중요물품검수	기안		○
		10. 일반물품 및 소모품 검수	기안	○	
		11. 물품관련 현황 보고	기안	○	
	7.예산회계관리	1. 학교회계 예산 계획 및 집행계획	기안		○
		2. 학교회계 예·결산서 작성	기안		○

부서명	업무명	세 부 업 무 명	전 결 권 자		
			업 무 담당자	행정실장	교 장
		3. 예산집행 품의			
		가. 30만원 초과	기안		○
		나. 30만원 이하	기안	○	
		4.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가입	기안	○	
		5. 출납원 사무·인계인수 및 출납사무검사	기안		○
		6. 세입세출외현금관리	기안	○	
		7. 업무관리시스템 관리	기안		○
		8. 세입금 관리			
		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징수	기안		○
		나. 수입일계표작성	기안	○	
		9. 과오납금 반환	기안		○
		10. 학비감면 및 불납결손처리	기안		○
		11. 신용카드 사용부 정리	기안○		
		12. 임시학교회계 출납원 임명	기안		○
	8. 중식지원	1. 급식일지	기안○		
		2. 가정통신문	기안	○	
		3. 조리종사원 관리	기안○		
		4. 우유급식 대상자 선정	기안	○	
		5. 우유급식 납품확인	기안	○	
		6. 결식학생 중식지원계획수립	기안		○
		7. 결식학생 선정.지원	기안		○
		8. 결식학생 중식지원처리결과보고	기안	○	
	9. 인사관리	1. 조리종사원 임용	기안		○
		2. 비정규직(교무.전산보조등)임용	기안		○
		3. 결격사유 조회	기안	○	
		4. 일반.기능직인사기록카드 기록관리	기안	○	
		5. 정기호봉승급발령	기안		○
		6. 호봉재획정	기안		○
		7. 근무성적평정	기안		○
		8. 각종 인사보고 처리	기안	○	
	11.재산관리	1.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취득 처분	기안		○
		2. 재산유지관리	기안		○
		3. 재산대장	기안	○	
		4. 공유재산증감 내역 작성	기안	○	
		5. 재해상황보고	기안	○	
	12.시설관리	1. 시설공사 및 대수선계획 수립	기안		○
		2. 시설공사 준공 검사	기안		○
		3. 공사추진 및 감독	기안	○	
		4. 공사자재검수	기안	○	

꿈과 열정이 살아 숨 쉬는 인월인

부서명	업무명	세 부 업 무 명	전 결 권 자			
			업 무 담당자	행정실장	교 장	
		5. 시설유지관리	기안	○		
		6. 시설안전점검	기안	○		
	13. 각종통계업무	1. 교육통계 및 행정통계	기안	○		
		2. 간단한 교육행정자료 작성	기안	○		
		3. 일반통계(인원, 시설, 물품등)	기안	○		
	14. 봉급업무	1. 봉급신청	기안	○		
		2.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신고서	기안	○		
		3.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현황보고	기안	○		
		4. 기간제교사 인건비 지급현황보고	기안	○		
		5. 인건비 추계자료 작성	기안	○		
		6. 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업무	기안	○		
		7. 연말정산업무	기안	○		
		8. 기타 봉급관련 업무	기안	○		
	15. 소방, 민방위	1. 소방계획수립 및 훈련	기안		○	
		2. 소방시설 관리	기안	○		
		3. 민방위 편성관리	기안	○		
		4. 방재계획수립	기안	○		
	16. 학교운영위원회규정개정	1. 회의소집, 요구	기안		○	
		2. 운영실적 보고	기안	○		
		3. 운영위원연수계획 수립	기안	○		
		4. 운영위원선출,보선	기안	○		
		5. 학교발전기금 조성, 운영관리	기안		○	
		6. 학교발전기금 현황보고	기안	○		
		7.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기안		○	
			행정실 업무	6	62	31

꿈과 열정이 살아 숨 쉬는 인월인

부서명	장 부 명	전 결 권 자		
		업 무 담당자	행정 실장	교 장
행정실	근무상황부, 출장신청서(교감, 행정실장)	기안	`	○
	근무상황부, 출장신청서(기타직원)	기안	○	
	발령대장	기안		○
	보안점검표	기안	○	
	감사카드	기안		○
	재산대장	기안		○
	징수부	기안	○	
	학교회계장부	기안		○
	비소모품출납운동카드	기안	○	
	유류수불대장	기안○		
	급식 징수부	기안	○	
	공유재산관리대장	기안		○
	공무원증발급대장	기안	○	
	직장교육일지	기안	○	
	학교안전점검표	기안	○	
	정기보안진단일지	기안	○	
	일용직퇴직금지급대장	기안	○	
	보존문서기록대장	기안	○	
	비밀관리기록부	기안	○	
	비밀수발대장	기안	○	
	비밀문서발간통제부	기안	○	
	국제전화통제부	기안	○	
	보호구역대장	기안	○	
	비밀작업일지	기안	○	
	소모품관리대장	기안	○	
	학교지원회계직원 퇴직적립금관리대장	기안	○	
	위탁 급식교 위생 및 안전점검표	기안	○	
	관인사용부	기안	○	
	급식일지	기안	○	
행정실 장부		3	20	6

직 책	건 수	비 율
교장	79	23.7%
실장, 교감	183	55.0%
부장	48	14.4%
담당자	23	6.9%
총 계	332	100%

12

학교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2020학년도 인월중학교 회계 세입·세출 본예산

가. 주요 골자

(단위 : 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세입	장관			
	기타수입	1,000,000	5,500,000	-4,500,000
	이전수입	151,976,000	156,968,000	-4,992,000
	자체수입	14,974,000	14,271,000	-703,000
	자체수입	500,000	0	500,000
세입계		168,450,000	176,739,000	-9,695,000
세출	정책사업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교육활동 지원	15,754,000	15,454,000	300,000
	기본적 교육활동	37,860,000	42,595,000	-4,735,000
	선택적 교육활동	15,904,000	13,300,000	2,604,000
	인적자원 운용	3,900,000	2,900,000	1,000,000
	학교 일반운용	65,492,000	75,628,000	-10,136,000
	학교 재무활동	1,000,000	1,000,000	0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28,540,000	27,268,000	1,272,000
세출계		168,450,000	178,145,000	-9,695,000

나. 예산 내역

◎ 세입 예산

(단위 : 원)

항목	목	예산액	전년본예산	증감
경상목적사업비	경상목적사업비	13,191,000	0	13,191,000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수입	학교회계전입금	138,785,000	156,968,000	-18,183,000
수익자부담수입	교직원급식비	8,674,000	8,577,000	97,000
수익자부담수입	현장체험학습비	0	0	0
수익자부담수입	교직원 우유급식비	300,000	0	300,000
수익자부담수입	체육복비	1,000,000	0	1,000,000
수익자부담수입	교복구입비	5,000,000	5,600,000	-600,000
행정활동수입	사용료및수수료	0	0	0
행정활동수입	이자 기타자체수입	500,000	0	500,000
수익자부담수입	기타수익자부담 수입	0	1,500,000	-1,500,000
순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	1,000,000	5,500,000	-4,500,000
합계		168,450,000	178,145,000	-9,695,000

※ 예산서는 인월중고등학교 홈페이지(<http://www.inwol.hs.kr/>)에 탑재되어 있음.

◎ 세출 예산

(단위 : 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금년본예산액	전년본예산액	본예산비교증감
교육활동 지원	교무업무 운영	6,954,000	7,104,000	-150,000
	생활지도운영	1,300,000	1,500,000	-200,000
	연구학교 운영	0	0	0
	학습지원실 운영	7,500,000	6,850,000	650,000
	교육여건 개선	0	0	0
	소계	15,754,000	15,454,000	300,000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학생복지	11,571,000	12,966,000	-1,395,000
	교육격차 해소	0	0	0
	급식 관리	8,974,000	8,577,000	397,000
	보건 관리	7,995,000	5,725,000	2,270,000
	소계	28,540,000	27,268,000	1,272,000
기본적 교육활동	교과 활동	21,470,000	25,975,000	-4,505,000
	자유학기 활동	3,620,000	3,000,000	620,000
	창의적 체험활동	12,770,000	13,620,000	-850,000
	소계	37,860,000	42,595,000	-4,735,000
선택적 교육활동	교기육성	0	0	0
	기타 선택적 교육활동	0	0	0
	독서활동	6,900,000	6,400,000	500,000
	방과후학교 운영	6,704,000	4,600,000	2,104,000
	직업교육	2,300,000	2,300,000	0
	소계	15,904,000	13,300,000	2,604,000
인적자원 운용	교직원 복지 및 역량강화	2,900,000	2,900,000	0
	기타 교직원보수	1,000,000	0	1,000,000
	소계	3,900,000	2,900,000	1,000,000
학교 일반운영	시설 장비 유지	43,682,000	54,518,000	-10,836,000
	학교기관 운영	19,850,000	19,750,000	100,000
	학교운영 협력	1,960,000	1,360,000	600,000
	소계	65,492,000	75,628,000	-10,136,000
학교 재무활동	예비비	1,000,000	1,000,000	0
	소계	1,000,000	1,000,000	0
합계		168,450,000	178,145,000	-9,695,000

2020학년도 인월고등학교 회계 세입.세출 본예산

가. 주요 골자

(단위 : 원)

세	구 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장	관			
입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1,000,000	34,949,000	-33,949,000
	이전수입	지방교육자치단체이전수입	208,772,000	181,152,000	27,620,000
	자체수입	학부모부담수입	20,185,000	0	20,185,000
	자체수입	행정활동수입	500,000	5,000,000	-4,500,000
	세 입 계		230,457,000	221,101,000	9,356,000
세 출	정 책 사 업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인적자원 운용		16,464,000	15,860,000	604,000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27,342,000	27,152,000	190,000
	기본적 교육활동		46,510,000	41,990,000	4,520,000
	선택적 교육활동		20,148,000	20,270,000	-122,000
	교육활동 지원		35,279,000	30,909,000	4,370,000
	학교 일반운영		83,714,000	83,920,000	-206,000
	학교시설 확충		0	0	0
	학교 재무활동		1,000,000	1,000,000	0
세 출 계		230,457,000	221,101,000	-9,356,000	

나. 예산 내역

● 세입 예산

(단위 : 원)

항	목	예산액	전년본예산	증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수입	학교회계전입금	194,748,000	181,152,000	13,596,000
경상목적사업비	공기청정기렌탈	3,000,000	0	3,000,000
수익자부담수입	방과후학교활동비	0	0	0
수익자부담수입	현장체험학습비	0	0	0
수익자부담수입	졸업앨범비	0	0	0
수익자부담수입	교직원급식비	8,185,000	8,277,000	-92,000
등록금	학교운영지원비	11,024,000	12,932,000	-1,908,000
수익자부담수입	교과서비	6,000,000	7,000,000	-1,000,000
수익자부담수입	기타수익자부담수입	0	1,140,000	-1,140,000
수익자부담수입	교복구입비	6,000,000	5,600,000	400,000
사용료및수수료	사용료및수수료	0	0	0
자산수입	자산매각대	0	0	0
기타행정활동수입	이자 및 기타자체수입	500,000	0	500,000
기타행정활동수입	기타행정활동수입	0	0	0
순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	1,000,000	5,000,000	-4,000,000
합 계		230,457,000	221,101,000	9,356,000

◎ 세출 예산

(단위 : 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금년본예산액	전년본예산액	본예산비교증감
교육활동 지원	교무업무 운영	11,379,000	15,409,000	-4,030,000
	생활지도운영	900,000	1,000,000	-100,000
	연구학교 운영	0	0	0
	학습지원실 운영	18,500,000	14,500,000	4,000,000
	교육여건 개선	4,500,000	0	4,500,000
	소계	35,279,000	30,909,000	4,370,000
학생복지/ 교육격차 해소	학생복지	13,242,000	15,190,000	-1,948,000
	교육격차 해소	0	0	0
	급식 관리	8,185,000	8,277,000	-92,000
	보건 관리	5,915,000	3,685,000	2,230,000
기본적 교육활동	소계	27,342,000	27,152,000	190,000
	교과 활동	36,400,000	29,770,000	6,630,000
	창의적 체험활동	10,110,000	12,220,000	-2,110,000
	소계	46,510,000	41,990,000	4,520,000
선택적 교육활동	교기육성	0	0	0
	기타 선택적 교육활동	0	0	0
	독서활동	8,900,000	7,500,000	1,400,000
	방과후학교 운영	9,148,000	10,670,000	-1,522,000
	직업교육	2,100,000	2,100,000	0
	소계	20,148,000	20,270,000	-122,000
인적자원 운용	교직원 복지 및 역량강화	4,920,000	5,000,000	-80,000
	기타 교직원보수	11,544,000	10,860,000	684,000
	소계	16,464,000	15,860,000	604,000
학교 일반운영	시설 장비 유지	48,578,000	49,780,000	-1,202,000
	학교기관 운영	33,436,000	32,640,000	796,000
	학교운영 협력	1,700,000	1,500,000	200,000
	소계	83,714,000	83,920,000	-206,000
학교 재무활동	예비비	1,000,000	1,000,000	0
	소계	1,000,000	1,000,000	0
학교시설 확충	시설확충 및 개선	0	0	0
	소계	0	0	0
합	계	230,457,000	221,101,000	9,356,000

13 각종 위원회 정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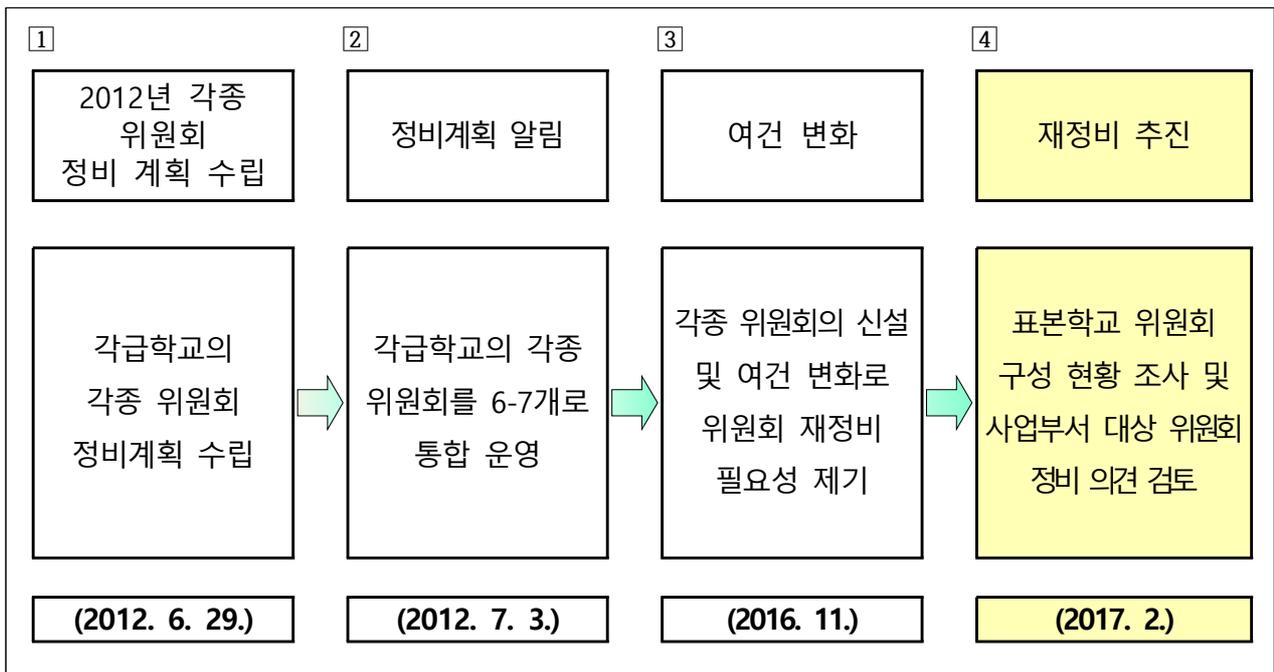
가. 목적 및 배경

- ❖ 각종 위원회의 정비를 통한 **통합 운영**
- ❖ 위원회 통합 운영으로 **교직원 업무 경감**

나. 근거 및 경과

□ 근거

-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 경감 방안 알림 (교원정책과-3560, 2012. 3. 20.)
- 각급학교의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 수립 (행정과-6365, 2012. 6.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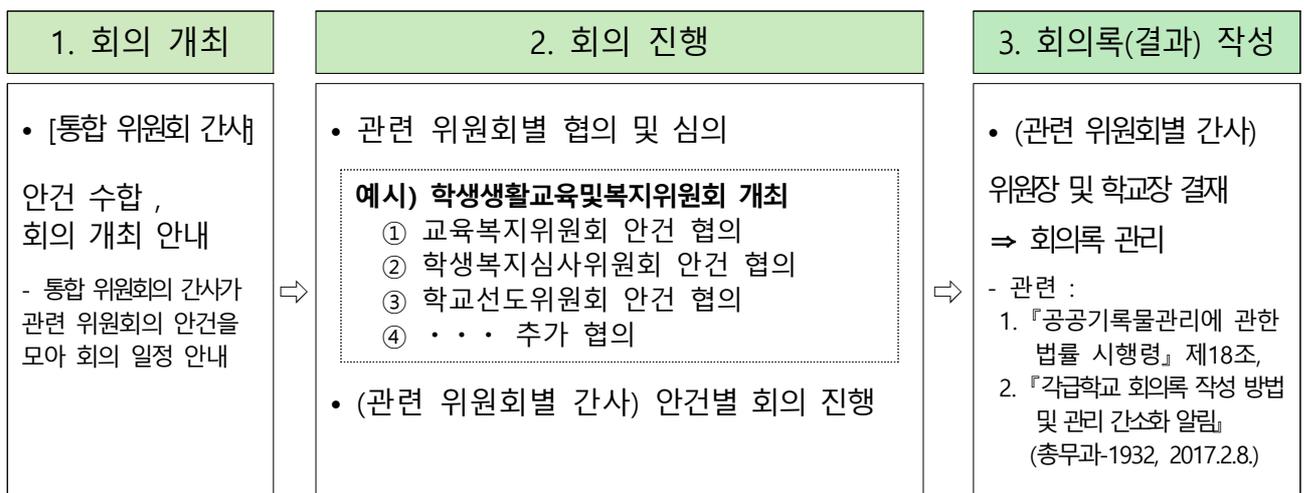
다.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

정비 개요

- ❖ 성격 및 구성요건이 유사한 각종 위원회를 6-7개로 통합 운영
- ❖ 설치근거 및 기준이 없는 위원회 폐지(전입학위원회 등 9개)
- ❖ 통합 운영 규정 제정 또는 개정
- ❖ 회의 진행방법 활용
 - 위원회 구성원, 규모, 성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 각종 위원회 정비 및 통합 위원회를 학교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운영

□ 각종 위원회 정비

- 1) 성격 및 구성요건이 유사한 각종 위원회를 6-7개로 재분류
- 2) 설치근거 및 기준이 없는 위원회 폐지
- 3) 통합 운영 규정 제정 또는 개정
 - 가) 제정
 - 학교에 통합 운영 규정이 없는 경우
 - 위원회 통합 운영 규정 마련
 - 나) 개정
 - 기존 통합 위원회에 타 위원회를 통합 운영 하는 경우
 - 제정된 규정에 조직, 기능, 구성 등 필요사항을 포함
- 4) 회의 진행방법



* 관련 위원회 일부만 개최 필요시 종전대로 개별적 위원회 운영 가능

꿈과 열정이 살아 숨 쉬는 인월인

5) 인월중고등학교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

통합 위원회명	관련 위원회명	소관 부서	설치근거
1. 학교운영위원회 ◦ 목적: 주요 학교운영사항 심의 ◦ 소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절차는 소위원회 규정으로 정함	◦ 예결산소위원회 ◦ 학교급식소위원회	행정실	◦ 전라북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목적: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심의 ◦ 구성요건: 비공개 회의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학교폭력전담기구	인성인권 안전부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3. 인사위원회 ◦ 목적: 인사, 담임배정, 교무분장, 교권보호, 성과상여금 등 심의 ◦ 구성요건(위원장: 교감)	◦ 교원인사자문위원회 ◦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 다면평가관리위원회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 교사공모심사위원회 ◦ 학교폭력예방기여교원간담대안자선정위원회 ◦ 교육공무직원인사위원회 ◦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 장학생(장학금)선정추천위원회 ◦ 학생전입학관리위원회	교무부	◦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8장 ◦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 제157호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8조의4 ◦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6조 ◦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제3항제4호 ◦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협약서 ◦ 성희롱 방지조치 지침 표준안(여성가족부) ◦ 공정성 및 형평성을 위한 선정과정 필요 ◦ 전입학 관리규정
4. 학교교육과정위원회 ◦ 목적: 학생 교육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 심의 및 자문 ◦ 구성요건(위원장: 교감) * 단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교장임 ◦ 교복선정위원회 참여 제한 (위원 중 학교장, 계약담당자(행정실장), 이해관계자 참여 제한)	◦ 학교교육과정위원회 ◦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 ◦ 학교자체평가위원회 ◦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 방과후학교소위원회 ◦ 교복선정위원회 ◦ 봉사활동추진위원회 ◦ 학교체육소위원회 ◦ 테마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활성화위원회 ◦ 졸업앨범선정위원회 ◦ 영재교육대상자선정심사위원회 ◦ 교과협의회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 의무교육위원회 ◦ 학교스포츠클럽 소위원회 ◦ 개별화교육지원팀	교무부 연구부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 학교평가 운영계획 ◦ 학교평가 운영계획 ◦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0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의2 ◦ 도교육청 지침(교복 구매운영 요령) ◦ 도교육청 지침(학생봉사활동 운영 계획) ◦ 학교체육진흥법 ◦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수익자부담경비) ◦ 영재교육진흥법 제5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 초중등학교 교육법 ◦ 학교체육진흥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5. 학교물품선정위원회 ◦ 목적: 물품선정 및 기타 심의 ◦ 구성요건(위원장: 교감) - 수요자 중심 구성(담당교사 등) - 위원 중 학교장 참여 제한	◦ 물품선정위원회 ◦ 과학교구선정위원회 ◦ 교육정보화기기선정위원회 ◦ 체육교구선정위원회	정보담당 교사	◦ 구매계약 비리예방 제도마련 권고(교육부) ◦ 각급학교 물품구매 계약관련 제도개선 방안 (재무과-33, 2011.9.1.)
6. 학생생활교육 및 복지위원회 ◦ 목적: 학생 생활규정 및 복지에 관한 사항 심의 및 자문 ◦ 위원장: 구성원 중 선출 가능 ◦ 규정개정심의위원회(학생 40% 참여)	◦ 교육복지위원회 ◦ 학생복지심사위원회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 학교흡연예방실무위원회 ◦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인성인권 안전부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 ◦ 도교육청 지침 ◦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제18조 ◦ 학교흡연예방사업 매뉴얼(보건복지부) ◦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 제47조

6) 통합 위원회 운영

- 가) 성격 및 구성요건이 유사한 관련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관련 위원회의 명칭·기능은 유지)
- 나) 관련 위원회에서는 사업 특성에 따라 간사(관련업무 담당자 등)를 둘 수 있으며 관련 법령 및 심의 내용에 따라 필요시 교사, 학생, 학부모, 외부인원 등 추가 위원 위촉 운영 가능

라. 인월중고등학교 소속 위원회 통합 운영 규정(안)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인월중고등학교 소속 위원회 통합 운영에 따른 통합 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구성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합 위원회 조직) 인월중고등학교 소속 통합 위원회는 성격과 구성요건이 유사한 각종 관련 위원회를 통합하여 인사위원회, 학교교육과정위원회, 학교물품선정위원회, 학생생활교육 및 복지위원회 등으로 조직한다.

제3조 (통합 위원회 기능)

① 인사위원회는

- 교원인사자문위원회 ◦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 다면평가관리위원회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 교사공모심사위원회 ◦ 학교폭력예방기여교원가산점대상자선정위원회 ◦ 교육공무직원인사위원회
-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 장학생(장학금)선정추천위원회 ◦ 학생전입학관리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한다.

② 학교교육과정위원회는

- 학교교육과정위원회 ◦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 ◦ 학교자체평가위원회 ◦ 교과교실제추진위원회
-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 방과후학교소위원회 ◦ 교복선정위원회 ◦ 봉사활동추진위원회
- 학교체육소위원회 ◦ 테마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활성화위원회 ◦ 졸업앨범선정위원회
- 영재교육대상자선정심사위원회 ◦ 교과협의회 ◦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한다.

③ 학교물품선정위원회는

- 물품선정위원회 ◦ 과학교구선정위원회 ◦ 교육정보화기기선정위원회, 체육교구선정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한다.

④ 학생생활교육 및 복지위원회는

- 교육복지위원회 ◦ 학생복지심사위원회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 학교흡연예방실무위원회 ◦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한다.

제4조 (통합 위원회 구성)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위원장은 교감으로 하고, 위원은 각 부장 및 담당교사로 하며, 통합 위원회 간사는 **교무 부장**으로 한다. 단, 관련 위원회별로 다음과 같이 간사를 둘 수 있다.

- 가. 교원인사자문위원회 간사는 교무부장으로 한다.
 - 나.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간사는 담당교사로 하고 외부위원은 위촉한다.
 - 다. 다면평가관리위원회 간사는 위원장(교감)이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 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간사는 학생부장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위촉한다.
 - 마. 교사공모심사위원회 간사는 교무부장으로 한다.
 - 바. 학교폭력예방기여교원가산점대상자선정위원회 간사는 교무부장으로 한다.
 - 사. 교육공무직원인사위원회 간사는 교무부장으로 한다.
 - 아.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간사는 학생부장으로 한다.
 - 자. 장학생(장학금)선정추천위원회 간사는 담당교사로 한다.
 - 차. 학생전입학관리위원회 간사는 학적 담당교사로 한다.
- ② 학교교육과정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위원장은 교감으로 하고, 위원은 각 부장 및 담당교사로 하며, 통합 위원회 간사는 **연구부장**으로 한다. 단, 관련 위원회별로 다음과 같이 위원(장) 및 간사를 둘 수 있다.
 - 가. 학교교육과정위원회 간사는 담당교사로 한다.
 - 나.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 간사는 학적담당 교사로 한다.
 - 다. 학교자체평가위원회 간사는 연구부장으로 한다.
 - 라.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간사는 도서관 담당교사(사서교사)로 하고 외부위원은 위촉한다.
 - 마. 방과후학교소위원회 간사는 방과후학교 담당교사로 한다.
 - 바. 교복선정위원회 간사는 담당교사로 하고 외부 위원은 위촉한다.
 - 사. 봉사활동추진위원회 간사는 담당교사로 한다.
 - 아. 학교체육소위원회 간사는 체육교과 부장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위촉한다.
 - 자. 테마현장체험학습위원회 및 수련활동활성화위원회 간사는 담당교사로 하고, 외부위원은 위촉한다.
 - 차. 졸업앨범선정위원회 간사는 담당교사로 하고 외부위원은 위촉한다.
 - 카. 영재교육대상자선정심사위원회 간사는 담당교사로 한다.
 - 타. 교과협의회 간사는 담당교사로 한다.
 - 파.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교장**이며, 간사는 평가계 교사로 한다.
- ③ 물품선정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위원장은 교감이고 위원은 각 부장 및 담당교사로 하며, 통합 위원회 간사는 **정보부장**으로 한다. 단, 관련 위원회별로 다음과 같이 간사를 둘 수 있다.
 - 가. 물품선정위원회 간사는 담당교사로 한다.
 - 나. 과학교구선정위원회 간사는 과학교과 담당교사로 한다.
 - 다. 교육정보화기기선정위원회 간사는 담당교사로 한다.
 - 라. 체육교구선정위원회 간사는 체육교과 부장으로 한다.
- ④ 학생생활교육 및 복지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위원장은 교감이고, 위원은 학생부장, 학교선도위원회 담당교사, 진로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행정실 교육복지 담당자로 한다. 통합 위원회 간사는 **학생부장**으로 한다. 단, 관련 위원회별로 다음과 같이 간사를 둘 수 있다.

- 가. 교육복지위원회 간사는 진로상담부장으로 한다.
- 나. 학생복지심사위원회 간사는 학생부장으로 한다.
- 다.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간사는 학생부장 한다.
- 라. 학교흡연예방실무위원회 간사는 담당교사로 한다.
- 마.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간사는 담당교사로 한다.

⑤ 교복선정위원회, 물품선정위원회는 제한 인원을 회의에서 제외한다.

제5조 (위원 임기) 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6조 (통합 위원회 회의)

- ① 회의는 필요 시 위원장이 소집하여 안건별 관련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관련 위원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통합 위원회는 제3조 통합 위원회 기능에서 규정된 통합 운영하는 위원회의 안건을 심의한다.

제7조 (관련 위원회의 명칭 및 기능) 관련 위원회의 명칭 및 기능은 법령 및 지침에 규정된 바와 같이 유지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18년 4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인월
교육
곳이
되었습니다

55715 전북 남원시 인월면 인월장터로 48
교장실 : (063) 636-5761 교무실 : (063) 636-5763~6
행정실 : (063) 636-5762 FAX : (063) 636-5768
<http://www.inwol.hs.kr>